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20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발 간 사

2019년은 연구윤리 이슈와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한해였습니다. 연구자의 부실학술대회 참가, 부실학회지 논문 게재, 미성년 자녀의 부당한 공저자 포함 등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윤리 및 공정에 관한 국민의 높은 의식과 요구를 체감할 수 있었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 기준에 대해 보다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도 연구자와 연구윤리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 연구윤리 제도개선 등 연구자의 윤리 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책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8년간 소관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윤리 규정 제정 및 개정, 연구윤리 교육 실시 및 홍보, 연구윤리 평가, 연구윤리 자체점검 시스템 확립, 연구윤리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고 연구윤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소관 국책연구기관 스스로 연구윤리 준수 노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자체 연구윤리 점검시스템을 제도화하였으며, 2019년에는 부실학회 문제 등에 대응하여 연구자의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제·인문사회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준수 의식과 문화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의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의심사례가 없는 클린 연구기관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연구기관 신임연구자뿐만 아니라 중견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도치 않게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부터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연구윤리

평가규정을 설명하고 연구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연구윤리 이슈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사례집은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함께 대학 및 학계에서 통용되는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둘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에서 제시된 위반의심사례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대표적인 사례를 새롭게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부실 학술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자들로 하여금 해외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게재 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연구윤리 의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례집이 널리 활용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뿐 아니라 대학 및 학계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앞으로도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자 연구수행 과정에서도 투명한 연구문화 조성을 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륭

발간사 2

Ⅰ. 연구윤리 개요 6

1. 연구윤리란? 8
2.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윤리 11
3. 연구윤리 평가 및 교육의 필요성 14
4.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개념 및 유형 18
   1) 연구부정행위 19
   2) 연구부적절행위 22

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해설 24

1. 연구윤리 평가규정 해설 26
   1) 총칙 27
   2)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기준 38
   3) 연구보고서의 출처표기 등 50
   4) 연구윤리 평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57
   5) 연구윤리위원회 60
2. 연구윤리 평가규정 전문 62

Ⅲ.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 74

1. 연구부정행위 76
   1) 위조 의심사례 77
   2) 변조 의심사례 79
   3) 표절 의심사례 81
   4) 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사례 114
2. 연구부적절행위 118
   1) 중복게재 의심사례 119
3. 기타 부주의 144

Ⅳ. 질의응답(Q&A) 150

1. 표절 관련 사항 152
2. 중복게재 관련 사항 167
3. 출처표기와 인용 관련 사항 176
4. 기타 사항 185

Ⅴ. 부록 202

1. 부실학회 참가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204

참고문헌 210

Ⅰ. 연구윤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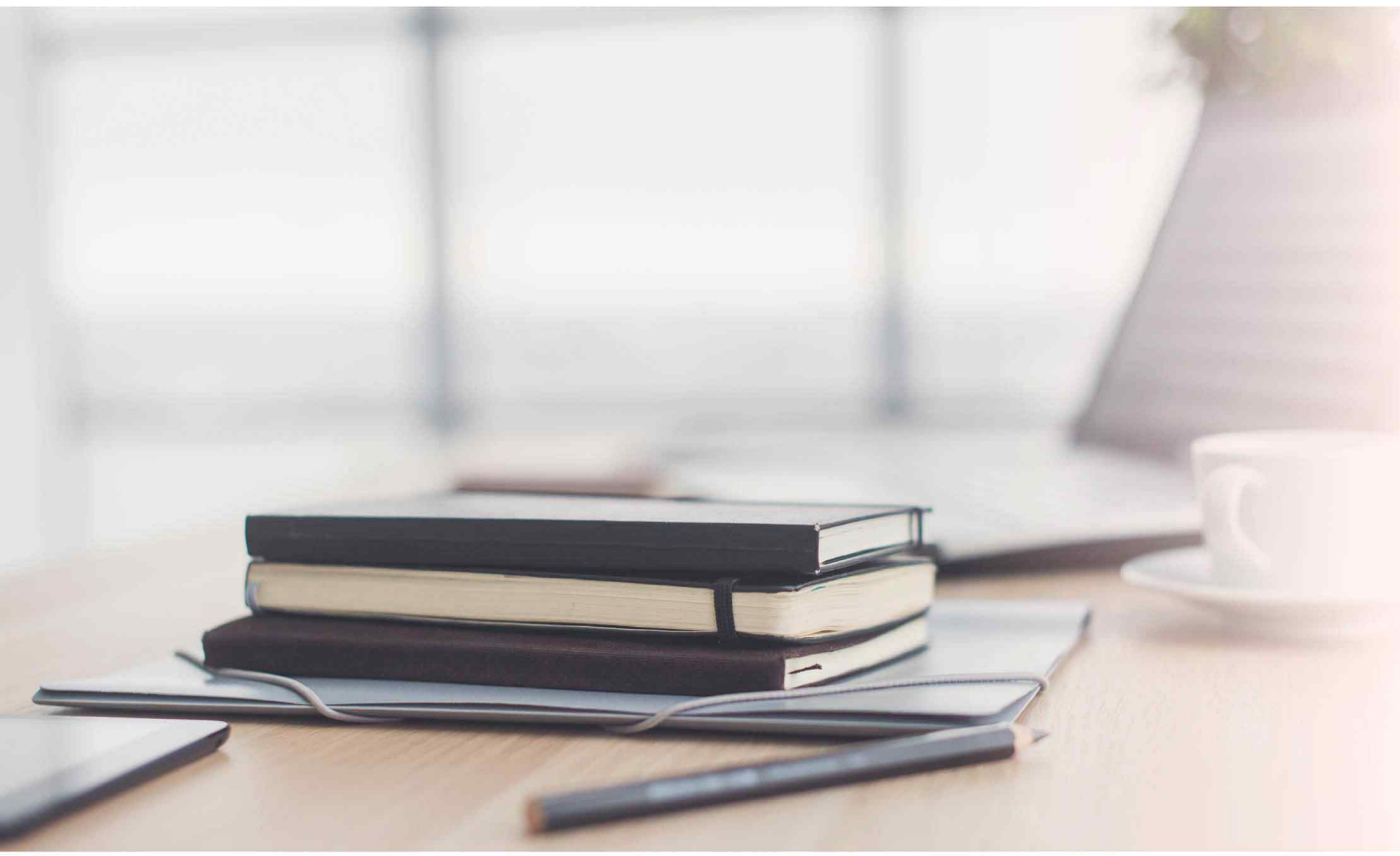

1. 연구윤리란?

2.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윤리

3. 연구윤리 평가 및 교육의 필요성

4.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개념 및 유형

1. 연구윤리란?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연구 수행 과정을 연구 기획, 세부 계획, 제안, 검토, 수행, 결과 제시, 심의(평가), 환류(feedback), 수정 및 보완 결과 발표 등으로 구분한다면 연구윤리는 전체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지켜야 하는 연구 방식과 표현 방식을 포괄한다. 연구의 성과는 결과의 우수성으로 나타나지만, 만일 결과가 정당한 방식과 정확한 근거에 의해 도출되지 않았다면 성과는 곡해되거나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이 수립되거나 추진된다면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추진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연구윤리의 출발점은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및 객관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1)]

첫째, 정직성은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연구 수행은 기본적으로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응용하는 과정이므로 정보의 실제적 내용(fact), 분석 내용 및 응용 내용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보고해야 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 수행 과정은 사전에 정해진 연구 규칙을 지켜야 한다.

둘째, 정확성은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오차를 피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연구자 또는 기관이 의도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편향적인 부분적 자료 활용이나 왜곡된 자료 활용으로 결과에 오류를 유발시키는 행위도 부정확하고 부당하다. 특히 국가정책 연구는 사소한 오류나 오차에 의해 중대한 정책적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연구 수행 과정과 정확한 결과 보고가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효율성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정책 연구는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므로 투입 비용의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정책 효과의 최대화가 더욱 중요하며 무임승차의 소지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연구윤리는 불필요한 유사 반복 연구나 중복 연구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해야 하며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넷째, 객관성은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부당한 편견을 피하는 것이다. 정책 연구는 불특정 다수의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특정한 내용도 포함하므로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객관성은 가장 효과적인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다.

연구윤리는 일반적인 사회적 윤리와 다른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연구 수행에 국한된 윤리적 판단이라는 점이다. 연구윤리는 저작권법의 포괄적 범위에 비해 적용 범

1) Steneck, Nicholas H.,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2007, p.3 내용을 요약·정리 하고 설명을 추가 보완함.

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연구윤리는 명확한 합목적성을 가지며,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연구 수행의 엄밀한 원칙 준수를 추구한다. 그리하여 관점에 따라 윤리적 관계(상황)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명시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연구윤리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판단된다. 또한 연구윤리는 내재적 완결성을 추구한다. 설령 타인에게 직접적인 손실이나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구윤리는 자율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준칙이다.

연구윤리에서 윤리(倫理, ethics)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 지가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윤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이나 '책임 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 '연구 부정행위' (research misconduct) 등과 같은 용어를 차용하기도 한다.

연구진실성은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객관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람직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용어이다. 책임 있는 연구수행은 "무책임한 연구수행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2] 또한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위반해서는 안되는 연구윤리의 구체적 행위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의 국가들은 '바람직한 연구 실천'(good research practice; GRP)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윤리의 범위는 연구윤리의 정의나 학문 분야 및 기관 성격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좁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및 발표에서 흔히 'FFP'로 통칭하는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cation), 표절(plagiarism)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기도 하고, 넓게는 이에 더하여 연구실 내에서의 차별 문제 등 연구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 생명체 연구윤리 등 특정 연구대상이나 방법에서의 연구윤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3]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윤리의 범위를 '연구부정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연구공동체의 연구윤리나 생명체 연구윤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해서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의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2)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21.
3)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22-24.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2.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윤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소관 국책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 정책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실질적이고 독창적인 정책대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기관이 생산하는 연구보고서는 정부 정책설계를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써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책의 경제적·사회적·국민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큰 가치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자 중에는 다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보고서 산출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때때로 의도하지 않게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 의식의 제고 노력은 연구기관 내부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의 자율적인 책임과도 결부되는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는 시급성과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연구 수행 과정이나 결과 발표에서 표절이나 중복게재 금지 등의 연구윤리가 등한시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독창적이고 최초의 연구 성과로 알려진 연구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해 가치가 재평가되거나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연구윤리 준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부실학회,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가정책연구보고서에의 신뢰성과 책무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연구자의 표절이나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기 행위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책 연구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시키고 보다 창의적인 국가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작성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어떤 연구기관보다도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연구윤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연구기관은 연구자 개인과 개별 기관의 윤리성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연구와 결과의 윤리성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연구회는 연구윤리 평가뿐만 아니라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집 등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와 연구윤리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4)]

4)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 2007. 4. 26., p.1.

".....연구윤리가 제대로 확립되었을 때 비로소 연구의 진실성이 확보된다. 진실성이 결여된 연구를 통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다. 진리를 추구하는 연구자들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연구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성장 동력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국가의 위신과 장래까지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윤리 평가 및 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전반적인 국가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우수한 정책 대안은 물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와 정책 내용에 대한 신뢰가 필수불가결하다. 연구윤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연구기관 연구자의 비의도적인 실수에 의한 결과라 하더라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가정책의 논리적 근거는 설득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가 정당한 수행 방법과 과정에 의하지 않은 채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정책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WASET, OMICS 등 부실학회에 교육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연구비를 사용하여 참가하고, 논문을 발표한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비윤리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윤리 평가는 국가정책 연구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윤리 준수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연구윤리 평가는 우수한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를 선발하려는 목적보다는 궁극적으로 모든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단순히 일회성 결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연구 수행에 대한 환류(feedback)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윤리 준수 문화 확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연구회가 지난 2012년 연구윤리 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연구윤리 기준과 지침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과 개별 연구자가 연구윤리 지침과 평가기준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비의도적인 위반 행위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인터넷 자료, 사진과 그림 자료,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등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양화되고 무분별하게 혼재됨에 따라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연구윤리 지침과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과거 연구윤리의 문제는 연구자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이에 따른 연구자의 스트레스 심화, 연구자의 업적을 지나치게 양적인 실적에 비중을 둔 평가시스템, 급성장한 연구역량에 부합하지 못하는 연구윤리 불감증 등에 의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연구자의 정직하고 창의적이며 책임있는 연구의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사업의 목적은 소관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윤

리 준수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를 파악하고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교육함으로써 연구자에게 연구윤리 준수를 체화시키고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평가'라는 연구윤리 점검 기제를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책임있는 국가정책 연구를 유도하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연구윤리 평가는 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은 사후조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준수를 통하여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산출해 내도록 유도하는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KISTI 학술정보 공유시스템[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019년 7월 31일 학술정보공유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오픈하여 부실학회 및 부실학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ISTI는 Beall's list 수록 학술지(653개 출판사의 20,193종) 및 부실학술행사 정보(WASET 496,595건, OMICS 7,187건)를 제공하고 있다. 부실학술활동 정보는 WASET, OMICS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수집·정리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건전학술지(SCI, SSCI, SCOPUS 등)에 해당한다고 해도 부실연구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Beall's list 수록 학술지, WASET, OMICS 관련 학회 및 학술지라고 해도 정상적인 학술활동일 수 있으므로 학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연구자가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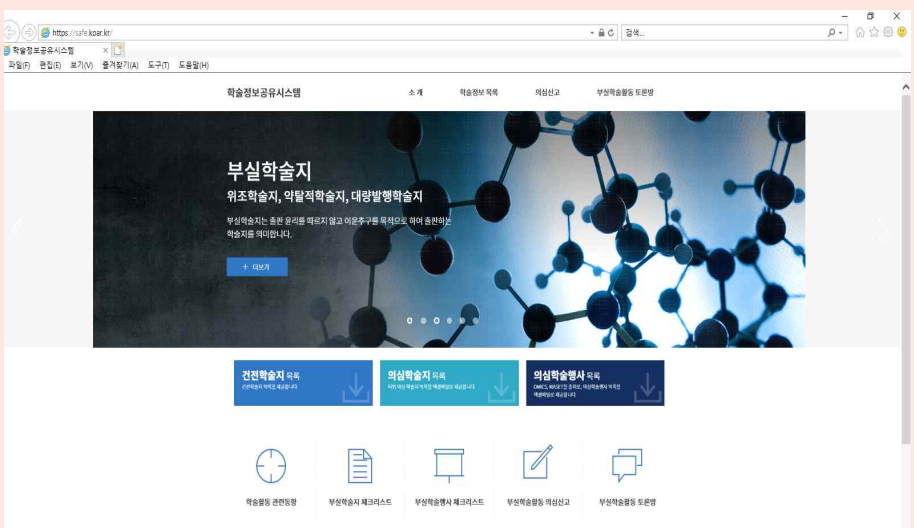

출처 : KISTI 학술정보공유시스템(https://safe.koar.kr/)

5) 김완종·이은지, 학술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한국과학기술정보원, NRC-KISTI 업무협의 발표자료, 2019.10.21.

이와 같이 연구회는 평가의 관리적 기능을 통해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촉진하고 있다. 매년 연구윤리 평가가 종료된 이후 평가제도 및 평가규정 개선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절 의심사례 예외 조항 신설, 부당한 저자 표기의 명확화, 출처표기 및 대상의 명확화 등의 방안 마련 등 개선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연구회는 연구윤리 평가뿐만 아니라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본 사례집은 연구윤리 평가기준, 최신 사례, 연구기관의 질의사항에 대한 응답 등을 통합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연구기관이 연구윤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연구윤리 평가 관련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례와 이슈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이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7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는 2011년에 2010년 출판된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여, 201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평가대상 보고서에 대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및 중복게재, 기타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정책연구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대상 보고서는 연구기관 기본연구보고서의 10~20% 정도이며, 이는 매년 사업예산의 상황에 따라 변경된다.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는 기존 논문이나 학술지에 주로 적용되는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국책연구기관 발간 연구보고서로 확대하여 국책연구기관 및 소속 기관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4.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개념 및 유형

1) 연구부정행위

(1)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기획,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를 말하며, 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기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 위조
  -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 하는 경우
  -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 표절
-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 부당한 저자 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한 표절 판단 완화 기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⑤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⑥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 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연구보고서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재위탁)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보고서에 포함할 때, 즉 연구보고서의 일부 장, 절에서 타인이 쓴 내용을 거의 그대로 포함시킬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용역 받은 내용에 대한 글을 쓸 때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 계약서 명기, 교육 및 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름 명기)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표기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보고서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먼저 관련 내용을 전문 학술지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할 경우,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먼저 출판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

(1) 연구부적절행위의 개념

연구부적절행위라 함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여기서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연구부적절행위의 유형

● 중복게재

–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이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 마치 새로운 것을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경우

–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활용하면서도 어느 일부분만 출처표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기하지 않거나 출처표기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혹은 거의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출처표기를 했지만, 이후의 저작물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에 맞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맥락에 맞게 재해석, 재구성, 비판적 해석 등)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의 출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한 중복게재 판단 완화 기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①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②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③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④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⑥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⑦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⑧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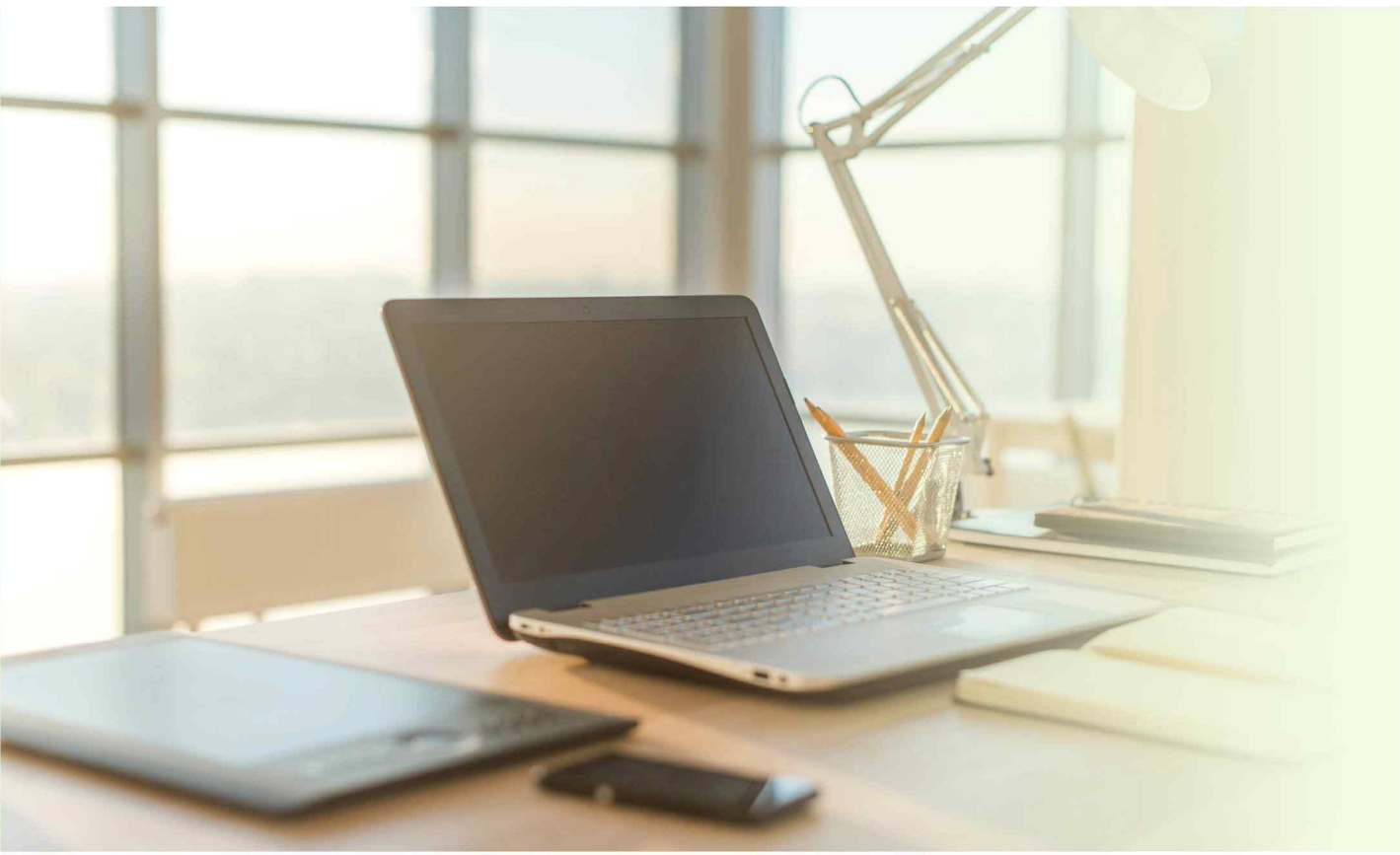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해설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전문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해설

1)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창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 및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 •

제1조 목적에서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 및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연구윤리의 개념 및 유형과 연구윤리 위반의 판단 근거, 올바른 출처표기 및 인용법 등이다.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이 연구윤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국가정책대안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정당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만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구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연구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2005년 말 배아줄기세포 사태가 발생한 후, 국내 대학이나 학회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실천해 오고 있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연구기관에서도 지금까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의 마련과 연구윤리 교육 실시 등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나 관련 규정의 실천 등에서 보완해야 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갖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학이나 학회에서 통용되는 연구윤리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연구기관의 연구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최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학회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연구윤리 준수의 예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연구윤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연구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 전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연구윤리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으며, 또 연구윤리 위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란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 해설 •

제2조에서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을 크게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로 구분하고 각 하위 유형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를, 연구부적절행위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통상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의 스펙트럼은 다음의 표와 같이 집약될 수 있다.[6)]

<table>
<tr><th colspan="2">바람직하지 못한 연구 활동(행동)</th><th>바람직한 연구 활동(행동)</th></tr>
<tr><td>연구부정행위
(Research misconducts)</td><td>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의심스런 연구 수행(QRP)</td><td rowspan="2">책임 있는 연구 수행(RCR)
좋은 연구 수행(GRP)</td></tr>
<tr><td>위조, 변조, 표절(FFP)</td><td>부당한 저자 표기, 중복게재, 의심스런 데이터의 누락(data massage or cooking), 무임승차 등</td></tr>
<tr><td>연구 수행에서
가장 나쁜 행동</td><td>연구부정행위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의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지대</td><td>연구 수행에서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행동</td></tr>
</table>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RCR;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좋은 연구 수행(GRP; good research practice)과 대비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 활동(행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그 행위가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즉, 연구부정행위는 해당 연구자의 학문 공동체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으로,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시행되었거나(intentionally),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해졌거나(knowingly), 부정행위 여부에 개의치 않고(recklessly) 이루어졌을 때를 말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면, 세계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위조(날조, 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을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줄여서 FFP라고 명명하고 있다. 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부당한 저자 표기'를 연구부정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의심스런 연구 수행(QRP;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은

6) 이인재, "연구활동의 스펙트럼과 연구진실성,"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0권 제3호, 2012, p. 458.

연구부정행위처럼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용인되거나 간과될 수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부당한 저자 표기, 중복게재, 의심스런 데이터의 누락, 무임승차 등과 같이 연구부정행위에 비해서는 연구윤리에서 벗어난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연구부정행위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사이에 위치하여 어떤 연구 수행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회색 지대(grey areas)를 말한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연구활동의 스펙트럼과 우리나라에서 통상 규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연구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부당한 저자 표기'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나 그에 대한 제재 등은 해당 국가의 연구문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 것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할 당시 우리 학계에 부당한 저자 표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를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로 정의한 것은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이에 근거한 각 대학 및 학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같게 함으로써 연구윤리 위반의 판단 기준이나 근거에서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위조, 변조, 표절 이외에도 부당한 저자 표기, 부당한 중복게재,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분야 등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그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다.

교육부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정의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 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출처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1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2, 2014.11.28>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625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30조 제1항

본 규정에서 말하는 위조와 변조는 연구자의 의도에 맞춰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위조(날조)'[7]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결과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제시(기록, 보고)하는 반면, '변조'는 존재하는 데이터를 임의로 바꾸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본 규정에서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타인의 것을 몰래 훔쳐서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절의 대상이 타인의 유형(有形)의 사물이 아닌 타인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무형의 "정신적 산물(brainchild)"이라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인 절도(intellectual theft)"로 규정되고 있다.[8] 여기서

7) 일부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위조 대신 날조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기도 함.
8) 이인재, "표절과 올바른 인용,"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0권 제4호, 2012, p. 740.

말하는 "일반 지식(common knowledge)"이란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즉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공동체(해당 전공)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교과서에 실리는 수준)으로, 이 경우에는 출처표기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또는 '만유인력은 뉴턴이 발견했다' 등은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자신이 쓰고자하는 내용이 일반 지식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용을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When in doubt, cite the source).

표절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9]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해 정당하게 보호받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적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개념이 완전히 상이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이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개념상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절은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표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 일치되는 부분, 즉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10] 또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에 한정될 뿐 사상 또는 감정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아니다. 아이디어 중 독창적인 것은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달리 공정이용의 항변[11]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의 저작물이 당해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이용하였어야 하며, ③ 객관적 요건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두 저작물이 동일성 내지 종속성(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극적 요건으로 ④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

9) 남형두, 표절론, 현암사 2015, 171면 이하.

10) "표절"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와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넓은 의미의 표절에 대해서도 사회규범의 위반에서 비롯된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게 되지만, 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직업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절은 비난가능성에 대한 정도의 문제이며,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대에 따라, 국가마다, 또 각 집단마다 선행 창작결과물을 이용함에 있어 요구되는 도덕적·윤리적 기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특정 시점의 특정 집단에서 구속력 없는 최소한의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이다.

11)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용은 원래 저작물의 복제 등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할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학문,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행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나마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자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에 의한 보호가 저작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한다. 즉, ① 창작적 "표현"이 유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없으며, ②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성"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창작성이 없는 부분만이 유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
인용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한다.
② 인용의 목적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여야 한다.
④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여야 한다.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인지 여부의 판단은 이른바 '불확정개념'으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12] 등에서 제시하는 "주종관계"라는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인용의 정당한 범위를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사이의 주종관계"의 문제로 파악하여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보는 것이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부당한 저자 표기'는 저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실질적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자 표기는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여한 업적에 따라 공로(credit)를 배분하는 것과 관련되며,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해석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누가 저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문 분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①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② 논문의 초안을 작

12)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도5835 판결 :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성하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을 하며 ③ 출판될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하는 등 해당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13)]

본 규정에서는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를 연구부적절행위에 포함시켰다. 중복게재는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저작물 일부나 상당 부분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저작물에서 활용함으로써 자신과 독자 및 업적 평가 기관을 속이는 비윤리적인 행동이다.[14)] 연구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사용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중복게재의 윤리적 측면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중복게재가 무엇이며, 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연구부정행위 못지않게 주의를 기울여 예방해야 할 연구윤리(출판윤리)의 중요한 영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로 규정한 것은 ① 많은 국가에서 중복게재를 표절처럼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연구자의 양심에 맡기거나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를 통해 규제한다는 점과 ②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부득이하게 이전 결과를 사용할 경우 인용사실을 표기하거나 원문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중복게재를 명백하게 연구부정행위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중복게재는 자기표절(self plagiarism)과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복게재, 자기표절, 이중게재는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지만,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같은 원리를 가진 이 세 가지 용어가 혼용됨으로써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중복게재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는 바, 본 규정에서도 그 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중복게재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중복게재와 이중게재가 크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지만, 굳이 양자를 구분하는 경우, 중복게재는 이미 출판되어 저작권을 가진 자료에 새로운 혹은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하는 것을

13) 이인재, "올바른 저자표시와 동료 심사,"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3, pp. 1-4.
14) 이인재, "중복게재,"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3, p. 4.

의미하고(이미 출판된 전체 논문이 아닌 일부를 다시 출판하는 것), 이중게재는 이미 다른 곳에 출판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겹치는 저작물을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지 않고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1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 활동 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정도의 평가에 적용하며, 그 외의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 사항들은 관련 상위 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5.3.6., 2019.4.26.>

• 해설 •

제3조에서는 본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본 규정은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 활동 전반에 대하여 연구윤리 준수 정도를 평가할 때 적용한다. 그 외의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 사항들은 상위 법령인 ①「학술진흥법」, ②「학술진흥법 시행령」, ③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상위 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시, 연구윤리 평가사업의 예산 및 인력 등의 제한이 있어 모든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연구윤리 평가대상이 되는 연구보고서의 규모는 매년 수립되는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에서 정한다.

15) 이인재, "중복게재의 문제점과 연구윤리의 정립 방안,"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제26집, 2009, p. 9.

제4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 평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 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② 연구자는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책무) ①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제6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평가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인력 풀을 확보하고,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③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한다.

• 해설 •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각각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회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실천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이고 진실한 연구활동 및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보고서 내용은 물론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 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자가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 및 보고서의 진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윤리 규정이나 지침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연구회나 소속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를 엄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자들의 부실단체 주관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부실학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연구자의 학술활동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마련,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자료 제공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정기적으로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신규 연구자, 주요 보직자, 연구윤리 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연구윤리 상담 활동을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기준

제7조(위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1.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2.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3.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4.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 해설 •

제2장은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 중 '위조'에 대한 판단 근거로, 전체 학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의 사례 중 경제·인문사회분야에서 일어나기 쉬운 유형을 대표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먼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례는 인터뷰,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았지만, 마치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그 결과를 제시한 경우이다. 제3호와 제4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나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이다.

제8조(변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한다.
1.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2.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3.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4.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 해설 •

제8조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 중 '변조'에 대한 판단 근거로, 학문 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조의 사례 중 경제·인문사회분야에서 일어나기 쉬운 유형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규정에서는 변조에 대해 4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호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는 자료의 변조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제4호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는 자료의 변조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4호가 더 심각한 변조에 해당함을 유념해야 한다. 제2호에서는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마치 결과가 분명하게 제시된 것처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를 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고의에만 국한시키게 되면 변조 행위를 식별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비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인 연구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일정한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생략하거나, 삭제, 은폐를 하는 것도 변조에 해당함을 유념해야 한다.

제9조(표절)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1.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3.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4.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3.6., 2019.4.26.>
5.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 에만 하는 경우
6.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2.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3.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4.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5.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6.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 해설 •

제9조는 표절에 해당되는 경우와 표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때 반드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만일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아이디어나 표현을 활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때 표절이 된다.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서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제1호는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로, 다음의 3가지 경우를 포괄한다.

첫째,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고 구조(생각의 프레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16]이다. 이 사례에는 '실험연구의 경우, 타인의 방법론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주제를 해결하는 원저자의 독특한 사고나 논리 전개의 틀을 그대로 도입하여 기계적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끼워 맞춘 경우',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표현은 같지 않지만, 서술의 체계와 패러다임이 닮은

16) 원저작물 구조의 표절, 즉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원저작물에 있는 논증의 구조를 복사하는 것에 해당함.

경우' 등이 포함된다.

둘째,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용어), 어휘(구), 문장, 단락, 표, 그림, 사진, 데이터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 사례에는 '인용부호(quotation marks)를 사용하여 표기를 하지 않고 타인의 개념(용어)과 어휘(구), 문장, 단락을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나 그림, 사진 등을 자신의 논지 전개나 결과를 위해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직접 산출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경우', '교과서나 교재 등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정형화된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기술하고 정리한 것을 활용하였다면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셋째,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바꿔쓰기(paraphrasing)[17] 또는 요약(summarizing)했지만,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표절 사례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타인의 문장을 요약 또는 재배치하거나, 용어를 변경할 경우에도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제2호는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쓰거나 요약 또는 말바꿔쓰기를 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한 경우 반드시 원저작물에 대한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6호까지는 출처표기를 했지만 부적절하거나 통상 통용되는 적절한 관행을 벗어난 경우[18]를 설명하고 있다.

제3호는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이다. 이는 곧 '2차 문헌 표절'을 말하는 것으로, 저자가 글을 쓸 때,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번역하거나 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도 즉,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19]

이것은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 연구를 소개(검토)할 때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2차 문헌 표절'은 타인이 1차 문헌을 통해 자신의 연구 목표나 논지에 부합하게 분석 및 요약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마치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자신이 쓴 것

17) 저자가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해석)한 것을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장으로 말바꿔쓰기를 할 때는 원문의 개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언어나 리듬을 피해야 함.

18) 이를테면, 타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타인의 저작물 대부분을 가져다가 조금 바꿔 자신의 것이라고 하거나 타인의 외국어 논문을 번역한 후 전문 용어에 대한 해제를 첨가하거나 참고문헌을 조금 보완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하는 경우 등을 말함.

19) 이인재, "표절과 올바른 인용,"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0권 제4호, 2012, p. 742.

처럼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서로 다른 저자가 아무리 동일한 문헌에 대해 소개(검토)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주체가 다르다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타인의 독자적인 소개(검토) 노력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 2차 문헌 표절의 확인은 두 사람이 일부분이든 상당부분이든 동일한 1차 문헌을 말바꿔쓰기나 요약을 할 때 표현하는 용어나 글의 순서가 동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활용한다.
제4호는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인용저작물이 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이는 서울대학교의 표절 판단의 기준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정확한 출처표기 또는 인용표기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 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적절한 출처표기와 관련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인용의 분량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하는 내용이 종이 되고 자신의 것이 주가 되도록 가급적 필요한 부분을 짧게 인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출처표기를 했다고 해도 그 인용의 양이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학문 분야별로 오랫동안 활용해온 출처표기 방법에 따르면서 그 인용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제5호는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단어를 첨삭, 동의어 대체 등 발췌나 조합을 하여 사용하였지만 출처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연구 결과가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나 출처표기를 어느 일부분에만 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발췌·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기 또는 인용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6호는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이다. 여기서 참조는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말바꿔쓰기나 요약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로 원저자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직접 인용하면서도) 참조했다고(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기술 했다고) 허위를 말함으로써 참조한 부분이 원저자의 것이 아닌 글쓴이의 것으로 오해하도록 속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표절 여부는 무단으로 활용한 타인 저작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뿐만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 및 독창성 등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양적으로는 최소한 일정 문장(예, 3문장) 이상의 타인 저작물 중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표현(용어, 어구, 문장, 단락, 표, 그림, 사진, 데이터 등), 논리 구조 그리고 중요한 연구 성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단순히 표현의 유사성 및 동일성을 양적으로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되는 부분이 타인의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핵심 아이디어, 독창성, 고유성 등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표절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비록 실수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표절로 판단함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는 일반 학술논문과 구별되는 여러 특성이 있다. 대체로 연구보고서의 작성 분량이 학술논문에 비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정책수요에 의해 배경 설명이나 해외 동향 등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재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정책현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각 연구자 별로 연구보고서나 정책자료, 논문 등의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다수 산출해야 하는 점 등의 특성이 있다.[20] 따라서 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9조 제2항에서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1호는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짧게 할 때는 인용부호(" ")를, 길게 할 때는 인용 단락(indentation)을 표시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혀야 표절이 아니다. 그렇지만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의 경우,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내용주 출처표기 방식에 따라 저자와 연도만을 간략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단 출처를 표기한 것은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다소 완화된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제2호는 선행 연구를 소개(검토)하거나 방법론을 기술하거나 외국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간접 인용(말바꿔쓰기나 요약 등)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21]에는 표절

20) 김병철,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평가 실태 및 개선방향",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제13권 제2호, 2013. p.131.

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상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부분이나 방법론 부분 등 연구보고서 전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서 간접 활용한 타인 저작물 모두에 대해 일일이 출처를 표기하는 것은 가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타인 저작물을 직접 인용할 경우, 또는 간접 인용하더라도 특정한 표,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제3호는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않는다. 이는 세부보고서에서 이미 출처를 표기했기 때문에 이를 요약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해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제4호는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않는다. 이는 연도별로 계속 발간되는 보고서나 또는 동일한 주제로 2차 혹은 3차 등 심화 연구를 수행할 경우,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 보고서에서 출처를 표기했기 때문에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해도 괜찮다는 의미이다.

제5호는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에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이는 판례 및 법령 인용방식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완전한 형식을 갖춘 출처표기가 아니라 판례번호나 법조항만 표기하더라도 그 출처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6호는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 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는 표·그림 등을 설명하는 본문의 내용이 해당 표·그림·사진을 설명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출처를 중복적으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21)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란 저작물의 장이나 절, 항의 제목 부분 등에 출처표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본문의 인용부분에서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 출처표기 방식을 말함. 이러한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

제10조(부당한 저자 표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1.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해설 •

제10조는 "부당한 저자 표기"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제10조는 부당한 저자 표기를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부당한 저자 표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공동연구를 수행한 후 각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업적 배분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을 때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게재할 때,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그에 합당한 공로, 즉 저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서 저자의 자격을 가질 정도로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합당한 기여가 없음에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차원에서 저자 자격을 부여할 때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올바른 저자 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공동 연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연구의 계획, 개념 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 보고서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는 저자 혹은 발표자로 표기될 권리를 가진다. 연구보조원이 저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목록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기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저자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업적 배분에 대해서 당사자 간 '서면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넷째, 연구 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다섯째,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공동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여섯째,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장, 연구 후원사 등은 연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않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편 특정 연구보고서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재위탁)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보고서에 포함할 때, 즉 연구보고서의 일부장, 절에 타인이 쓴 내용을 거의 그대로 포함시킬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용역 받은 내용에 대한 글을 쓸 때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 계약서 명기, 교육 및 감독을 해야 한다.
둘째,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거나 혹은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름 명기)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표기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보고서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관련 내용을 전문 학술지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발표할 경우,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먼저 출판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차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구윤리 준수 서약, 연구윤리 준수 점검방법, 연구 결과 발표 방법, 연구윤리 위반 시 책임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1조(중복게재) ①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1.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2.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3.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피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2.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3.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4.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5.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
6.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7.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8.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③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의 출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해설 •

제11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중복게재의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 속에 있는 가설, 표본의 특성, 방법론, 결과 및 결론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또는 학술지 편집인에게 알리지 않고 다시 게재할 경우, 중복게재로 판단한다. 여기서 '이전에 게재되었다'는 의미는 전자 자료든, 인쇄된 자료든, 어떤 언어로 되어 있든 독자에게 충분히 인지될 수 있을 정도로 매체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활용함에 있어 ① 활용한 것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② 활용한 것 중에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는 경우, ③ 출처를 밝혔다 해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

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한다.
① 과 관련하여, 표절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처럼, 중복게재도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성립한다.
② 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전 저작물 여러 곳을 활용하면서도 그 중 일부에만 출처를 표기할 때 중복게재로 판단한다.
③ 과 관련하여, 연구기관 연구보고서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다른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출처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단지 이전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새로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중복게재로 판단한다.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중복 정도를 단순히 양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후속 연구와의 연계 및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표절의 예외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1조 제2항에서는 중복게재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복게재 예외 사항으로는, 첫째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활용한 경우, 둘째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셋째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넷째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다섯째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여섯째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일곱째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여덟째,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한 예들은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

성을 고려하여 학계에서 통용되는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들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차 보고서나 유사한 주제에 대한 심화 및 확장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보고서 작성 시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였다.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중복게재가 아니다.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 거부된 논문이나, 전문 학술대회에서 초록 발표 등으로 예비 보고한 결과를 완성시켜 보고하는 논문은 중복게재가 아니다. 또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 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나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

제11조 제3항은 형태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는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를 "허용되는 2차 출판(secondary publication)"이라고 한다.

첫째, 저자가 원전을 출판한 저작물 편집인과 2차 출판을 하려는 저작물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받는 경우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 2차 출판을 하려는 저작물 편집인이 원전의 복사물, 별쇄본 또는 원고 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원전을 출판한 저작물의 선취권을 존중해야 하며, 가능한 한 1차 출판과 2차 출판 사이에 최소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어 출판을 해야 한다.

셋째, 2차 출판을 하는 저작물은 원전 저작물과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넷째, 2차 출판한 저작물의 표제지의 각주에 저작물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판되었음을 명시하고 원전을 기록해야 한다.

3) 연구보고서의 출처표기 등

제12조(출처표기와 인용) ① 연구보고서 작성 시 출처표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처표기는 원칙적으로 문장 단위로 한다.
2. 출처표기 방법은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법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출처표기 방법은 연구보고서의 종류 별로 달리할 수 있다.
4.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 하에 포함시킨다.
5.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
6. 표, 그림,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7. 원본 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출처표기와 원본 수정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연구보고서 작성 시 인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 한다.
2.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indentation)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힌다.
3. 말바꿔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4.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한다.

• 해설 •

제3장 "연구보고서의 출처표기 등"에서 제12조 출처표기와 인용은 연구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알고 실천해야 할 출처표기와 인용의 방법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표기의 대전제는 원저자의 업적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독자들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그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연구자의 것이고 원저자의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연구보고서에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용한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다음은 평가규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처표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해설이다.

첫째,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작성 시 출처표기는 문장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간접 인용(말바꿔쓰기나 요약 등) 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의 경우는 보고서의 가독성 측면을 고려하여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둘째, 출처표기의 방법은 학문 분야의 특성이나 연구기관이 정한 출판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구보고서의 종류에 따라 어떤 출처표기의 방식을 따르든 한 보고서 내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출처표기의 방법은 해당 학계 등에서 통용되는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보고서의 종류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연구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문헌의 중요사항(저자명, 저작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등)을 제시해야 하며,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을 참고문헌란에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과 같은 제목 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부주의 및 불성실로 인하여 활용하지도 않은 것을 활용한 것처럼 하거나, 출처를 표기한 곳을 확인해 보니 해당 내용이 없거나 페이지가 잘못 명시되어 있는 등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주석(각주, 미주 등)에서 인용한 문헌은 참고문헌에 기재해야 함)

다섯째,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과 동시에 반드시 접속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는 수시로 삭제,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자료에 연구자가 접속한 URL과 날짜를 표기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후속 연구자가 해당 인터넷 자료를 통해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원저자의 자료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원저자가 해당 인터넷 자료에 대한 접속정보를 밝히지 않는다면, 후속 연구자는 원저자의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 위반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터넷 자료 역시 타인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처표기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는 타인 저작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을 가져다 쓰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표절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연구윤리 위반 의심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평가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URL과 접속날짜를 표기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22)]

여섯째,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표, 그림, 사진은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대체로 학술논문에서 표, 그림, 사진에 대한 출처표기는 해당부분(표, 그림, 사진의 하단)과 본문에 모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이들 중 어느 한 곳에서만 명시해도 유효하다는 의미이지만 가능하면 양쪽 다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에도 표, 그림, 사진의 출처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표, 그림, 사진 등의 출처표기는 해당부분에 출처표기하는 것이 원칙임)

일곱째, 원본 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출처표기와 원본 수정사실을 밝혀야 한다. 타인이 작성하여 제공한 통계원본자료(raw data)나 표 등을 토대로 수정하여 보고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자가 원본 자료의 저자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이므로 원본의 출처표기를 하여야 하며, 본문에 수정활용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 이유도 기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표절과 중복게재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기본적으로 출처를 적절하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발생하므로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용한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고, 평가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다음은 평가규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작성 시 인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제12조 제2항 제1호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저자의 업적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독자들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할 경우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보고서 본문에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자명과 출판연도 등을 약식으로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참고문헌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지사항(저작물의 제목, 출판지 및 출판사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엄격하게 표절이라고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올바른 글쓰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독자는 연구자가 실제로 인용한 저작물을 직접 고찰하고 분석하여 제시한 것인

22) URL 및 접속날짜의 표기는 주석(각주, 미주 등) 또는 참고문헌에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지, 다른 사람이 이미 작성한 것을 차용하여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제시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활용한 저작물에 대해서 약식으로 출처를 밝힌 경우라도 반드시 참고문헌에는 상세한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제12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와 관련해서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인용의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23] 첫째,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verbatim, copying), 일부 단어를 말바꿔쓰기(paraphrasing)를 하거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때(summarizing),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타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해야(credit) 한다. 둘째,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직접 인용할 때는 해당 부분은 인용부호(" ")로 표시해야 한다. 셋째,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말바꿔쓰기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논리 구조에 의한 언어로 표현해야 하며 출처를 밝혀야 한다. 넷째,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의견, 비판점이나 역사적 사실은 직접적으로 인용하든 말바꿔쓰기를 하든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섯째, 기술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일반 지식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여섯째, 웹(web) 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이나 단행본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처럼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일곱째, 통계 자료와 같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factual information)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어떤 저작물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신의 기여도가 타인의 기여도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용 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 내용이 주를 이루도록 글쓰기를 해야 한다.

23) 이인재, "바람직한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연구윤리의 이해", Endocrinol Metab, 26(1), 2011, p. 23.

제13조(출처표기의 대상) ① 연구보고서에서 출처를 표기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2. 전자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전자화된 학술지 등)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
3.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 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 지표 등
4. 이미지: 그림, 그래프, 표, 설계도면, 지도, 사진 등
5. 기록물: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등
6. 구두 자료: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②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공개자료, 발주기관 비공개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해설 •

제13조는 연구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출처표기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용한 자료가 출판되었든 출판되지 않았든 출처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연구자들이 인용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또는 관련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는다.

평가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처표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쇄된 자료로 책, 학술 논문, 신문, 학술대회 발표자료(proceeding) 등 출판된 모든 자료

둘째, ProQuest와 Lexis-Nexi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개인이나 단체 및 정부 또는 기관 웹사이트, 블로그,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24]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있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출판된 것이거나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등 전자 자료

셋째, 정부가 출판한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지표 등 데이터

넷째, 그림, 그래프, 표, 설계도면, 지도, 사진 등 이미지

다섯째,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오디오 파일(podcasts) 등의 기록물

여섯째, 개인과 대화, 인터뷰, 강의나 포스트 세션 그리고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24)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인용의 경우에는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정보 등 구두자료(spoken material).
다만,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이 비공개로 하고 있는 내부자료, 정부부처의 비공개 자료, 발주기관 비공개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저자가 지도, 사진이나 그림을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저자 작성'과 같은 문구를 추가 표기하며, 페이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전자책이나 인터넷 자료는 그 출판형태와 인터넷주소(URL), 인터넷 접속일자, 인용된 부분의 장과 절 등을 표기한다.[25]

제14조(연구보고서 작성 등)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연구윤리 위반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2.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3.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한 경우, 인용부호 및 인용단락 표기 그리고 그 출처와 해당 페이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4.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간접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연구보고서에서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대중에게 공개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책 자료나 법령 등을 인용할 때, 통계 자료를 그대로 또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해설 •

제14조는 연구자들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할 인용 원리와 방법, 그리고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의 참고문헌 기재 등의 유의사항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연구윤리 평가에서 부적절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인용, 출처의 누락, 활용한 문헌의 참고문헌 미표기 등과 같은 사항들이 많이 지적된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들은 이 부분에 유념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5) 특히, 인터넷 자료는 저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수시로 내용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를 알 수 있으면 저자를 표기하고, 알 수 없으면 글의 제목을 표기함.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last modified date)를 알 수 있으면 그것을 표기하고, 알 수 없으면 저자가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한 날짜를 표기함.

제14조 제1호와 제2호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권위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타인 저작물을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한 후, 관련된 자신의 주장 및 논리의 맥락에 부합됨을 보여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호와 제4호는 연구보고서 본문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 내용주나 각주 등을 통해 명확하게 출처를 표기하고 참고문헌에도 제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주나 각주 등을 통해 출처표기를 하면서도 참고문헌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2차 문헌 표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출처표기 누락이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출처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저자가 의도성을 가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표절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중요한 피인용 논문을 참고문헌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편집상의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독자들이 해당 문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기를 분명하게 하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5호는 연구보고서에서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서 출처의 누락이나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를 단순 실수라고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 본문에는 충분한 서지사항이 없는 간단한 출처표기(저자명과 연도만 표기)를 하고, 참고문헌에는 완전한 출처표기가 누락된 경우, 독자는 연구자가 원저작물을 직접 보고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인용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1차 문헌을 불충분하게 출처표기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는 재인용을 하고 있는 경우 정확하게 재인용 표기를 하여 2차 문헌 표절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인터넷 자료는 저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수시로 내용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한 날짜를 적시하여야 하고, 저자를 알 수 있으면 저자를 표시하고, 알 수 없으면 글의 제목을 적시한다.

제6호는 대중에게 공개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책 자료나 법령 등을 인용할 때, 통계 자료를 그대로 또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참고문헌 서지사항에도 표기를 해야 한다.

4) 연구윤리 평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제15조(평가 절차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평가 절차
2. 평가 결과의 산출 방법
3. 평가 결과의 활용
4. 그 밖에 연구윤리 평가 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에는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연구기관에게 소명 기회 부여, 피조사자의 권리 및 비밀 보호 등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의 산출 방법에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과 위반 정도의 심각성, 위반 건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활용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평가 결과의 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해설 •

제4장은 연구윤리 평가 및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5조는 연구윤리 평가 절차 그리고 평가 결과의 산출 방법과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정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15조 제2항은 연구윤리 평가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연구윤리 평가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연구기관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연구윤리 위반 의심 대상자(피조사자)에 대한 권리 및 비밀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5조 제3항은 연구윤리 위반 건수(위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윤리 평가에서는 ①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중복게재와 같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되는지, ②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것인지 경미한 것인지, ③ 위반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제1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며, 연구윤리 위반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4.26.>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이 연구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은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자 제재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4.26.>

[별표] <신설 2019.4.26.>

연구윤리 위반 연구자 제재조치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내부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 일정기간 연구 참여 제한
- 소속 기관의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및 주의·경고

위반의 중대성 / 위반의 고의성	강	중	약
고의·중과실	중징계[1] 의결 요구	경징계[2]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3]
경과실	경징계[2]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3]	

주 1) 중징계 : 해임, 파면, 정직, 2) 경징계 : 감봉, 견책, 3) 서면 주의 또는 서면 경고

○ 외부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일정기간 연구 참여 배제, 연구 계약 해제, 기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연구윤리위반 사실 소속기관 통보 등

○ 공통 의무사항
- 해당 발간물의 수정 또는 발간 금지
- 내부 연구자에 대한 일정 시간 이상 연구윤리 교육 이수

• 해설 •

제16조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할 때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연구회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하여 해당 연구기관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과 제4항에서는 해당 연구기관이 연구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은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그 내용을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자 제재조치 결과 보고를 검토하여 연구기관의 제재조치 결과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

제17조(설치근거) 이사장은 제19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총괄위원회 위원, 연구회 평가담당 부서의 실장, 관련 주무부처 4급 이상 담당공무원(이상 당연직), 관련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부재 시 기획평가위원회 기획총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 검토
2.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 다만,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선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변경 시 위원회의 추천없이 이사장이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선정한다.
3. 평가대상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연구윤리 평가위원 3배수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 다만, 평가단 구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 변경 시 이사장이 위원회의 추천없이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4.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개정안 검토
5. 이사회에 보고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평가결과안 확정
6. 연구윤리 교육교재 검토
7. 연구회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 제보에 의한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위원회에 부여한 업무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의 임기와 동일하고, 그 외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간사는 연구윤리 평가 담당부서의 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준비 하고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직무상 필요한 경우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연구를 수행한 내·외부 연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보칙)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 연구윤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선정, 연구윤리 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이사장이 매년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 해설 •

제5장은 연구회에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 기능,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총괄위원회 위원, 연구회 평가담당 부서의 실장, 관련 주무부처 4급 이상 담당공무원(국무조정실 연구지원과장), 관련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는 첫째,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 검토, 둘째,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의 선정 및 이사장에 대한 추천, 셋째, 평가대상 보고서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연구윤리 평가위원 3배수 선정 및 이사장에 대한 추천, 넷째, 연구윤리 평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검토, 다섯째, 이사회에 보고하는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결과안 확정, 여섯째, 연구윤리 교육교재 검토, 일곱째, 연구회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 제보에 의한 연구윤리 검증, 여덟째, 그 밖에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위원회에 부여한 업무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연구회 차원에서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반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등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그 직의 임기와 동일하고, 그 외의 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0조).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제21조).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연구회 및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내·외부 연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22조). 연구회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보될 때 연구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제19조제7호).[26)]

26) 이 경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을 준용. 연구 진실성 검증의 일반적 절차에 대해서는 제14조에서 제26조 참고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전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정 2014. 4. 11.
개정 2015. 3. 6.
2015. 12. 4.
2016. 4. 15.
2018. 9. 20.
2019. 4.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창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 및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란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3.6.>
   라.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3.6.>

3.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 활동 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정도의 평가에 적용하며, 그 외의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 사항들은 관련 상위 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5.3.6., 2019.4.26.>

제4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 평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 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② 연구자는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책무) ①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제6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평가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인력 풀을 확보하고,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③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기준

제7조(위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1.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2.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3.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4.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개정 2015.3.6.>

제8조(변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한다.

1.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5.3.6.>
2.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3.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4.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제9조(표절)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1.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4.15.>
2.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3.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개정 2015.3.6.>
4.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개정 2015.3.6., 2019.4.26.>
5.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개정 2015.3.6.>

6.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개정 2015.3.6., 2016.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3.6.>
2.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개정 2015.3.6.>
3.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신설 2015.3.6.>
4.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신설 2015.3.6.>
5.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신설 2015.3.6.>
6.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6.4.15.>

제10조(부당한 저자 표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5.3.6., 2016.4.15.>

1.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3.6.]

제11조(중복게재) ①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1.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개정 2015.3.6.>

2.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개정 2015.3.6.>
3.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3.6., 2019.4.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15.>

1.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개정 2015.3.6.>
2.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3.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개정 2015.3.6.>
4.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5.3.6.>
5.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신설 2015.3.6.>
6.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신설 2015.3.6.>
7.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개정 2015.3.6.>
8.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개정 2015.3.6.>

③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의 출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 3 장 연구보고서의 출처표기 등 [제목개정 2015.3.6.]

제12조(출처표기와 인용) ① 연구보고서 작성 시 출처표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6.>

1. 출처표기는 원칙적으로 문장 단위로 한다. <개정 2015.3.6.>
2. 출처표기 방법은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법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5.3.6.>
3. 출처표기 방법은 연구보고서의 종류 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6.>
4.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 하에 포함시킨다.
5.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5.3.6.>
6. 표, 그림,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3.6.>
7. 원본 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출처표기와 원본 수정사실을 밝혀야 한다. <신설 2016.4.15.>

② 연구보고서 작성 시 인용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한다.
2.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indentation)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힌다.
3. 말바꿔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6.>
4.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한다.

[제목개정 2015.3.6.]

제13조(출처표기의 대상) ① 연구보고서에서 출처를 표기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6.>

1.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개정 2016.4.15.>
2. 전자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전자화된 학술지 등),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 <개정 2016.4.15.>
3.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 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 지표 등 <개정 2015.3.6.>
4. 이미지: 그림, 그래프, 표, 설계도면, 지도, 사진 등 <개정 2016.4.15.>
5. 기록물: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등
6. 구두 자료: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②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공개자료, 발주기관 비공개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3.6.>

[제목개정 2015.3.6.]

제14조(연구보고서 작성 등)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연구윤리 위반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2.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3.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한 경우, 인용부호 및 인용단락 표기 그리고 그 출처와 해당 페이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6.>
4.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간접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연구보고서에서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대중에게 공개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책 자료나 법령 등을 인용할 때, 통계 자료를 그대로 또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 4 장 연구윤리 평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제15조(평가 절차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평가 절차
2. 평가 결과의 산출 방법
3. 평가 결과의 활용
4. 그 밖에 연구윤리 평가 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에는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연구기관에게 소명 기회 부여, 피조사자의 권리 및 비밀 보호 등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의 산출 방법에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과 위반 정도의 심각성, 위반 건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활용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평가 결과의 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1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며, 연구윤리 위반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4.26.>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이 연구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은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자 제재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4.26.>

제 5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7조(설치근거) 이사장은 제19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총괄조정분과위원회 위원, 연구회 평가담당 부서의 실장, 관련 주무부처 4급 이상 담당공무원(이상 당연직), 관련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부재 시 기획평가위원회 총괄조정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9.20.>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 검토
2.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 다만,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선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변경 시 위원회의 추천없이 이사장이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선정한다.
3. 평가대상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연구윤리 평가위원 3배수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 다만, 평가단 구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 변경 시 이사장이 위원회의 추천없이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4.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개정안 검토
5. 이사회에 보고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평가결과안 확정
6. 연구윤리 교육교재 검토
7. 연구회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 제보에 의한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위원회에 부여한 업무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의 임기와 동일하고, 그 외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간사는 연구윤리 평가 담당부서의 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준비하고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2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직무상 필요한 경우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연구를 수행한 내·외부 연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보칙)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 연구윤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선정, 연구윤리 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이사장이 매년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14.4.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4.>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9.2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19.4.26.>

연구윤리 위반 연구자 제재조치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내부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 일정기간 연구 참여 제한
- 소속 기관의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및 주의·경고

위반의 중대성 / 위반의 고의성	강	중	약
고의·중과실	중징계[1] 의결 요구	경징계[2]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3]
경과실	경징계[2]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3]	

주 1) 중징계 : 해임, 파면, 정직
2) 경징계 : 감봉, 견책
3) 서면 주의 또는 서면 경고

○ 외부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일정기간 연구 참여 배제, 연구 계약 해제, 기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연구윤리위반 사실 소속기관 통보 등

○ 공통 의무사항
- 해당 발간물의 수정 또는 발간 금지
- 내부 연구자에 대한 일정 시간 이상 연구윤리 교육 이수

Ⅲ.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

이 장에서 제시된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는 2014년도~2018년도 연구윤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 의심사례들 중 연구자의 부주의나 편집 과정상의 실수 등으로 발생한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가 곧 연구윤리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 판정은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이 사례집에서는 제시하는 사례의 연구자와 연구보고서 제목 등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여 연구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1. 연구부정행위

2. 연구부적절행위

3. 기타 부주의

1. 연구부정행위

1) 위조 의심사례

위반 유형__위조 의심사례

판단 근거__이 보고서에서는 2013년 4월 18일 E초등학교의 E교사를 대상으로 수학 과목의 흥미 유발과 관련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내용은 2011년 같은 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포함된 인터뷰 내용과 동일함. 사실상 2년여의 시차를 둔 인터뷰 내용이 비유법과 문장 구성 등에서 모두 동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저작물의 연구 결과를 출처표기 없이 본 연구의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 위조 사례로 의심됨.

관련 규정__제7조 제1호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예시

의심원문

대안 2 흥미 유발을 위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지도 방법

E초등학교 E교사는 학생들이 수학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수학을 공부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한다. 만약 수학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수업을 진행한다면 흥미를 유발하기 힘들 것이다. E교사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수업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바꾸는 것이 단순하게 재미있는 소재나 활동을 도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에 더하여 수학 내용만을 염두해 둔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요리법을 배우듯이 교육과정을 따라서 일정 내용을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가르치게 될 뿐이라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E초 E교사 : 요리법처럼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문제풀이 방법을 로봇처럼 배우지요. 특히,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연습문제만 풀게 하는 등의 기계적인 수업을 진행한다면 수학시간이 지옥과 같다고 해요. 그러나 내용에 따라 가르치는 방식을 달리하여 지도한다면,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도울 수 있어요.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에게도 컴퍼스로 꽃을 그리게 하는 등의 쉽고 재미있게 수학적 능력을 가르치는 방법, 즉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되지요.

의심부분 대상원문

결국 핵심역량은 그 내용이 아니라 수업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Y교사는 수학내용만을 염두에 둔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요리법을 배우듯이 교육과정을 따라서 일정 내용을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Y교사 : 요리법처럼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문제풀이 도구를 로봇처럼 배울 것이다. 특히,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연습문제만 풀게 하는 등의 기계적인 수업을 진행 한다면 수학시간이 지옥과 같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 가르치는 방식을 달리하여 지도한다면, 학생들이 수학에 관심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에게도 컴퍼스로 꽃을 그리게 하는 등의 쉽고 재미있게 핵심역량을 가르치는 방법, 즉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된다.

Y교사는 학생들이 수학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수학을 공부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수학에서 핵심역량을 가르치려면 수만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해설 및 개선방안

위의 사례는 연구자가 직접 관계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물인 것처럼 일부 내용을 위조하여 제시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만일 다른 연구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활용하려면 적절한 인용절차를 거쳐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 밖에 설문조사 또는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나타난 것처럼 제시한다거나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그리고 연구계획서와 합치한다는 점을 억지로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도 경제·인문사회 분야에서 일어나기 쉬운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위조'에 해당하므로, 연구자들은 항상 진실한 결과만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변조 의심사례

위반 유형__변조 의심사례

판단 근거__변수 X와 Y 간에 양(+)의 선형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래의 연구 자료를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변조사례에 해당함.

관련 규정__제8조 제4호 연구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예시

의심원문

● 분석자료

	1	2	3	4	5	6	7	8	9	10	11
Y	170	165	174	180	166	163	172	177	158	176	168
X	174	173	175	179	172	−170	177	−183	167	180	175

• 두 자료는 가상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실제로 맞는(correct) 자료라고 가정함.

● 회귀분석 결과 $Y = 169.8889 + 0.0001\ X$
$(62.18)\quad (0.01)$

의심부분 대상원문

● 분석자료

	1	2	3	4	5	6	7	8	9	10	11
Y	170	165	174	180	166	163	172	177	158	176	168
X	174	173	175	179	172	170	177	183	167	180	175

• 원래의 관찰치 6과 8의 X의 값을 고의로 부호를 바꾸어서 X'로 만듦.

● 회귀분석 결과 $Y = -63.6994 + 1.3349\ X'$
$(-1.97)\quad (7.23)$

● 결 론

변조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당초의 목적대로 변수 X와 Y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선형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호도함.

해설 및 개선방안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돋보이게 하거나 가설검증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료(각종 데이터)를 고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 또는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로 연구자의 정직성을 훼손하고, 그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해침으로써 연구자의 자격이 의심을 받게 된다. 특히 설문조사, 인터뷰(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하고 해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연구자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통계학적 근거에 입각한 객관성을 담보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고의적인 변조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써 이루어진 경우,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변조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3) 표절 의심사례

(1)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위반 유형__표절 의심사례

판단 근거__독일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본 보고서의 pp.xx-xx 과 pp.xx-xx에 해당하는 내용이 OOO(20xx)의 내용과 상당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을 상당 부분 참조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에 대한 출처표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사례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사례로 의심됨.

관련 규정__제9조 제1항 제1호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예시

의심원문

<의심부분 1>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 및 금융, 임대 및 기업서비스업 등이 성장을 주도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금융, 임대 및 기업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용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중 략 -

문제는 독일 전체에서 동독지역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21.9%에서 2014년 18.1%로 감소하여 동독지역의 노동력 감소 폭이 인구 감소 폭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 출생자들이 학업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했거나 동독 구사회주의 정권 시절 과잉 고용 현상이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통일 직후 동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량실업의 여파로 1991년 동독지역의 실

업자 수가 인구나 근로자 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독일 전체 대비 38.9%를 차지했지만, 통일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독의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에 따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동독은 서독에 비해 구조적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의심부분 2>

독일 통일 직후 동독지역의 대량실업은 동독지역의 인적자본 기반을 붕괴시켰고, 이로 인해 장기적 실업자가 출현하여 예기치 않았던 막대한 사회·경제적 폐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 중 략 –

즉 구동독 사회주의 시기 고용자 수의 1/3이 통일 후 2년 만에, 그리고 통일 후 8년 만에 약 2/5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통일 초기 단기적으로는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조치를 우선적으로 가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업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실업에 따른 사회정책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통일과도기의 노동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 단축근로조치(Kurzarbeit), 조기정년퇴직제도및 고용창출조치(ABM: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등을 실시했다. 또 노동 공급 측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잠재력과 질적 향상을 통한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직업계속교육 및 전환교육(FuU: Fortbildung und Umschlung) 등을 실시했다.

– 중 략 –

마이스터시험 교과과정 및 기업 창업 교과과정에 대한 연수 지원, 상공업회의소를 통한 비즈니스맨 실습회사의 설립 지원 및 상공회의소의 직업 상담가들을 위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 중 략 –

(각주 47)연대성 원칙: 한 보트를 타고 있는 모든 승선원은 함께 생존해야 한다는 개념의 연대성 원칙은 독일 기업지배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인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는 감사회 기능으로 구체화되었다.

– 중 략 –

사회적 시장경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공정경쟁의 틀 안에서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특정 그룹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의 영역이다. 예컨대 무상 대학교교육, 무상 직업교육 등과 R&D를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 중 략 –

(각주 48) 보충성 원칙: 그 보트 위에 승선한, 즉 우리 사회에 속한 한 개인의 자율성과 성장이 위협받을 때, 사회나 국가 등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은 우리 사회 내의 소수자(minority)나 사회적 기업을 정부나 기업들이 도와야 한다는 기준을 제공했다.

– 중 략 –

2005년 집권한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도 'Agenda 2010'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 출산 장려 등의 구조개혁을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의심부분 대상원문 1>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 및 금융, 임대 및 기업서비스업 등이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고용측면에서는 금융, 임대 및 기업서비스업을 제외하곤 대체로 고용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2>

문제는 독일 전체에서 동독지역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21.9%에서 2014년 18.1%로 동독지역의 노동력 감소폭이 인구 감소폭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이후 동독지역 출생자들이 학업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동독 구사회주의 정권시절 과잉고용 현상의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일직후 동독지역에서 집중

적으로 발생한 대량실업의 여파로 1991년 동독지역의 실업자 수가 인구나 근로자 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독일전체 대비 38.9%를 차지하였으나, 통일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28.4%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독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에 기인한 것도 있기에 아직도 동독은 서독에 비해 구조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직후인 1991년 독일 전체 GDP에서 동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2%로 인구규모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경제력을 보였으나, 통일이후 최근까지 경제력이 회복되어 2014년 동비중은 15.0%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은 통일직후 매우 낮아 1991년 독일전체에서 동독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7%이었으나, 2014년에는 동비중이 8.7%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지표상으로 살펴본 독일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동서독 간 격차가 있으나 서독대비 동독의 1인당 GDP 수준이 1991년 42.8%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71.9%로 상승한 것처럼,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개선된 이유는 지속적인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통일이후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 서독대비 동독의 1인당(1근로자당) 자본스톡이 1991년 45%(47%)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80%(89%)에 달하고 있음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 중 략 –

이는 노동생산성 45.1%를 상회하고 또한 단위노동비용도 서독수준 71.8%를 상회하는 74.2%로 이른바 고임금정책의 결과

– 중 략 –

동독의 단위노동비용도 67.6%로 감소시켜 서독의 66.3%보다는 다소 높지만, 동서독간 단위노동비용격차가 감소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

<의심부분 대상원문 3>

통일직후 동독지역의 대량실업은 동독지역의 인적자본 기반을 붕괴시켰고 장기적 실업자를 출현시킴으로써 예기치 않았던 막대한 사회·경제적 폐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구동독 사회주의 시기 고용자수의 1/3이 통일후 2년 만에 그리고 통일후 8년 만에 약 2/5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는데,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통일초기 단기적으로는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조치 가동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업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 및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였다.
독일 정부는 실업에 따른 사회 정책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통일과도기의 노동손실을 억제하기 위해 단축근로조치(Kurzarbeit), 조기정년퇴직제도 및 고용창출조치(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ABM) 등을 실시하였으며 노동공급측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잠재력과 질적 향상을 통한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직업계속교육 및 전환교육(Fortbildung undUmschlung: FuU) 등을 실시하였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4>

마이스터시험 교과과정 및 기업창업 교과과정에 대한 연수지원, 상공업회의소를 통한 비지니스맨 실습회사의 설립 지원 및 상공회의소의 직업 상담가들을 위한 인건비보조금을 지원 등의 지원

<의심부분 대상원문 5>

한 보트를 타고 있는 모든 승선원은 함께 생존해야 한다는 개념의 연대성원칙은 독일 기업지배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인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는 감사회 기능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 보트 위에 승선한 즉 우리 사회에 속한 한 개인의 자율성과 성장이 위협받을 때, 사회, 국가 등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보충성원칙은 우리 사회 내의 소수자(minority)나 사회적기업을 정부나 기업들이 도와야 한다는 기준을 제공하였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공정경쟁의 틀 안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갖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함을 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그 효과가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특정그룹이 아닌 무특정 다수가 수혜 받을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의 영역, 예컨대, 무상대학교 교육, 무상 직업교육 등과 R&D를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6>

2005년 집권한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도 『Agenda 2010』 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교통 인프라 투자확대, 출산 장려 등의 구조개혁을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설 및 개선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노동시장과 관련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본 보고서의 해당 내용은 OOO(20xx)의 내용과 상당 부분 동일하여, 해당 저작물을 상당 부분 참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OOO(20xx)에 대한 출처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사례는 타인에 의해 수집, 작성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출처표기를 다시 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제시한 경우로 의심된다.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출처표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연구자가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많은 분량을 직접 인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표현방식으로 짧게 말바꿔쓰기나 요약을 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2) 타인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위반 유형__표절 의심사례

판단 근거__평가대상 보고서의 pp.xx-xxx에 있는 내용은 표절 의심부분 대상원문 pp.xx-xxx에 있는 내용을 번역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음. 외국어로 된 타인의 저작물을 연구자가 우리말로 직접 번역 또는 번역 후 말바꿔쓰기나 요약 등을 통해 활용하면서도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함.

관련 규정__제9조 제1항 제2호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예시

의심원문

<의심부분 1>

국가와 지역에 따라 교육에 대한 장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다르지만, 교육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관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의심부분 2>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수의 아동·청소년은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UNESCO(2012)의 보고에 따르면, 취학하지 못하거나 초등학교 입학 후 4년 이내에 교육과정에서 탈락하는 아동이 약 1억2천만 명에 이르며, 적어도 2억5천만 명의 초등학생이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발달수준에 적합한 학업 기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의심부분 3>

또한 열악한 교육수준은 아동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국가에 사는 아동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부유한 나라에 사는 아동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국가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십여 년 간 국제적인 차원에서 모든 아동에 대해 초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아동들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교육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의 아동도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의 질적 수준과 학업성취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범세계적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에 여러 국가에서 학습성과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들을 개발하고 사용해 왔으나, 이를 이용한 국가 간 학습의 질적 수준 및 학업성취 결과를 비교·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험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학습에서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의 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학습성과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의심부분 4>

1) 학습 역량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7개 학습 영역에 걸쳐 역량을 개발한다. 학습성과 평가지표 전문팀(LMTF)는 교육체계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미래의 삶과 생계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7개 영역에서 학업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세계 전역의 교육과정은 유아기부터 초기 중등교육(lower secondary school)에 이르기까지 이 7개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아동이 이후에 학업을 지속하든 직업을 가지게 되는 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이라는 점에서 중등교육까지로 제한하였다. 학습 영역의 글로벌 체계는 정규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적용하기보다, 학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든지(공동체 교육 시스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등)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아동의 학습시기
유아기, 초등교육기, 중등교육기 등과 같은 학습 단계 또는 학교교육 단계에 대한 구분은 지역이나 국가, 때로는 아동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누어질 수 있다. 학업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에 따라 학교 교육의 단계를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중 략 –

나) 아동의 학습 공간

앞서 제시한 것처럼 학습성과 평가지표 전문팀(LMTF)는 대상 아동의 범주를 세 단계(유아기, 초등교육기, 초등교육 이후 시기)로 구분하면서 이에 맞추어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업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비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많은 유아들이 정규 유아교육 과정에 참여하지만, 세계의 여러 국가에 속한 다수의 유아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부모나 형제 혹은 다른 구성원에 의해 체계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등교육과정이나 이를 대신할 만한 다른 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아동들의 경우에는 일터나 가족, 지역 등과 같은 데에서 비공식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초등학교 과정 이후의 교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Lŭftenegger et al., 2012).

다) 학습 영역의 범세계적인 구성틀(Global Framework of Learning Domains)

국가나 지역에 따라 학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장소가 다르고, 상이한 교육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모두에게 좋을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성과 평가지표 전문팀(LMTF)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초기 중등교육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요구되는 7개의 학습 영역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그림 Ⅲ-4-1].

– 중 략 –

2) 범세계적 학습성과 추적을 위한 평가지표

TF는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지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들 지표는 아동이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학습기회를 평가하게 된다. 각 지표는 기존에 제작된 평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및 모든 국가에 적합한 학습의 전 영역을 다루고자 하는 원의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 중 략 –

이제까지 사용되어 오던 지표들은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 성취 결과, 문해 및 산술과 관련된 기술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유아기 학습 및 발달,

문제해결기술, 비판적 사고력과 같이, 이전에 다루었던 것과는 다른 영역에서 학업의 진행상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학습성과 평가지표 전문팀(LMTF)은 지표를 구성하는 내용을 다각적으로 선정하고자 했다. 각 국가들의 입장에서 처한 상황에 맞는 목표 및 요구에 맞추어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해 논의를 거쳐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 중 략 –

3) 국가 지원

TF는 각 국가들의 평가 체계의 강화와, 궁극적으로는 학습성과 수준의 향상을 지원한다. 평가 및 학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교육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다. 국가 정부 및 비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과 아동·청소년이 배워야 한다고 여기는 국가 비전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면서 학업성취 결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TF는 학업에 대한 평가 및 성취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평가 체계의 질적 수준을 진단하고, 관련자들을 소집하며,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제도적·정치적 영역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기술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TF는 새로운 독립 기구를 창설하기보다, 각 분야의 관계자들 간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교사 및 시민사회와 더불어 교육부와 다른 정부 기관이,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의 경제적·교육적 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민간 분야의 관련자들과 재단, UN 산하 기관, 시민사회, 교원기관, 연구소 및 기타 기관들이 이 권고사항에 따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의심부분 대상원문 1>

The barriers to education, and the most effective solutions, will vary by country. But the commitment to learning must be constant and unwavering.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SG HLPEP, 2013)

<의심부분 대상원문 2>

But too often children leave school without acquiring the basic knowledge and skills they need to lead productive, healthy lives and to attain sustainable livelihoods. According to estimates in the 2012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UNESCO, 2012):

- Approximately 120 million children either never make it to school or drop out before their fourth year.
- At least 250 million primary school-age children around the world are not able to read, write or count well enough to meet minimum learning standards, including girls and boys who have spent at least four years in school.

<의심부분 대상원문 3>

Poor quality education is jeopardizing the future of millions of children and youth across high-, medium- and low income countries alike. Yet we do not know the full scale of the crisis because measurement of learning achievement is limited in many countries, and hence difficult to asses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 global data gap on learning outcomes is holding back progress on education quality. Because many countries lack sufficient data and capacity to systematically measure and track learning outcomes over time,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and accountability become impossible. There is a critical need for robust data to understand the full scale of the learning crisis. Only then can we target policy to address areas of need, track progress and hold ourselves to account.
Recommendations Toward Universal Learning
Motivated by these challenges, and with the ultimate goal of creating better learning experiences for children and youth around the world, the Learning Metrics Task Force was convened by th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the 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beginning in July 2012. Through a highly inclusive, multi-stakeholder process, the education community has reached a consensus on the skills and competencies that are important for all children and youth to develop and a small set of indicators that are feasible and desirable to track at the global level. The global task force of 30 member organizations, working groups comprised of 186 technical experts, and more than 1,700 consultation participants from 118 countries have worked together over the past 18 months to mak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의심부분 대상원문 4>

Recommendation 2: Learning Competencies

All children and youth develop competencies across seven domains of learning. The task force recommends that:

- Education systems offer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youth to master competencies in the seven domains of learning that are essential as they prepare for their future lives and livelihoods.
- Education systems prioritize these competencies starting from early childhood through lower secondary school.
- Educationalists apply this framework to the wide range of intentional learning settings in which children and youth are educat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ormal schooling, community education systems and nonformal education programs.

– 중 략 –

When Do Children Learn?

The phases of learning for a child can be delimited by stages (early childhood, primary and postprimary), schooling levels and/or age. The association between these groupings varies by region, country and even by child. In support of the notion that learning occurs along a continuum, the following table defines the stages,

– 중 략 –

Where Are Children Learning?

The task force decided to organize its recommendations around three educational levels (early childhood, primary and postprimary), while acknowledging that intentional learning does not happen in schools alone. Many children and youth, including some of the most marginalized, learn through nonformal education programs. In high-income countries, many young children attend formal, regul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s; but the majority of the world' young children learn in nonformal contexts through unstructured or nonformal processes. For

these children, learning typically occurs in the home and community through interaction with parents, siblings and other family members. For children who do not attend secondary school or another intentional learning program, learning after primary school mainly takes place through work, family and community experiences (i.e. nonformal, unstructured contexts) (Wagner et al., 2012). Furthermore, to make recommendations that are relevant for the next 15 years, the task force chose to use a broad definition of "chool"or "lassroom"as
online and experiential learning programs become more prevalent.
Global Framework of Learning Domains
Given the various structures, places and times when people learn, it is a challenge to define what learning outcomes are important for all, especially at the global level. Yet based on research, existing global policies and dialogues as well as consultation with the education community, the task force sets forth a broad, holistic
framework of seven learning domains as the aspiration for all children and youth around the world by the time they reach the postprimary level (see Figure 5).

– 중 략 –

Recommendation 3: Learning Indicators for Global Tracking
Learning indicators are tracked globally. The task force recommends that:

- A small set of learning indicators be tracked globally. These indicators measure fundamental learning opportunities over a child' educational career.
- Countries debate, prioritize and take action to determine precisely what they will measure in relation to their specific goals and needs.
- Multiple methods be used to track competencies at the global level.

– 중 략 –

Currently, indicators for global monitoring focus on measures of access and completion,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However, there is a high demand in many countries to track progress in other areas, such as early learning and development, problem–solv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In response, the task force selected a diverse set of indicators, some which can already be monitored while others will

require additional commitment and investment to develop. Many countries are producing measures which could inform the basis for global indicators. While some measures may require additional resources and capacity building at the country level, others would require more significant investments such as building consensus on policy frameworks, concept definitions and measures needed for monitoring.

– 중 략 –

Recommendation 4: Supporting Countries

Countries are supported in strengthening their assessment systems and, ultimately, in improving learning levels. The task force recommends that:

- Actors at country,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play a role in moving forward and supporting country–owned and country–driven change.
- New forms of partnership are needed –including multi–stakeholder collaboration at the global level –to effectively support countries.
- Technical,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translate task force recommendations into action.

– 중 략 –

While the actions needed to improve measurement and learning depend on the contextual factors in each country, all countries are struggling with measurement in some way. There is a demand from nation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stakeholders to improve learning outcomes, in part by minimizing the gap between what is currently being assessed and the country' vision of what children and youth should learn. The task force concurs that a process is needed to support countries in diagnosing the quality of their assessmen systems, convening stakeholders, and assessing the necessary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to improve learning measurement and outcomes.

Sustaining this momentum requires the skills and support of a broad range of stakeholders in three areas: technical,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t the national level, stakeholders include teachers and civil society in addition to the education

ministry and other government officials. At the regional level, this includes regional economic and education bodi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stakeholders from the private sector, foundations, UN agencies, civil society, teachers'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institutions with a global mandate must work together to carry these recommendations forward.

해설 및 개선방안

위의 사례는 연구자가 타인이 쓴 외국어로 된 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연구자는 타인이 외국어로 쓴 저작물을 그대로 번역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번역한 후 말바꿔쓰기와 요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활용한 것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고유한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 아무리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해도 반드시 원전의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경우는 직접 인용 방식처럼, 인용부호(" ")를 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번역한 후 이를 다시 말바꿔쓰기나 요약을 한 경우는 간접 인용의 방식처럼, 인용부호 없이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연구자가 외국어로 된 부분을 번역한 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약간 변형하여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연구자가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유한 것이므로 출처표기를 해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외국어로 된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원전의 출처를 밝혀주는 동시에 그 분량을 최소화하거나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재인용 표기를 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기한 경우

위반 유형__표절 의심사례

판단 근거__본 보고서의 <그림 x-xx>은 □□□(2018)의 그림을 재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 △△△△연구원(2016)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여 표절의심사례로 판단함.

관련 규정__제9조 제1항 제3호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예시

의심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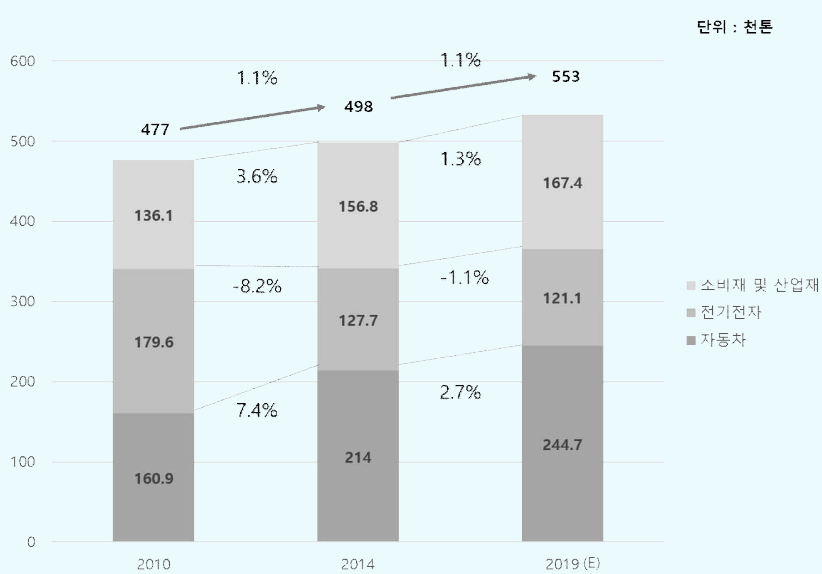

자료 : △△△△연구원(2016), "……

의심부분 대상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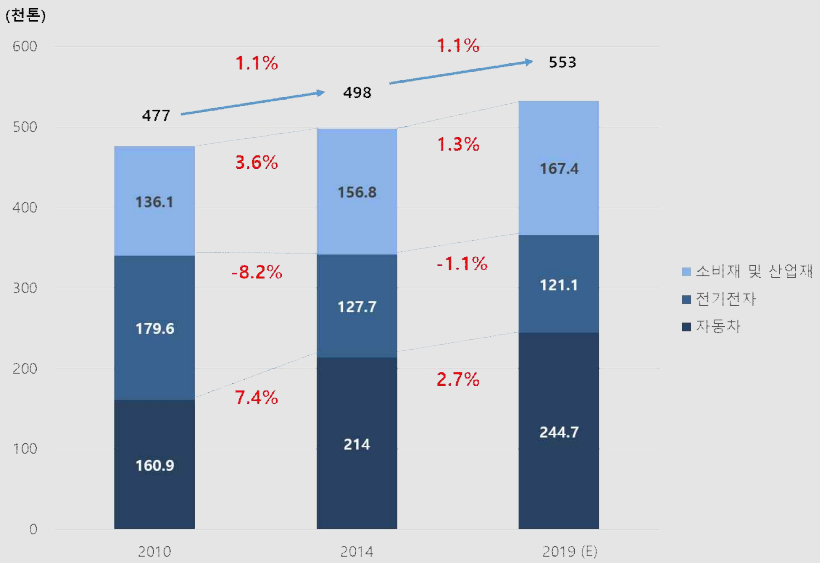

자료 : △△△△연구원(2016), "……"

해설 및 개선방안

위의 사례는 보고서에서 대상원문에 실린 그림을 재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기한 경우로 의심되며, 참고문헌에도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일한 원문의 상당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말바꿔쓰기나 요약이 되어있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로 의심되며, 해당 논문이 참고문헌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2차 문헌 표절이란 재인용 표기를 하지 않고 연구자가 마치 원문을 직접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해서만 출처표기를 한 경우이다. 이는 타인이 원문을 보고 번역, 요약, 재해석 등을 한 업적을 인정하기 않고 자신이 한 것처럼 정직하지 않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부정행위에 속할 수 있다. 연구자가 타인의 2차 저작물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고, 타인이 정리한 내용을 인용하게 되었다면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하며, 원문에 대한 출처와 2차 문헌에 출처를 모두 표기하는 것이 표절을 피하는 법이다. 또한 1차와 2차 문헌을 모두 참고문헌에 정리하여야 한다.

(4)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위반 유형__표절 의심사례

판단 근거__평가대상 보고서 p.XX-XX의 내용은 2개의 의심부분 대상원문(○○○(20xx), △△△(20xx))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활용하고 있음. 인용한 부분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전혀 없으며, 인용한 보고서에서 분석한 판례도 동일함. 타인의 견해를 연속하여 인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질적인 주종 관계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어도 너무 많은 양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양적 주종 관계에 해당됨.

관련 규정__제9조 제1항 제4호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예시

의심원문

Ⅳ. 양극화 : 부의 집중

양극화 논쟁은 우리만 주목하는 화두는 아니다. 미국도 양극화(pola-rization)은 현재의 사회와 정치의 성격을 설명하는 주제로서 주목받는다고 하며, 이는 현 미국 행정부에서도 외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나 부자 증세 등과 관련하여 정당에 따라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는 논쟁 대상이다.[69]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중대하다는 자체는 토마 피케티가 지적하였듯이, 2차세계대전전후 갈수록 부의 집중이 심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갈수록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70]이, 방치될 뿐 아니라 조장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는 '월가를 접수하라'는 시위(Occupy Wall Street)[71]가 맹위를 떨친 것으로부터 그 전조가 있었다.
2차세계대전전후 1947~1975년의 약 30여년을 미국에서 '대번영의 시기'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최상위 1% 또는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1940년대 말 미국경제조사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은 미국 사회에 '완벽한 평등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다'고 표현하였다.[72]
미국은 1976년 소득 상위 1%가 벌어들인 수입이 미국전체 수입의 9%였지만 2007년에는

23.5%로 증가[73]하였으며, 이는 1980년대 최고경영자와 하층근로자의 임금격차가 40배에서 오늘날 300~400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방임과 지나친 시장만능주의적 정책에 반기를 들고 2011년 9월 이후 뉴욕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로 이어졌으며, 여기서는 '우리는 99%이다(We are the 99%)'라는 슬로건 하에 '1%'의 사회적 강자인 글로벌기업과 고소득경영자들 및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한 정부정책이 비판된 바 있다.[74]

우리의 경우도 양극화 현상은 다르지 않으며 빠르게 불평등 정도가 강화되는 나라에 포함된다. 이를 설명하는 두가지 방법을 찾아본다.

첫 번째는 지니계수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시도이다. 아래 표의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상태를 0~1 사이의 숫자로 표현하여,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75]

[표 2] 연도별 지니계수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니계수	0.292	0.301	0.306	0.312	0.321	0.323	0.32	0.314	0.313	0.311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로 추산한 정지선의 글[76]

– 〈표 2-1〉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2010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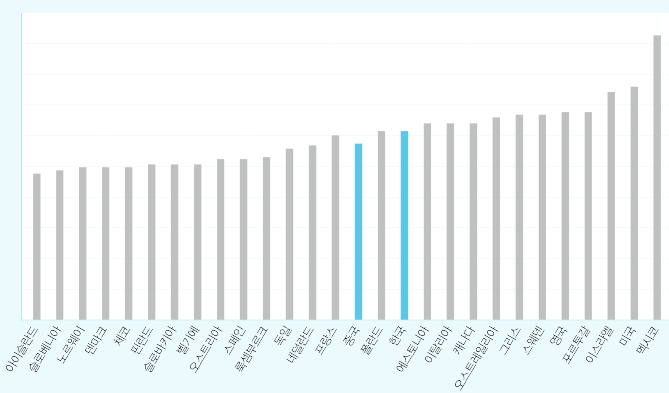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에서 가져온 정지선의 글 그림 2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를 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일 정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을 비교한다면 OECD평균은 31.3%가 감소함에 반하여 한국은 8.7%에 미치고 있는 즉 총 22.6% p의 차이를 보이게 되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가능이 잘 작동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표 2-2〉 OECD 주요국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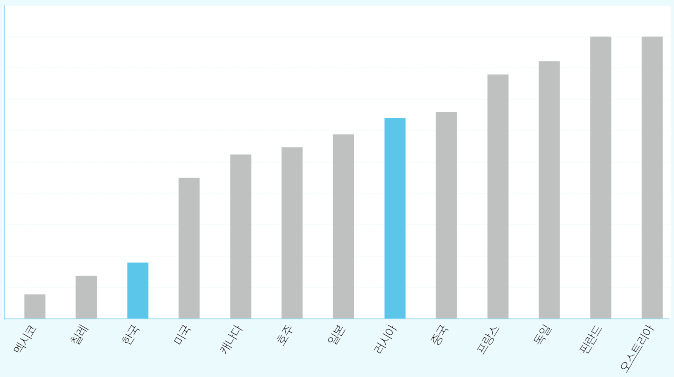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es, 정지선 외 윗 글 그림 3

두 번째는 시장구조 조사물을 통한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0년에 200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일반집중도(overall concentration)[77]를 보건대, 상위 200대 기업 출하액의 전체 광업 및 제조업 비중이 절반을 넘고 증가추세가 지속되며 특히 상위 50대 기업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상위 100대 이상 기업들의 일반집중률은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다만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일반집중율이 큰 폭으로 상승,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위주 대기업들의 급속한 팽창 등으로 계속 상승추세에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산업집중도[79] 분석도 같다. 3개 사업자 점유율 기준[80] 산업집중율을 보면 상위3사 집중률이 20% 이하인 경쟁형 산업의 비율이 2002년 26.1%, 2006년 19.2%, 2008년 17.5%로서 경쟁형 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반면 상위3사 집중률이 60% 이상인 집중형 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특히 출하액 5조원 이상 대규모 산업들이 특히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검출되고 있다.[81] 이는 경제력 집중이 소수 대규모기업들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상 인용한 분석은 다른 것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분석된 바 있다.[82]
불평등이 심화되면 일반적으로 양극화도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전적으로는 양극화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는 정규분포가, 좌우 끝부분에 두 개의 최고값을 작는 모양의 양봉분포(bimodel distribution)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사회적 관점으로는 ① 개인들 간 불평들이 심화되고, ② 상위와 하위 계층 구분이 뚜렷해지며, ③ 사회의 이동성(social mobility)이 둔화되어 상화 양 계층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83]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정치권, 학계, 언론매체 등에서의 논의가 폭증하면서, 법령과 판례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 2007년 설치되고 2008년 폐지된 대통령령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은 제1조가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가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여건의 개선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0년 개정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84]

헌법재판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장 총량제와 같은 "억제장치마저 없어진다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수도권에서는 물류비와 토지비, 주거비 등이 폭등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소외의식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반대의견에서는 "IMF 외환위기 수습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실업자의 증가, 빈곤층의 확대, 중산층의 축소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시대를 맞게 되었다. …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가 절실한 시기이자 사회적 안정과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인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85]

다만 법령과 판례가 양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확인되지만, 명료한 개념 정의가 따라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들 용례를 보건데 양극화가 사회적 차별, 경제적 빈부격차 등과 같은 평등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경향 그리고 상생협력과 사회적 통합 등을 위하여 극복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86]

양극화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적 평등을 형태화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경제력의 차이는 계층간 교육수준의 편차를 확연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별 국민들 또는 계층간 발언권이나 영향력의 차이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87]

이에 대하여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을 추진할 바 있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88]가 1941년 1월 6일 국정연설(union adress)[89]에서 밝힌 "Four Freedoms" 연설문을 이용하면, "탄탄하고 건전한 민주주의의 기초는 조금도 신비로울 것이 없다. 우리 국민이 그들의 정치나 경제 제도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것은 다음과 같이 단순했다. 청년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회 균등,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 소수를 위한 특권의 정치, 모든 사람의 시민적 자유 보전, 보다 넓고 부단히 상승하는 생활 수준에서 과학적 진보의 성과 향유 등이다."[90] 그리고 4가지 자유로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열거하였다.[91] 뿐만 아니라 루즈벨트는,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정치적 평등이 무의미하게 되고 있다. 소수의 경제 집단이 다른 이들의 재산과 노동력, 삶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거머쥐었다'는 말도 한 바 있다.[92] 이는 경제적 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시대로부터 가장 평등한 세계로 향하였던 것으로, 토마 피케티가 지목하였던 시대에 미국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연설이

란 점에서 인용하였다.

Ⅴ. 내수부충과 경제활성화

아래의 서술은, 모두가 해외부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과도하게 만듦으로써 해외경제의 변화가 우리나라에게는 충격으로 와닿게 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으로부터 우리 경제는 내실을 다지는 것 달리 말하자면 지나치게 열려서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취약해진 형태가 된 경제구조를 조금 더 보호막을 준비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의심부분 대상원문 1>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보다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연도별 단순비교 외에 세계 주요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소득불평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4> 연도별 지니계수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니계수	0.292	0.301	0.306	0.312	0.321	0.323	0.32	0.314	0.313	0.311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불평등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전 대비 세루 지니계수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OECD평균은 31.3%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8.7%에 그치고 있다. 이는 총 22.6%p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소득불평등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중에서도 특히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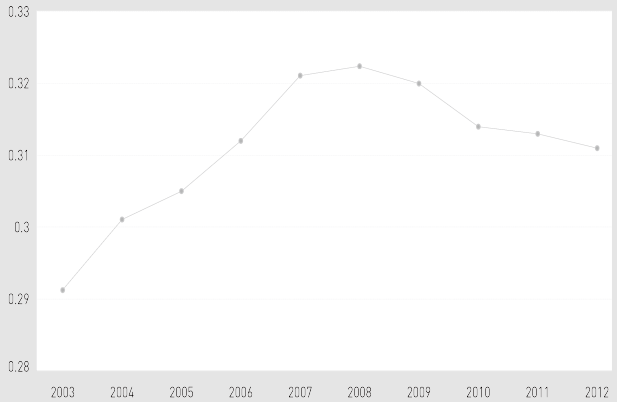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세율구조는 6~38%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을 올해부터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어 조정했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약 4,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10] 소득세는 종합과세체계를 중심으로 분류 및 분리과세 하는데,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에 앞서 각종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계층간 불균형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명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비과세 · 소득공제 금액을 적용받더라도 세수 절감 효과는 한계세율이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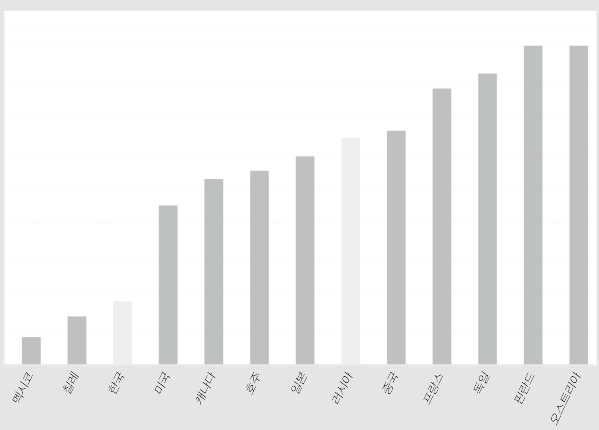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정지선 외 윗 글 그림 3

<의심부분 대상원문 2>

2. 양극화 원인

우리에게 양극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다. 예컨대 산업구조가 2차 산업 위주에서 3차 산업 위주로 변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자가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보다 서비스업 종사자가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사람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령화에 의한 노인 가구의 증가, 이혼율 상승에 따른 여성 가구의 증가를 인구학적·사회학적 원인도 저소득 계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10]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가 발전하면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경향성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경향이 극단적인 충격을 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11] 조세, 복지, 교육, 노동, 금융 등과 관련한 법 제도와 정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극심한 양극화로 몸살을 앓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분배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유감스럽지만 우리나라는 전자의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2]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야기하는 원인은 다양하며, 이러한 원인 중 상당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양극화를 방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정책과 법은 헌법상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지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양극화는 법학, 특히 형법학과 조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3. 양극화 개념의 법적 수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정치권, 학계, 언론매체 등에서의 논의가 폭증하면서, 급기야는 법령과 판례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간헐적인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7년에 만들어져 2008년에 폐지된 대통령령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은 제1조에서는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 양상과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여건 개선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였다.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0년 개정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장총량제와 같은 "억제장치마저 없어진다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수도권에서는 물류비와 토지비, 주거비 등이 폭등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소외의식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3] 또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반대의견서에서는 "IMF 외환위기 수습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실업자의 증가, 빈곤층의 확대, 중산층의 축소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시대를 맞게 되었다. …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가 절실한 시기이자 사회적 안정과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인 것이다."[14]라고 판시한 바 있다.

13) 헌재 2001. 11. 29. 2000헌바78, 판례집 13-2, 646, 655.
14)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90.

해설 및 개선방안

위의 사례는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의 관계에 있어 표절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적 주종관계와 질적 주종관계의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양적 주종관계는 인용물에서 차지하는 피인용물 전체 합의 비율로 산정하되 구체적으로 저술의 종류, 형태, 분야에 따라 주종관계 형성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질적 주종관계란 피인용물 전체가 내용적으로 주가 되고 인용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 자료 등에 불과한 경우로서 해당 학문 분야에 새로운 기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출처를 밝히되 타인의 저작물을 단순 요약 정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새롭고 의미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독창성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유형이 표절 의심사례의 한 유형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만약 타인의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되 질과 양의 측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 성과에 비하여 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5)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위반 유형_표절 의심사례

판단 근거_□□□(20xx)의 일부를 말바꿔쓰기 하여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단락에만 출처표기를 하고, 앞에 기술되어 있는 단락에서는 출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어디서부터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알 수 없음.

관련 규정_제9조 제1항 제5호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예시

의심원문

<의심부분 1>

지표의 작성 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제도적·지역적 맥락에 적합하여야 하며, 둘째, 정부, 학계, 시민사회,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의미 있고 유용하여야 하며, 셋째, 비용이 적정해야 하고,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해야 하며, 넷째, 지표의 작성목적이 명료해야 함과 동시에 그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표의 선정과 활용, 보고서 검토의 모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밀접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표는 정교화된 비전과 목적에 연계되며,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 작성된 지표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계획수립담당자(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표는 정책의 결정과 그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OOO, 20XX; □□□, 20XX)

<의심부분 2>

지표의 작성방법은 지표 선정의 주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표의 선정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즉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 혼합식 접근(Hybrid approach)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XX).

하향식 접근은 전문가가 설정한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서 국가나 국제단위 지표선정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 위주로 선정된 지표는 지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체감도가 낮고,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상향식 접근의 경우 시민, 지역사회 지도자,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하향식 접근 방법과 달리 주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지역사회에서 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지표의 논리적 일관성 결여나 지속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큰 이슈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하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 지표를 선정하되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혼합식 접근이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의심부분 대상원문 1>

작성방법: 요건
1. 정치적, 제도적, 지역적 맥락에 적합하여야
2. 이해당사자들에게 의미 있고 유용하여야
3. 비용이 감당 가능하고,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자료를 활용
4. 지표 작성 목적이 명료하게 기술되고, 그 의도를 정확히 반영
5. 지표선정, 활용,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밀접한 협력
6. 지표는 정교화된 비전(vision)과 목적(goals)에 연계되고 일관성 유지

<의심부분 대상원문 2>

Top-down approach
전문가가 설정한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지표 작성 동질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지표 체계 국가 혹은 국제단위 지표선정에 유용
Bottom-down approach
시민, 지역사회 지도자,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지표 선정 지표의 논리적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결여 지속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큰 이슈들을 간과할 가능성
Hybrid approach
Top-down 방식을 통해 설정된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

해설 및 개선방안

위의 사례는 본문의 단락 끝에 출처표기가 되어 있으나 앞의 단락에는 출처표기가 되지 않았거나, 앞의 단락에는 출처표기가 되어 있으나, 뒤의 단락에는 출처표기가 되지 않은 사례로, 본문의 내용을 저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즉,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에 들어 있는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가져다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면서 인용한 부분마다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일부에만 표기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은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된다.

(6) 타인의 저작물을 상당 부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위반 유형__표절 의심사례

판단 근거__평가대상 보고서에서는 캐나다의 원전 규제 현황을 기술하면서 이 부분은 △△△(2012)의 저작물을 참조하였다고 각주에 출처표기를 하였으나, 대조해 보면 말바꿔쓰기나 요약 등 간접 인용을 하지 않고 △△△(2012)의 해당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음. 즉, 직접 인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해당 부분을 연구자가 자신의 글쓰기 스타일로 바꿔쓰거나 요약한 것처럼 여겨지게 했다는 점에서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함.

관련 규정__제9조 제1항 제6호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예시

의심원문

4. 캐나다

가. 원전 운영현황

캐나다는 가압중수로형 원자로 22기를 보유하고 있고 설비용량은 13.5GW에 달한다. 2014년 현재 19기의 원자로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5%를 차지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총 소비 전력의 50%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며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 19기 중 16기가 온타리오 주에 속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OPG(Ontario Power Generation)사로 Pickering 1호기와 4~8호기, Dalington 1~4호기인 총 10기를 운전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Bruce Power 사는 OPG사로부터 Bruce 1~8호기를 장기 임차하여 총 8기를 운전하고 있다.

– 중 략 –

나. 안전 규제 기관 현황

초기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관리위원회(Atomic Energy Control Board: AECB)로부터 명칭을 바꾸어 2000년 수상 직속으로 설치된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가 안전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는 보건, 안전, 보안과 환경을 보호하고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존중하기 위하여 원자력 에너지와 핵물질의 이용을 규제하는 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자원성 산하의 원자력공사가 원자력 사업을 담당하며, 의료 방사선 방호 및 환경 감시는 보건성 및 환경성이 담당한다.

– 중 략 –

캐나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캐나다 국민과 환경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규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와 물질들에 대한 사용을 규제한다. 세부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보건,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원자력의 사용, 생산, 개발을 규제
2. 핵물질들의 이동, 사용, 소유, 생산 규제
3. 규정된 정보와 기구의 사용, 소유, 생산 규제
4. 핵무기 확산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 원자력과 핵물질의 사용, 이동, 개발에 관한 국제적 통제 조치 수행
5. CNSC 활동, 환경, 영향, 보건 물리 및 안전, 핵물질의 사용 및 개발, 생산. 소유. 이동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 제공

– 중 략 –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국(DGSNR)은 3개 정부 부처의 감독(산업–환경–보건부)을 받으며 국방에 관계된 핵 관련 활동과 시설에 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과 관계된 정책을 수립한다. 지방분권 부서인 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과(DSNR)는 산업부 산하 지방공업연구환경국(DRIRE)의 하위 부서로서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 원자로 정지에 따른 출력점검, 일반적인 사용 규칙의 면제 지시, 사고처리, 환경 보호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단속, 압력계기의 감독, 원자로 출력을 위한 일의 조정, 지방 당국과의 관계 유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특히, 위급상황시 DSNR은 도지사 지원, 민간인 보호책임과 원자력 시설 감시의 두 가지 큰 역할을 한다. 지방 보건위생·사회활동부(DRASS, DDASS)는 지방행정 부의 지역에서 활동하며, 환경은 물론 병원에서의 방사선방호의 규제를 담당한다. 관장 업무는 수돗물의 방사선감시, 공공장소와 주택 거주지로부터 라돈 감시, 병원폐기물의 관리 규제, 방사선 위험사고 관리 및 대비 활동에 참여 등이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2.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CNSC)

가. 개요

캐나다의 원자력 규제 기관인 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는 보건, 안전, 보안과 환경을 보호하고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존중하기 위하여 원자력 에너지와 핵물질의 이용을 규제하는 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관련 근거법은 원자력안전통제법(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이다.

종전의 AECB(Atomic Energy Control Board)로부터 명칭을 바꾸어 2000년 수상 직속으로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CNSC)가 안전 규제를 담당하고 자원성 산하의 원자력공사가 원자력 사업을 담당하며 의료 방사선 방호 및 환경 감시는 보건성 및 환경성이 담당한다.

캐나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캐나다 국민과 환경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규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와 물질들에 대한 사용을 규제한다.

– 중 략 –

① 건강,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캐나다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과 발전 생산에 대한 규제
② 원자력 물질들의 생산, 소유, 사용, 수송에 대한 규제와 규정된 기구와 정보에 대한 생산, 소유, 사용에 대한 규제
③ 핵무기와 핵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치들의 비확산을 장려하는 조치들을 포함하여 원자력 에너지와 물질의 발달과 생산, 이동 그리고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를 존중하는 조치들의 이행
④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과학적, 기술적, 규제적인 정보에 대한 유포, 인간의 안전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한 유포, 원자력 에너지 물질의 발달과 생산과 소유와 수송에 대한 유포

– 중 략 –

나. 원자력 발전소 현황

캐나다의 원자력은 18기의 원전(보유개수 22기)이 캐나다 내 전체 소비 전력의 약 14.8%를 공급하고 온타리오 주 한 곳에 50%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 중 략 –

캐나다에서 원자력 사업자의 수는 발전부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총 4개사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자는 OPG(Ontario Power Generation)사로 브루스 A1~4호기, B1~4호기, 피커링 A1~4호기, B1~4호기, 달링턴 1~4호기 등 총 2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뉴르번즈윅파워사, 퀘벡 하이드로사가 각각 1기씩 보유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브루스파워사는 OPG사로부터 브루스 A와 B 시리즈 총 8기를 장기 임차하여 현재 6기를 가동 중에 있다.

<표 4-4> 원자력 사업자별 보유 원자로 수[3)]

구분	OPG	뉴르번즈윅파워사	퀘백하이드로사	브루스파워사
보유갯수	20기	1기	1기	0기 (OPG로부터 브루스 A/B시리즈 8기 장기 임차)
운용갯수	10기	1기	1기	6기
운용중인 원자로	피커링A1,4호기 피커링B1~4호기 달링턴 1~4호기	포인트 르프로 1호기		브루스 A3, 4호기, B1~4호기
비고	피커링A2 기 연료제거 피커링A3호기 연로제거 중	-	-	브루스 A1,2호기 보수 중

현재 운용되는 원자로는 2011년 기준 총 18기이며 이중 16기가 온타리오 주에 배치되어 있다.

- 중 략 -

(나) ASN의 구성 조직 -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국(DGSNR)
DGSNR(General Directorate for Nuclear Safety and Radiological Proteciton)은 법령 2002-255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전 원자력시설안전국(DSIN: Directorate for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과 보건국의 방사선과, 방사선방호연구소(OPRI: Office for Proteciton against Ionising Radiation)의 일부분과 인공방사성물질 부처간회의(CIREA)의 활동을 흡수하여 설립되었다.
DGSNR은 국방에 관련된 핵관련 활동과 시설에 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며 산업부, 환경부 및 보건부 3개 정부 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다. 또한, DGNSR은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정보최고위원회(CSSIN), 원자력기본시설관련부처연락위원회(CIINB) 및 공공위생 최고 위원회의 방사선방호과의 의장직을 맡는다. DGSNR에서 관장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중 략 –

DSNR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 감독 및 원자로 정지에 따른 출력 점검, 일반적인 사용규칙의 면제 지시, 사고처리, 환경보호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단속, 압력계기의 감독, 원자로 출력을 위한 일의 조정, 지방당국과의 관계 유지 업무 등을 담당한다. 특히 위급 상황 시에 DSNR은 도지사를 지원하며, 민간인 보호책임과 원자력시설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라) ASN 구성조직 – 지방 보건위생·사회활동부(DRASS, DDASS)
지방 보건위생·사회활동부(DRASS, DDASS)는 지방행정부의 지역에서 활동하며, 환경은 물론 병원에서의 방사선방호의 규제를 담당한다. 관장 업무는 수돗물의 방사선감시, 공공장소와 주택 거주지로부터 라돈 감시, 병원폐기물의 관리 규제, 방사선 위험사고 관리 및 대비 활동에 참여 등이다.

해설 및 개선방안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란 원저자가 쓴 내용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연구자 자신이 요약 또는 말바꿔쓰기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원저자가 쓴 독특한 어휘나 문장을 자신이 쓴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보고서를 쓸 때, '참조했다' 또는 '재구성했다'는 표현은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말바꿔쓰기나 요약하여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분량이 많든 적든 간에 타인의 것을 직접 인용한 것이라면 참조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인용부호(" ")나 줄을 바꿔서, 또는 본문보다 좌우 여백을 더 주거나 글자 크기나 글자체를 달리하기 등)를 함으로써 이 부분이 연구자의 것이 아니라 원저자의 것임을 밝혀야 한다.

직접 인용은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원저자의 표현을 바꾸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므로 직접 인용된 표현은 그것이 모두 원저자의 것이라면, 간접 인용은 인용한 부분을 원저자의 핵심논리나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인용하는 연구자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므로 간접 인용된 표현은 연구자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한 문장이나 문단에서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을 동시에 해야 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을 하는 중에 직접 인용된 부분에 대해 인용부호(" ")를 표시하면 된다.

4) 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사례

(1) 부당한 저자 미표기

위반 유형__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사례

판단 근거__계약직 전문연구원이 연구 과정에서 자료 수집과 연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였고 보고서의 완성에 기여한 바가 있어서 저자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것은 부당함.

관련 규정__제10조 제1호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예시

의심원문

<○○○·△△△·□□□, “○○○○○○○에 관한 연구”, □□연구원, 20xx>

본 보고서는 □□연구원에서 20xx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연구 성과물로서, A 연구위원(연구책임자), B 연구위원과 C 연구위원(참여 연구진)이 저자로 명기되어 있다. 연구진은 역할분담의 집중도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 연구진 외에 계약직 전문연구원 K를 추가로 참여시켰다. K 전문 연구원은 자료 수집 및 정리 업무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 시 선행연구 결과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실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다. 연구 책임자 A는 K 전문연구원의 원고를 검토하여 재구성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에 상당부분 활용하였다. □□연구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정규 연구진을 저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구 보조 활동에 참여한 계약직 연구원은 연구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저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설 및 개선방안

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부당한 저자 표기 중 하나이다. 연구과제 참여자는 다양할 수 있다. 과제 발굴이나 기획 단계에서 부터 자료 조사 및 분석, 통계 처리, 외부 전문가 구성과 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 외부 수탁용역이라면 수주 활동이나 발주자와의 원활한 협의 진행 등의 과정에서 최우수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참여자들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연구 책임자와 연구기관은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책임과 권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구보고서의 저자 자격은 보고서 집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본 가상적인 예시에서 D 전문연구원은 근로계약 조건과는 무관하게 보고서 작성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저자에 포함되어야 정당하다. 비록 D 전문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책임성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연구책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그 내용이 수정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저자 중 한 사람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연구기관 내 직급이나 고용조건이나 보고서 작성 수준과 상관없이 저자로서의 기본 자격 여부로서만 판단해야 한다. 만일 연구기관이 저자 표기에 대한 합리적인 내규(지침)를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기존의 통상적인 지침이 연구윤리 평가규정과 불일치한다면 저자 표기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확립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모든 연구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보완해야 하고 보고서 최종 심의과정에서도 재확인해야 한다.

(2) 부당한 저자 표기

위반 유형__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사례

판단 근거__연구과제를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외부 위탁과제에 대한 행정적 연구관리 차원의 업무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저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

관련 규정__제10조제2호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예시

의심원문

<○○○·△△△·□□□, “○○○○○○○연구”, □□연구원, 20xx>

본 보고서는 □□연구원이 동 주제의 연구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한 결과이다. 원내 C 연구위원은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리를 위해 연구진에 구성되었고, 실질적인 연구에는 OO대학교 A 교수(연구 책임자)와 △△대학교 B 교수가 참여하였다. A 교수와 B 교수는 원활한 연구 협의를 위해 C 연구위원을 추진회의에 초청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보고서는 A 교수와 B 교수가 작성하였으며 최종 보고회 전후 C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연구진은 C 연구위원이 연구 성과 제고와 보고서 완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합의하여 저자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해설 및 개선방안

저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저자로 표기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 가상적인 예시에서 C 연구위원이 연구 수행과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한 바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고서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저자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만일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바를 특별히 고려하고자 할 경우라면 서문이나 별도의 각주에 명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문단이나 면담 대상자나 검토 인력이 연구 추진과정과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저자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연구 책임자를 포함한 외부의 용역과제 수행자들은 저자 표기 방식에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 보고서는 □□연구원의 성과물로서 최종 출판되므로 엄격하게 원내 저자 표기 지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연구원은 외부 연구진의 저자 자격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외부의 용역과제 수행 연구진의 의사결정 사항이므로 □□연구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저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저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과제 및 보고서 관리자로서 □□연구원이 연구윤리 준수 여부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수행과 연구보고서 완성도에 대한 기여도 기준이 아니라 보고서의 실질적인 작성 기준으로 저자 자격을 판단하여 저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재확인해야 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

1) 중복게재 의심사례

(1)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위반 유형__중복게재 의심사례

판단 근거__남한과 북한의 교육 전반을 비교하고 있는 본 보고서의 p.xxx-.xxx.의 내용은 의심부분 대상원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평가대상 보고서 본문 상에는 이에 해당하는 출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 의심부문 대상원문은 해당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한 보고서임. 따라서 본 사례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로 의심됨.

관련 규정__제11조 제1항 제1호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예시

의심원문

남한과 북한의 직업기술교육과 자격체제를 비교하기에 앞서 교육 이념 및 목표, 교육제도,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 행정 및 정책 등 교육 전반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직업기술교육도 전체 교육의 일부로 서, 교육 이념과 목표 아래 전체 교육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첫째, 남한과 북한의 교육 이념 및 목표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은 민주주의 교육 이념을 지향하고, 북한은 공산주의 교육 이념을 지향한다. 남한은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공민으로서의 자질,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기여할 것을 교육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교육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개인적인 덕목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다. 반면에, 북한의 교육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헌신한다는 집단적인 측면이 있다. 또 남한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성의 존중, 개인의 자율과 책임,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 당과 혁명에 헌신하는 집단적 공동체의식을 강조한다(◆◆◆, 199x).

－ 중 략 －

셋째, 남한과 북한의 교육제도를 비교해 보면, 학교의 단계별 교육연한에서 남한은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 고등교육 4년인 데 비해 북한은 초등교육 4년, 중등교육 6년, 고등교육 4-6년으로 초등학교 단계가 남한보다 2년 짧게 편제되어 있다. 의무교육 연한에서도 남한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인 데 비해 북한은 유아교육 높은반 1년부터 고등중학교까지 11년으로 남한보다 2년이 더 길다.

유아교육 단계에서 남한은 개인의 성장발달 및 창의성을 중시하고 자율선택적 교육으로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에는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반면에, 북한은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국가적 지원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남한은 전기와 후기를 각각 3년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전기와 후기 구분 없이 6년 동안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남한은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북한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목적으로 특성화된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체계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발달해 있다. 남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 내 기술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북한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남한은 지속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 기관이 발달해 있다.

넷째,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 및 내용을 보면, 남한은 주지주의적 학습능력의 함양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북한은 실제 현장에서의 응용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진리 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 창조적 활과 합리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과활동에서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지적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적인 탐구심과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교과활동이나 과외활동을 막론하고 교육과 노동의 결합, 학습활동과 실생활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199x).

다섯째, 남한과 북한은 교육행정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남한과 북한 모두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 교육자치를 지향하여 대부분의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또 남한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교육행정의 전문성보다는 당의 정치 방향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 지방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데 반해 북한은 통합되어 있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남한과 북한의 직업기술교육과 자격 체제를 비교하기에 앞서 우선 교육 이념 및 목표, 교육 제도,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 행정 및 정책 등 교육 전반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직업기술교육도 전체 교육의 일부로서 교육 이념과 목표 아래 전체 교육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남한과 북한의 교육 이념 및 목표를 비교해 보면, 유사성보다는 상당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남한은 민주주의 교육 이념을 지향하고 있고, 북한은 공산주의 교육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남한은 교육 기본법에서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공민으로서의 자질,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기여할 것을 교육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교육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개인적인 덕목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교육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의 헌신이라는 집단적인 측면과 대비된다. 또한, 남한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성의 존중, 개인의 자율과 책임,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 당과 혁명에 헌신하는 집단적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199y).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교육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학교 단계별 교육 연한에 있어서 남한은 초등교육 6년, 중등 교육 6년, 고등 교육 4년인데 비하여, 북한은 초등 교육 4년, 중등 교육 6년, 고등 교육 4(6)년으로 초등학교 단계가 남한보다 2년 짧게 편제되어 있다. 의무 교육 연한에 있어서도 남한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인데 비하여 북한은 유아 교육 높은 반 1년부터 고등중학교까지 11년으로 남한보다 2년이 더 길다.

유아 교육 단계에서 남한은 개인의 성장 발달을 중시하고 자율 선택적 교육으로 의무 교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의무 교육에 포함시켜 국가 사회적 지원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중등 교육 단계에서 남한은 전기와 후기를 각각 3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은 전기와 후기 구분 없이 6년 동안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다.

고등 교육 단계에서 남한은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 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목적으로 특성화된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 체계로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발달해 있다. 남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내 기술 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북한에 비해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남한은 계속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교육 기관이 발달해 있다.

한편으로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 및 내용을 보면, 남한은 주지주의적 학습 능력의 함양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실제 생활에서의 응용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진리 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 창조적 활동과 합

리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과 활동에서 기본적인 학습 능력과 지적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적인 탐구심과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교과 활동이나 과외 활동을 막론하고 교육과 노동의 결합, 학습 활동과 실생활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199y).

남한과 북한은 교육 행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과 북한 모두 중앙 집권적인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 교육 자치를 지향하여 많은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교육 행정을 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교육 행정의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교육 행정의 전문성보다는 당의 정치 방향을 우선시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 지방의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은 통합되어 있다.

해설 및 개선방안

평가대상 보고서의 연구책임저자가 이전에 작성한 대상원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중복게재 의심사례에 해당된다. 즉, 이처럼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에 새로운 저작물에 활용함에 있어 활용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는 경우,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과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모두 중복게재 의심사례에 해당된다.

(2)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위반 유형__중복게재 의심사례

판단 근거__평가대상 보고서의 의심부분이 자신의 이전 제작물인 △△△(2015)와 일치하나 일부에는 출처가 표기되어 있음.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가 누락된 것으로 중복게재 의심사례로 판단됨.

관련 규정__제11조 제1항 제2호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예시

의심원문

<의심부분 1> p.xx

○ (방송국 유형) 미국 지상파 방송국은 지상파 네트워크와 제휴하여 운영되는 스테이션(Affiliated), 지상파 네트워크 사업자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스테이션(Owned and Operated), 콘텐츠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스테이션(independent)으로 구분됨.

○ (지상파 방송국 사업자 수익구조) 지상파 방송국의 수익은 크게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광고수익과 재송신동의 비용(retrans revenue)으로 산출되는 재송신 수익이 있음(△△△(2015))

<의심부분 2> p.xx

2. 프랑스
가. 지상파방송
○ (개관) 프랑스는 지상파 및 공영방송 위주의 방송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지상파 방송사업자) 프랑스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공영방송인 France Téeléevisions과 ARTE, TF1, Canal+, 민영방송인 M6이 있음

○ (지상파 사업자 구조 및 현황) France Téeléevisions는 프랑스 정부 소유의 공영방송으로 France2, France3, France5, France4(디지털채널), FranceÔ(위성채널) 등의 채널을 보유

- (수익원) France Téeléevisions는 광고료와 수신료를 주 수입원으로 함
- 2014년 기준, 총 매출액 28억 700만 유로 중 수신료의 비율이 89%로 수신료 기반의 수익원을 형성하고 있음

○ (매출액) 2014년 기준, France Téeléevisions의 매출액은 프랑스 방송시장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4년 기준, France Téeléevisions의 매출액은 28억 7백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민영 방송인 TF1은 20억 92백만 유로, 이외 Canal+ Group(지상파+유로 매출액)은 54억 56백만 유료 수준

<표 2-10> 프랑스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 매출액

(단위 : 백만유로)

방송사	2013년	2014년
France Téeléevisions	2,839	2,807
TF1	2,075	2.092
Canal+Group(지상파, 유로)	5,311	5,456

<의심부분 3> p.xx

다. OTT

○ (주요 OTT 사업자) 프랑스의 OTT 서비스는 방송사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강세가 두드러짐

- 프랑스 공영방송인 France TV는 다시보기 서비스와 TVOD를 제공
- 프랑스 민영방송인 TF1과 M6 등의 채널사업자는 타사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다시보기 서비스와 TVOD를 제공하고 있음
- Canal Plus는 프랑스 최대의 유료채널 사업자로 N스크린 서비스와 SVOD,TVOD 등의 OTT 서비스를 실시
- 이외 Netflix, FilmoTV, Wuaki.tv 등 가입형 OTT 사업자들의 서비스가 있음

○ (OTT 서비스 시장 규모) 2015년 기준, OTT 서비스 시장의 매출액은 약 4억2,0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의심부분 4> p.xx

다. OTT

○ (주요 OTT 사업자) 독일의 OTT 서비스는 지상파 채널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 공영방송인 ARD와 ZDF는 Mediathek라는 다시보기 서비스에 주력
- RTL은 TV NOW라는 명칭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유료방송사업자인 Deutsche Telekom, Unitymedia, Kabel Deutschland 등은 자사의 유료방송과 N스크린 서비스를 연동한 OTT 서비스를 운영
- Sky Deutschland, Deutsche Telekom은 N스크린과 더불어 SVOD 또는 TVOD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OTT 전문업체인 Netflix, Maxdome, Amazon, 등도 SVOD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의심부분 대상원문

<의심부분 대상원문 1> p.xx

(지상파 방송국 구조) 미국 지상파 방송국은 형태에 따라 지상파 네트워크와 제휴한(Affiliated) 스테이션, 지상파 네트워크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Owned and Operated) 스테이션, 그리고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independent) 스테이션으로 구분됨

<의심부분 대상원문 2> p.xx

2. 지상파 주요 사업자 현황

가. France Téeléevisions

1) 기업개요 및 지배구조

○ 1992년 개국한 프랑스 공영방송으로, 프랑스 정부가 소요

2) 채널구성

○ 주요 채널로는 France 2, France 3, France 5와 디지털 채널인 France 4, 위성채널인 FranceÔ를 보유하고 있음

– 중 략 –

3) 재무현황

○ France Téeléevisions은 광고 및 수신료(정부보조금)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2014년 총 매출액은 28억 700만 유로였는데, 이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89%, 광고 매출 비율이 11%였음

<의심부분 대상원문 3> p.xx

2. 주요 OTT 사업자

○ (OTT 사업자 현황) 지상파 방송사업자, 유료 방송사업자의 활발한 OTT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비스 형태는 주로 실시간 다시보기, VOD, N-Screen 서비스이며, 무료 실시간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가 다수 존재함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주로 N-Screen 서비스 위주로 OTT 서비스 제공 PlayTV의 경우 실시간 방송을 무료 OTT 서비스로 제공

<표 5-25> 프랑스 방송사의 OTT 서비스 운영/참여 현황

서비스 타입	다시보기	VOD	실시간 방송	유료방송 멀티스크린
참여 사업자	Canal Player Orange Pluzz MyTF1 6play	myCanal Btv CanalPlay Pluzz VaD MyTFIVOD Orange TV OCS Go LaBox TV	myCanal Btv6 6play(M6) LaBox TV Orange TV	myCanal Btv Free LaBox TV Orange TV SFR TV app

자료: Ovum(2014.9.)바탕으로 재구성

<의심부분 대상원문 4> p.xx

- (지상파 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인 ARD-ZDF가 2007~2008년부터 다시보기 서비스인 Mediathek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민영방송인 RTL 그룹은 채널별로 Now라는 이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RTL Now, RTL2 Now, Vox Now 등), 민영방송 ProSiebenSat.1은 MyVideo, Maxdome, 7TV 등 복수의 OTT 서비스를 운영
- 2013년 RTL 다시보기 서비스 7억뷰, ProSiebenSat.1은 MyVideo 서비스 7백만의 월간 이용자를 확보했으며 특히 ProSiebenSat.I의 유료 VOD서비스인 Maxdome은 독일

의 SVOD, TVOD 시장 매출의 36%를 얻음
- (유료방송 사업자) Amazon Prime Instant Video가 2014년 2월 독일에 진출했으며 프랑스 미디어 기업 Vivendi는 유료 VOD 포털인 Watchever를 2013년 2월부터 서비스함
- Amazon Prime Instant Video가 SVOD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Netfilx와 Wuaki.tv 등의 유료 VOD 시장 가세가 예상되어 경쟁이 심화될 것을 보임

해설 및 개선방안

평가대상 보고서에서 기술된 내용이 연구자의 이전 저작물의 기술사항과 일치하나, 출처표기가 어느 일부분에만 되어 있어,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부정확하게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해당 의심부분의 전후에 의심부분 대상원문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부분적으로 출처표기를 하면 안되고, 인용한 모든 단락마다 출처표기를 해야한다.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방식을 이용할 경우 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통해 작성을 해야한다.

(3)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위반 유형__중복게재 의심사례

판단 근거__본 보고서의 O장 △절 X항의 일부에서 저자의 이전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옴. 해당 부분 제목에 각주로 인용표기를 하였으나 말바꿔쓰기나 요약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그 분량이 상당함. 따라서 인용된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복게재 의심사례로 볼 수 있음.

관련 규정__제11조 제1항 제3호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예시

의심원문

<의심부분 1> p.xx

수도사업 용수공급계획은 주로 하천과 호소 등 지표수 위주의 공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량과 수질변동의 편차가 크다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대체수자원의 개발 등의 다양한 측면의 대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의 대체수자원 개발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극심한 기후 변동과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용수 확보 및 수질사고 예방 차원에서 수원의 다변화, 물 재이용, 물 공급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대체수자원 확보 및 운영이 요구된다. 안정적 수원 확보를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대체수자원(빗물,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을 통한 수원 다변화 및 비상용수 확보, 안전한 용수공급을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재정보조를 통한 촉진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대체수자원 개발사업과 보안용수 확보사업, 물 재이용 사업 등에 대한 보조와 유인으로 확장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심부분 2> p.xx

선진국의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은 건설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게 되어 전체 건설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도달함에 따라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내 상하수도시설의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수도 부문의 정수시설, 취수장 시설과 하수도 부문의 하수처리시설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 시설용량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당한 유지관리 비용의 지출이 예측되고 있어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타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및 보강 등 개·대체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안이나 전략적인 유지관리 분석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상하수도 시설의 자산관리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수도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예산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과학적 시설관리기법의 도입, 합리적인 지출을 위한 자산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1) 상하수도 사업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의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어 야 한다. 먼저 자산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을 체계화하여 수도사업의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자산관리시스템 운영을 제도화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상하수도 사업의 자산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비용효과적인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존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상하수도 통계, 사업자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자산관리와 관련된 자료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도사업과 관련된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공기업의 회계시스템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자산 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 및 투자계획에 대해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수도사업 자산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상하수도 사업의 자산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이 체계화되고 자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자산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법·제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자산관리체계 적용을 위해 상하수도 사업 계획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2) 자산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

자산관리 체계는 물질적인 자산을 전 생애에 걸쳐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학, 재무, 경제 등의 다양한 수단을 결합하여 기반 시설을 취득, 사용 및 폐기하는 의사결정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 위생에 직결되어 있는 국가 집중관리시설 중 하나로서 일반시설물의 관리 수준과는 다른 사용단계의 관리방안이 요구되는 시설물이다.

수도시설은 수질관리의 목표와 수준이 명확하고 유량확보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체적인 통합통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산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자산관리의 핵심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자산관리의 핵심 구성요소는 자산의 상태, 서비스 수준, 자산중요도 평가, 최적 운영전략, 자금조달전략 등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자산의 상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무엇이며 자산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
- 서비스 수준: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조정
- 자산 중요도 평가: 자산관리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중요한 자산과 중요도 평가
- 최적 운영전략: 자산의 중요성을 고려한 최적의 운영전략이 무엇인지 파악
- 자금조달전략: 자산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예산전략을 수립

다. 물환경 인프라의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

상하수도 사업의 전략적인 재정계획은 기존 상하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평가하며,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주요 손실로 인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기반이 된다.

전략적인 재정계획은 상하수도 부문의 목표 달성과 건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상하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평가하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재정적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 대체 시나리오 및 이와 연계된 정책 설정으로서 상하수도 사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 재정계획으로 도출된다.

상하수도 사업의 변화된 환경 여건과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따른 비용부담체계 정비, 상하수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체계 구축 등 상하수도 사업의 지속가능 재정체계를 위한 정책방안은 상하수도 사업의 전략적 재정계획의 흐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국내 상하수도 사업은 환경변화와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사업 구조와 범위가 변화하면서 서비스 공급 목표가 반영된 수용가능한 기준선(Baseline)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환경변화와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따른 사업 구조와 범위의 변화는 그에 따른 비용분담, 부과체계

의 설정 및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부담(요금 등)과 공공비용 부담 등 재정적 공급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공공 비용분담 범위 설정은 재정적 공급뿐 아니라 재정적 수요와 공급의 예측에 따르는 재정적 격차의 국가적 지불가능성 격차에도 연계되어 있으며, 형평성과 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등 공공의 비용부담은 가계지불가능성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상하수도 사업 자산관리체계 구축은 투자 및 비용체계를 최적화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수요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재투자 재원조달 지원을 위한 펀드체계 구축, 금융상품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등의 정책은 재정적인 공급을 위한 중요한 재원조달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정적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의심부분 3> p.xx

1) 지속가능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산관리체계 구축 및 재투자 지원
선진국의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은 건설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여 전체 건설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도달함에 따라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상하수도 시설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수도 부문의 정수시설과 취수장 시설, 하수도 부문의 하수처리시설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 시설용량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고, 시설 재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설자산의 관리와 투자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 서비스 공급의 합리적 비용분담을 위한 재투자 Fund 구축 및 융자지원
재투자 지원기금(Revolving Fund)은 상하수도 부문의 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를 충족하여 적기에 상하수도 인프라를 공급하고, 재투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과 서비스 공급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원활히 하는 목적의 재정지원 제도로 볼 수 있다.

가) 재투자 Fund 구축
재투자 지원기금에 대한 지원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서 재투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채권 수입으로부터 재투자 기금을 설립한 후에 상하수도와 관련된 재투자 지원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면, 상하수도 재투자와 관련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계약자(사업수행자) 및 시설 설비 관련 공급업체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사업수행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좋은 우대조건으로 받은 지원금을 활용하고, 상환기간을 통하여 추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방법 1, 2를 통하여 산정한 노후시설 개량사업 재투자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상수도 부문의 경우 지원방법 1을 적용하였을 경우 현재부터 2030년까지 5조 5,262억원이 소요되며, 지원방법 2를 적용하였을 경우 2조 9,97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부문의 경우 지원방법 1을 적용하였을 경우 9조 4,905억원, 지원방법 2를 적용하였을 경우 5조 5,62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투자 지원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 년에 걸친 국가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 중략 –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1%로 상수도 사업 신규 개발을 위한 투자수요는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초기에 투자되어 노후화된 시설의 재투자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상수도 시설 자산은 재투자 계획과 재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정력이 열악한 중소도시 상수도 사업자의 사업개발에 대한 지원은 향후 재투자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심부분 4> p.xx

2) 침수방재 서비스에 대한 공공비용부담 지원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하수도 사업이 제공하는 우수의 배제에 의한 '도시위생'서비스는 도시침수에 의한 재난방지 서비스로 범위가 점차 확장되었다. 침수방재 서비스는 지역 공공재로서 하수의 배제 및 처리 서비스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우수관리비용을 공공부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도시위생' 개념의 공공서비스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하수도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우수관거 정비, 빗물펌프장 정비, 하수저류시설설치 등 우수배제시스템 설치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여 하수도가 제공하는 침수방재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침수방재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수도 서비스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공공서비스인 침수방재 서비스에 대한 비용분담체계와 정부의 보조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의심부분 5> p.xx

가) 취약 소비자 집단의 사용자 부담 비용 지원
상수도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수도분기관 연결 지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개량 지원과 같이 취약 소비자 집단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함으로써(50%) 사용자의

부담능력으로 인해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지불가능한' 보편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옥내급수관의 경우 수돗물의 실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사용자 부담 비용 지원은 상수도서비스의 품질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부담이 이루어지는 사업요소의 경우 상하수도 시스템의 상태와 공급 여건, 지역적인 환경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취약한 소비자집단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부문의 변화에 따라 지원항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
상하수도 사업자가 취약 지역이나 취약 소비자집단을 대상으로 행하는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수도 부문의 경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하수도 부문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 등이 있다.
상하수도 사업자의 대상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대부분 높은 비율(70%)의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은 50%).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설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 여건 등으로 인해 단위서비스 공급 비용이 높게 나타나므로, 사업자의 해당 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 공급을 촉진하고 취약지역/소비자의 서비스 소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조건과 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실제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항목 및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다) 소규모 수도시설·개인하수도 공공관리 지원
소규모 수도시설과 개인하수도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체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분담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소규모 수도시설과 개인하수도는 대부분 취약지역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에 대한 서비스 공급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개인하수도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관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자가 소규모 수도시설·개인하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분산된 시설의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나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업체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등 소규모 수도시설·개인하수도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불 가능한 접근성(Affordable Access) 보장의 측면에서 공공보조의 타당성이 검토될 수 있다.

– 중 략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하수도 사업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출연하거나(사업자 출연금) 상하수도 요금에 부담금을 포함하여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사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높은 공급비용)의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이 필요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서 벨기에의 사회적 물기금(Social Water Fund)의 형태로 기금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이익공유 혹은 기금제도의 종류와 상하수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낙후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부문에 기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상하수도 사업의 취약지역 형평성 제고사업과 연계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상하수도 사업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 이익공유 혹은 기금제도의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수준의 사업을 지원하고, 중복 투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 략 –

1)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및 시행 현황
먼저 상수원 보호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 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4대강 적용주민에 대해서는 각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물이용부담금은 각 수계 공공수역 내의 전용수도 설치자와 한천수의 사용자로 자원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가 자원의 사용과 서비스에 대한 전체 비용을 지불하고 미래 세대의 자원 손실비용이 포함된 비용을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4대강 이외의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은 「수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행위허가 기준에 합당한 범위 안에

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재원은 수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판매수익금의 100분의 5 범위 내)과 국고보조(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로 설정되어 있다.

2) 상수원 보호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 기준 통일

4대강 수계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토대로 지원하고 있지만, 4대강 수계 이외의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국고보조가 약 70:3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4대강 수계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 반해 4대강 수계 이외의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국고보조가 이루어진다.[43] 환경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양질의 물 공급의 의무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의무사항이므로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44]하다고 가정한다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 30%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4대강 수계와 4대강 수계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 중 략 –

마. 구조개편 및 공급체계 합리화를 위한 재정지원 개선

상하수도 사업의 통합운영 추진은 지역적 사업 여건의 차이에 따른 지자체들의 재정손실 우려, 지자체들 간의 협력의 어려움, 경쟁력 있는 통합운영 사업자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합운영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수도 사업통합추진에 대해서는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예산의 지원과 환경부 보조사업 예산의 우선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하수도 사업 통합추진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의 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의 상수도 사업 통합추진의 유인은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결정적인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등을 통한 재정적인 유인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추진 유인을 왜곡할 뿐 아니라 통합운영 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자체를 왜곡할 가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재정지원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정부 재정지원을 유인으로 통합운영에 참여한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통합을 통한 편익을 가지도록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는 하나, 이러한 지속적 지원은 지원 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재원조달에도 문제가 있다.

통합운영 추진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국고보조는 가능한 한 배제하고, 관망최적화에 대한 국고보조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망개선이 요구되나 재정능력이 열악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합운영의 추진은 통합 후 재정조정 방안의 마련, 지자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 그리고 통합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육성 등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의심부분 대상원문 1>

수도사업용수공급계획은 주로 하천과 호소 등 지표수 위주의 공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량 및 수질변동의 편차가 큰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수자원 계획 수립 시 대체 수자원의 개발 등 다양한 측면의 대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빗물,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의 대체수자원 개발에 대한 수자원 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극한 기후 변동과 재난 등에 따른 비상용수 확보 및 수질사고 예방 차원의 수원의 다변화, 물재이용, 물공급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대체수자원 확보 및 운영이 요구된다. 안정적 수원 확보를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대체수자원(빗물, 물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을 통한수원 다변화 및 비상용수 확보, 안전한 용수공급을 위한강변여과수 개발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의 추진에 대해 재정 보조를 통한 촉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현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대체수자원 개발사업과 보안용수 확보 사업, 물 재이용사업 등에 대한 보조와 유인으로 확장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2>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 체계 구축 선진국의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은 건설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이 급증하게 되어 전체 건설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수준까지도 달함에 따라 국가재정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내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에도 앞서 1차년도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수도 부문의 정수시설, 취수장 시설과 하수도 부문의 하수처리시설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 시설용량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상하수도인프라 시설에 대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지출이 예측되고 있어 자산관리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타 기반시설 물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 및 보강 등 개·대체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이나 유지 관리 전략적인 분석 및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상하수도 시설 자산관리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수도시설에 있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을 위해서 유지 관리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과학적 시설관리 기법의 도입과 합리적인지출을 위한 자산관리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상하수도의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자신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의 체계화를 통해 수도사업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자산관리시스템 운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의 자산관리를 위한 자료구축 체계화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적인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DB를 구축하고, 상하수도 통계 사업자 성과평가에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자산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도사업과 관련된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시스템 구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공기업 회계시스템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자산관리 계획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및 투자계획 구축을 구체화한다. 또한 수도사업자산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수도사업자산관리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하수도 사업의 자산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이 체계화와 자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자산관리 시행 관련 법·제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자산관리체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사업 계획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자산관리체계는 물질적 자산의 전 생애에 걸쳐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학, 재무, 경제 및 기타 수단을 결합하여 기반시설을 취득, 사용 및 폐기하는 의사결정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하수도시설은 국민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어 있는 국가 집중관리시설 중의 하나로서 일반시설물의 관리 수준과는 다른 상위 단계의 관리방안이 요구되는 시설물이다.
수도시설은 수질관리의 목표와 수준이 명확하고 유량확보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또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통합통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산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의 핵심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자산관리의 핵심 구성요소는 자산의 상태, 서비스 수준, 자산 중요도 평가, 최적 운영 전략, 자금조달 전략 등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자산의 상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무엇이며 자산의 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다.
- 서비스 수준: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조정한다.
- 자산중요도 평가: 자산관리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중요한 자산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중요한지 평가한다.
- 최적 운영전략: 자산의 중요성을 고려한 취적의 운영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자금조달전략: 자산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예산전략을 수립한다.

상하수도사업 전략적 재정계획 상하수도사업의 전략적 재정계획은 기존의 상하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평가하며, 비효율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주요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기반이 된다.

전략적 재정계획은 상하수도 부문의 목표 달성과 건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상하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평가하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재정적 수요-공급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 대체 시나리오 및 이와 연계된 정책 설정으로 상하수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재정계획으로 도출된다.

상하수도 사업의 변화된 환경 여건과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체계 정비, 상하수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체계 구축 등 상하수도 사업의 지속가능 재정체계를 위한 정책방안은 상하수도 사업의 전략적 재정계획의 흐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은 환경변화와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 구조와 범위가 변화하게 되면서 서비스 공급 목표를 반영한 수용가능한 기준선(Baseline)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환경변화와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따른 사업구조와 범위의 변화는 그에 따른 비용분담 및 부과체계의 설정 및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 부담(요금 등)과 공공비용부담 든 재정적 공급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기후변화 적응/대응을 위한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공공 비용 분담 범위 설정은 재정적 공급뿐 아니라 재정적 수요/공급 예측에 따르는 재정적 격차의 국가적 지불가능성 격차에도 연계되어 있으며, 형평성 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등 공공의 비용 부담은 가계지불가능성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된다.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체계 구축은 투자 및 비용체계를 최적화 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수요를 합리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재투자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Fund체계 구축, 금융상품 활성화 및 민간 투자 촉진 등의 정책은 재정적 공급을 위한 중요한 재원조달 대안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3>

선진국의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은 건설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이 급증하게 되어 전체 건설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수준까지도 달함에 따라 국가재정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내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에도 앞서 1차년도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수도 부문의 정수시설, 취수장 시설과 하수도 부문의 하수처리시설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 시설용량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상하수도인프라 시설에 대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지출이 예측되고 있어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 재투자 지원기금(Revolving Fund)설계 및 운영체계 구축
재투자 지원기금(Revolving Fund)은 상하수도 부문의 재투자 수요를 충족시켜 적시적기에 상하수도 인프라시설을 공급하고 재투자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과 적시 지원 미비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킬 목적의 재정 지원제도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채권 수입으로부터 재투자 기금을 수립한 후에 상하수도와 관련된 재투자 지원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면, 상하수도 재투자와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계약자(사업수행자) 및 시설설비 관련 공급업체에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수행자 는 지원 사업을 통해 좋은 우대조건으로 받은 지원금을 활용하고, 상환기간을 통하여 추후 상환하며, 이를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 같은 지원방법 1, 2를 통하여 산정한 노후시설 개량사업 재투자 지원사업의 필요 재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상수도 부문의 경우 지원방법 1을 적용하였을 경우 현재부터 2030년까지 5조 5,262억 원이 소요되며, 지원방법 2를 적용하였을 경우 2조 9,97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투자 지원기금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수년에 걸친 국가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는 쉽지 않은 정책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미국의 SRF의 경우에도 8~10년간의 기간에 걸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Fund가 조성되었다. 반면, 초기 투자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체계적으로 관리 되지 못한 상수도시설 자산은 재투자 계획과 재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정력이 열악한 중소도시 상수도 사업자의 사업개발에 대한 지원은 향후 재투자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4>

2) 침수방재 서비스에 대한 공공비용부담 지원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하수도 사업이 제공하는 우수의 배제에 의한 '도시위생' 서비스는

도시침수에 의한 재난방지 서비스로 범위가 점차 확장되었다. 침수방재서비스는 지역 공공재로서 하수의 배제 및 처리 서비스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우수관리비용을 공공부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도시 위생' 개념의 공공서비스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하수도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친수 방지를 위해 우수관거 정비, 빗물펌프장 정비,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우수배제시스템 설치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여 하수도가 제공하는 침수방재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침수방재서비스를 포함하는 하수고서비스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공공서비스인 침수방재서비스에 대한 비용분담체계와 정부의 보조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의심부분 대상원문 5>

2) 취약 소비자 집단의 사용자 부담 비용 지원
상수도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수도분기관 연결지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지원과 같이 취약소비자 집단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함으로써(50%)사용자의 부담능력으로 인해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지불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옥내급수관과 같이 최근 많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수돗물 실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사용자 부담비용 지원은 상수도서비스품질과 관련된 저소득층 '복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부담이 이루어지는 사업요소는 상하수도시스템의 상태와 공급여건, 지역적 환경 등에 따라 변화 할 수 있으므로, 취약 소비자 집단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부문의 변화에 따라 지원항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
상하수도 사업자가 취약 지역이나 취약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행하는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수도 부문의 경우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하수도 부문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 등이다. 상하수도 사업자의 대상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대부분 높은 비율(70%)의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은 50%).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설사업은 사업여건 등으로 인해 단 위서비스 공급 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업자의 해당 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 공급을 촉진하고 취약지역/소비자의 서비스 소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조건과 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실제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항목 및 지원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4) 소규모 수도시설 개인하수도 공공관리 지원

소규모 수도시설·개인하수도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 체계와 분리되어 비용분담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소규모 수도시설/개인하수도는 취약지역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취약지역 소비자 집단에 대한 서비스 공급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성 보장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개인하수도를 효과적·전문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공관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자가 소규모 수도시설·개인하수도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의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분산된 시설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업체 관리위탁 등 소규모 수도시설·개인하수도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재정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불가능한 접근성(Affordable Access) 보장의 측면에서 공공보조의 타당성이 검토될 수 있다.

– 중 략 –

1)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및 시행현황

먼저 상수원 보호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4대강 적용주민에 대해서는 각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한강수계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물이용 부담금은 각 수계 공공수역내의 전용수도 설치자와 한천수의사용자로 자원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가 자원의 사용과 서비스에 대한 전체비용을 지불하고 미래 세대의 자원손실비용이 포함된 비용을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 원칙' 을 적용하고 있다.

4대강 이외의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은 수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행위허가 기준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재원은 수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국고보조(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로 설정되어 있다.

4대강 수계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토대로 지원하고 있지만, 4대강 수계 이외의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국고보조가 약 70:3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4대강 수계 지역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데 반해 4대강 수계 이외의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국고보조가 이루어진다. 환경부의 재정사업자율 평가 결과 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양질의 물 공금의 의무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의무사한이므로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정한다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 30%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4대강 수계와 4대강 수계 이외의 지역에 대해 형평성 있게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양질의 물 공급에 대한 의무는 4대강 수계 지역과 4대강 수계 이외 지역을 구분하여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법 제2조의 책무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안으로 상수원 보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4대강 수계와 4대강 수계 이외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통합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합리화
가) 통합운영 추진을 위한 재정적 유인
상하수도 사업 통합운영의 추진은 지역적 사업 여건의 차이에 따른 지자체들의 재정손실 우려, 지자체들 간의 협력의 어려움, 경쟁력 있는 통합운영사업자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합운영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수도사업 통합추진에 대해서는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예산의 지원과 환경부 보조사업 예산의 우선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하수도 사업 통합추진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의 상수도사업 통합추진의 유인은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통합운영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보조금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보조금 등 재정적 유인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추진 유인을 왜곡할 뿐 아니라, 통합운영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자체를 왜곡할 가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정부 재정지원을 유인으로 통합 운영에 참여한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통합을 통한 편익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이러한 지속적 지원은 지원 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다.
통합운영 추진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고보조는 가능한 배제하고, 관망최적화에 대한 국고보조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망개선이 요구되나, 재정능력이 열악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설 및 개선방안

본문 내용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서 인용하면서 출처표기를 명확히 했다 하더라도 양과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면 중복게재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유사한 보고서가 이전에 이미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전 저작물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선행연구 결과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최신 보고서의 부가적인 연구 내용과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전 연구결과와 연결시키는 보고서의 형식논리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예산과 시간을 투입한 연구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타 부주의

1) 기타 부주의 1

위반 유형__기타 부주의 1

판단 근거__본 보고서에서 표기하고 있는 '□□□□□□진흥원, 2014'라는 문헌과 '김XX, 2019'이라는 문헌이 참고문헌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위반 사항__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각주(내용주, 미주 포함) 등과 참고문헌 서지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시

의심원문

<본문1>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진흥원, 2014).

<본문2>

~분석과 처리가 요구되는 보건의료 R&D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김XX, 2019).

<참고문헌>

김○○, 2019, ○,○○○○연구, XX연구원
김××, 2018, ××××××××에 대한 고찰
이△△, 2014, 보건의료 현황 연구, □□□□□□진흥원

해설 및 개선방안

위 사례는 해당 본문의 인용표기와 참고문헌에 표시된 서지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이다.
본문에서 □□□□□□ 진흥원(2014), 김XX(2019)이라고 출처를 표기하고 있으나 참고문헌에는 해당문헌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에는 김××(2019)의 서지사항이 누락되었고, 본문1에"(□□□□□□□ 진흥원, 2014)"으로 인용한 부분이 이△△(2014)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에 인용표기가 되어 있는데 참고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참고문헌에 표기되어 있는데 본문에 활용되지 않은 경우 기타 부주의 1에 해당한다.

2) 기타 부주의 2

위반 유형__기타 부주의 2

판단 근거__평가대상 보고서 의심부분에는 (이□□·홍XX, 2019)로 출처표기가 되어 있으나, 참고문헌에는 이□□·홍XX, 2019의 문헌만 기록되어 있어 제 3저자의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됨.

위반 사항__저자, 제목, 년도, 페이지, 발행권수, 인터넷 주소(URL) 및 접속일자 등 서지사항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정확하지 않게 인용한 경우

예시

의심원문

<본문>

보수월액은 평균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약 65%에 해당(이□□·홍XX, 2019)

<참고문헌>

이□□·홍XX·김▽▽, 2019, OOOOOOOOO 연구

해설 및 개선방안

위 사례는 이□□·홍XX·김▽▽(2019)의 연구를 인용하였으나, 해당보고서 본문 인용표기에서 (이□□·홍XX, 2019) 으로만 표기하여, 제3저자의 정보를 누락한 사례이다. 연구자는 인용표기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인용자료의 저자, 제목, 년도, 페이지, 발행권수, 인터넷 주소 및 접속일자 등의 서지사항을 기록할 때 정확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타 부주의 2에 해당한다.

3) 기타 부주의 3

위반 유형__기타 부주의 3

판단 근거__본 보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료의 수치가 실제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위반 사항__출처로 표기한 부분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통계수치 등)

예시

의심원문

한편 중국 부동산개발기업인 화샤 싱푸(CFLD: 华夏幸福)가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 중 2~3차 단계에 220억 달러를 투자하고 57㎢의 부지를 관리·개발하는 협정을 이집트정부와 체결하였다.[64]

의심부분 대상원문

이집트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도 카이로 동부의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계획 2~3차 단계에 중국 부동산개발 기업(CFLD)이 200억 달러(약 22조2천억원)를 투자하는 기본 협정에 사인했다고 밝혔다.

해설 및 개선방안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료의 수치(220억 달러)와 피인용물 자료의 수치(200억 달러)에 차이가 있다. 해당 수치가 보고서에서 결과를 달리 도출해 낼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니며, 숫자의 유사성으로 보아 연구자의 실수로 판단되나, 이와 같은 부주의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본문에서 표기하고 있는 수치 또는 내용과 인용한 자료의 수치 또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주의 3에 해당된다.

4) 기타 부주의 4

위반 유형__기타 부주의 4

판단 근거__본 보고서에서 OOOO 조직도를 나타낸 <그림 4-8>은 자료 제공처의 영문 버전에 나타난 표를 단순히 한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지만, 저자 재구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음.

위반 사항__표, 그림, 사진 등을 그대로 인용했음에도 재가공한 것처럼 표기한 경우

예시

의심원문

<그림 4-8> OOOO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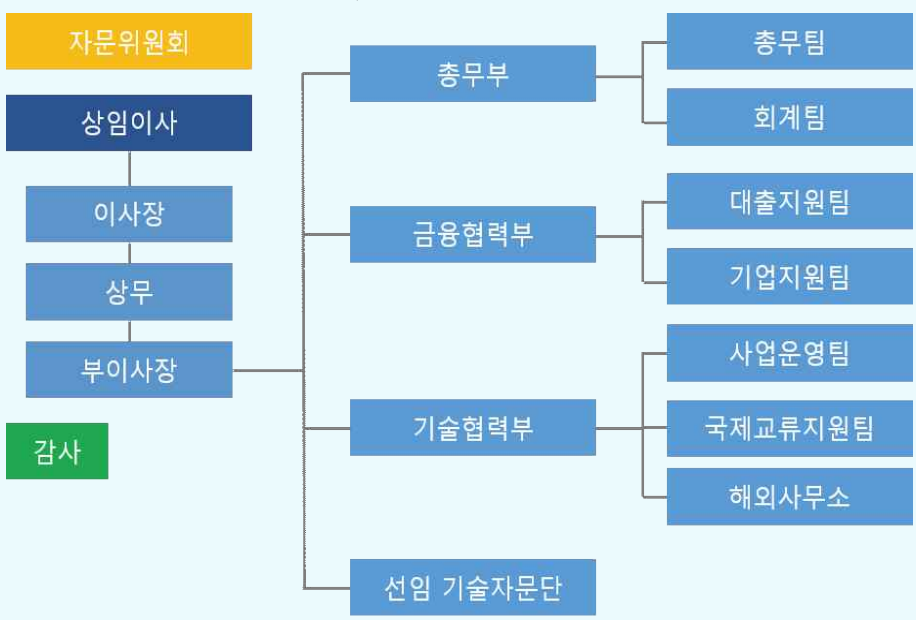

자료: OOOO홈페이지(http://www.OOOO.OOO/)를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검색일: 2017.09.15.)

의심부분 대상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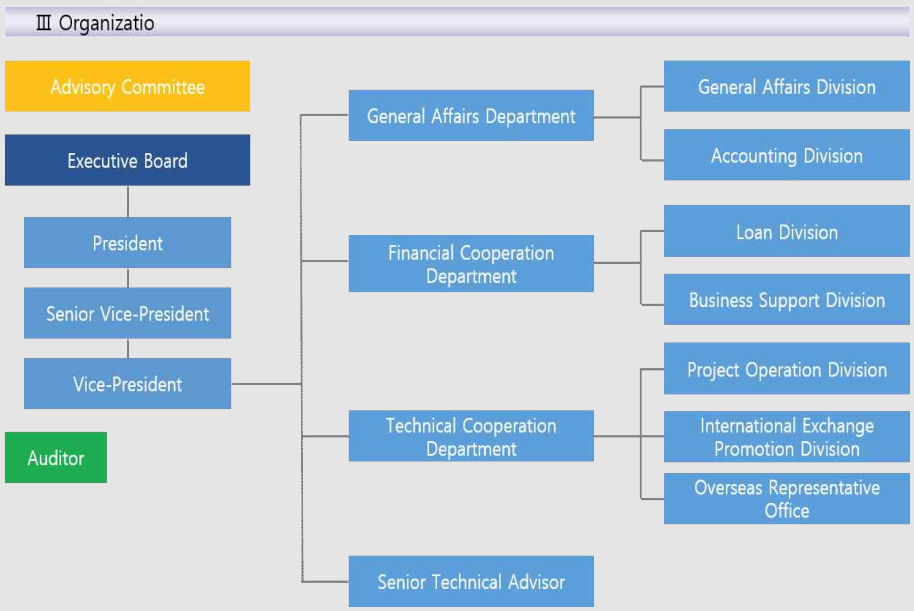

해설 및 개선방안

위 사례는 0000조직도를 단순 영어 번역한 것으로 '재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재구성이란 '한 번 구상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상함'을 이르는 말로써 우리말로 바꾸어 쓴 부분 또한 그대로 쓴 부분 또한 그대로 번역하여 쓴 것에 불과하여 재구성으로 볼 수 없다. 즉, 인용표기에 있어 '재구성'이라는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으며 '발췌하여 번역'이라고 표현하거나 출처만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인용물의 표나 그림을 저자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원문의 것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재구성', '참고', '참조'의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Ⅳ. 질의응답(Q&A)

1. 표절 관련 사항
2. 중복게재 관련 사항
3. 출처표기와 인용 관련 사항
4. 기타 사항

1. 표절 관련 사항

Q1__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항상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모르고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쓴 경우도 표절인가?

Q2__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재구성하기 어려운 중심 프레임을 출처표기를 하고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

Q3__정책 연구를 위한 해외자료의 번역 요약은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양적 주종관계나 2차 문헌 표절로 지적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Q4__2차 문헌을 인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 2차 문헌과 함께 원문의 출처도 표기해야 하는가?

Q5__1차 문헌은 참고하지 않고, 2차 문헌만을 참고했을 경우 출처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Q6__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사진은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일상적인 도로주변 풍경사진에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처표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즉, 이는 "일반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Q7__특정 국가의 면적, 인구, 민족구성, 종교, 언어, 주요 자원 등은 일반적인 상식이므로 출처표기가 없어도 표절의 예외 사항이어야 하지 않는가?

Q8__해외 사례(제도)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이 아닌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출처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표절 의심사례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해외 사례(제도) 소개를 할 때 출처를 포괄적·개괄적으로 표기해도 되지 않는가?

Q9__언론, 정부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건, 정책의 변천사 등을 서술한 부분은 원저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정리한 것이므로 유사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심사례에 포함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가?

Q10__원내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자료들 즉, 공식적으로 발간하지 않은 보고서를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인용해도 표절 의심사례인가? 또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반으로 처벌을 받는가?

Q11__타 저작물의 표와 그림을 사용하고 이를 설명하는 문장을 작성할 경우, 표와 그림에만 출처를 표기하고 이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Q12__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저작권이 법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법령에 대해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 법조항 등은 참고문헌에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가?

Q13__동일한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본문과 표의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 본문과 표 각각에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Q14__타인의 개념정의를 원용하면서 출처표기에 해당 유형을 참조하였다 표기한 경우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하는가?

Q15__보고서의 '부록'에 해당하는 기술의 경우에도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는가?

Q16__타인이 외국어로 쓴 문헌을 연구자가 번역하여 활용한 경우, 연구자의 학술적 해석을 거친 문장이어도 본문에 문장마다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그대로 번역한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거친 직접 인용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Q17__해당 문헌의 포괄적 인용을 하였으나, 연구보고서 1, 2, 4문단에만 출처표기를 하였는데, 이 경우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에 의하여 표절 의심사례로 지적되는가?

Q18__APA양식에서는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재인용된 원문을 제시하는 것이 참고문헌을 과도하게 부풀려 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1차 문헌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보고서가 있다. 1차 문헌을 보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도 본문 및 참고문헌 목록에 표기해야 하는가? 또한 표기해야 한다면 1차 문헌의 페이지도 찾아서 명시해야 하는가?

Q19__정부 정책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내용을 보고서 내 하나의 '절'에서 설명하는 경우, 일일이 문장/문단마다 출처표기를 할 경우 보고서 가독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에 각 절 제목에서 각주 등으로 해당 문헌에서 포괄적 인용을 하였다고만 밝히는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가?

Q20__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보고서 작성 시 직접 인용 방식에 있어 출처의 정확한 서지사항 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9조에서는 연구보고서 특성을 고려하여 인용표기 및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외적 보고서의 구체적 경우 및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Q1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항상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모르고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쓴 경우도 표절인가?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즉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일반 지식(common knowledge)을 제외하고는 항상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표절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와 관련됨. 기본 원칙은 자신의 저작물을 산출함에 있어 의존했던(인용한) 모든 저작물의 원저작자에게 존중과 감사의 표시로 정확하게 출처표기를 해야 함. 연구자는 의도하지 않은 표절 의심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연구와 타인의 연구가 혼동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 의도하지 않은 표절 의심사례의 발생은 자신의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글이나 도표 등)이나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임. 문제는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도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일 때 발생함. 그러나 실제 연구자가 표절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몰래 가져다가 쓰고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든,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인용법을 몰라서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신의 연구 내용과 타인의 연구 내용을 혼동하여 타인의 연구 내용에 대해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됨을 유념해야 함.

Q2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재구성하기 어려운 중심 프레임(main frame)을 출처표기를 하고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

▶ 어떤 연구자의 저작물 속에 있는 중요한 연구 방법이나 구조를 그대로 혹은 재구성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타인이 고안해 낸 사고 구조(생각의 프레임)나 연구 방법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처럼 전적으로 그것을 고안한 타인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출처표기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 것임.

Q3 정책 연구를 위한 해외자료의 번역 요약은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양적 주종관계나 2차 문헌 표절로 지적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활용할 때는 인용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해야 함. 해외의 자료나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종 관련 내용을 직접 번역한 후 출처표기를 하지 않을 때 표절이 되기 때문임. 해외 자료의 번역이 2차 문헌의 표절로 판단되는 경우는 연구자가 원문을 보고 직접 번역하거나, 번역된 내용을 요약 하거나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고 1차로 소개한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마치 원문을 직접 보고 활용한 것처럼 오용하기 때문에 발생함. 그러므로 해외 자료를 번역 후 인용할 때 양적 주종관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용하는 분량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하며, 2차 문헌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인용 표기를 정확하게 하거나 해당 원문을 직접 확인한 후 말바꿔쓰기 등을 통해 연구자의 글쓰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Q4 2차 문헌을 인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 2차 문헌과 함께 원문의 출처도 표기해야 하는가?

▶ 연구자는 2차 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다면, 그 원문(1차 문헌)을 찾아 2차 문헌에서 인용한 내용이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자신의 인용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함. 2차 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고, 원문(1차 문헌)을 찾아 직접 확인하여 자신도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2차 문헌과 함께 원문(1차 문헌)의 출처를 표기할 수 있음. 만일 연구자가 2차 문헌만 보고 원문을 보지 않았다면 2차 문헌에 대해 출처표기를 해야 함.

2차 문헌만 봤지만, 독자나 후속 연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문헌과 함께 원문의 출처도 표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에도 연구자는 원문을 찾아 1차 인용한 내용이나 맥락이 적절하고 해당 페이지도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차 문헌을 통해 원문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 활용하는 것처럼 2차 문헌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고 1차 문헌만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Q5 1차 문헌은 참고하지 않고, 2차 문헌만을 참고했을 경우 출처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차 문헌이란 원저자의 저작물(원문)을 1차로 인용한 저자의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차 문헌에 있는 원문의 내용을 자신의 보고서에서 인용하고자 할 때, 그 원문의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찾아 확인해 보고 특히 2차 문헌의 저자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예를 들면, 원문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원문을 직접 번역한 경우, 2차 문헌 저자가 원문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였거나 독특한 표현으로 요약 및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 등) 원문과 2차 문헌의 출처를 모두 표기해야 함. 왜냐하면 2차 문헌의 저자를 통해 원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2차 문헌의 저자가 기여한 업적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표시로 2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도 병행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임.
연구자가 1차 문헌은 참고하지 않고 2차 문헌만을 참고하였다는 상황은 연구자가 2차 문헌을 통해 알게 된 원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연구자가 원문에 사용된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하므로 이 경우에는 2차 문헌에 대한 출처만 표기해도 됨. 그러나 원문의 내용을 활용하면서도 원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를 인용한 2차 문헌에 대한 출처만을 밝히는 것은 자칫 2차 문헌의 저자를 원문의 저자로 잘못 인식하게 오도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Q6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사진은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일상적인 도로 주변 풍경사진에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처표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즉, 이는 "일반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 통상 일반 지식(일반적으로 역사적 날짜나 사실, 어떤 학문 분야에서 확립된 사실 등)에 해당되는 것을 활용할 때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음. 문제는 일반 지식이 특정 학문 공동체의 범위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는 일반 지식이 아닐 수 있다는 데 있음. 그렇지만 어떤 특정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것이 나름의 독창성이 있는 것이라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됨. 논쟁적인 사실이나 자세한 통계 수치,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일반 지식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표기해야 함. 그런데 일반 지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모호한 경우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안전함.

Q7 특정 국가의 면적, 인구, 민족구성, 종교, 언어, 주요 자원 등은 일반적인 상식이므로 출처표기가 없어도 표절의 예외 사항이어야 하지 않는가?

▶ 일반 지식에 해당하는 사실 자체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실에 대하여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 노력, 기여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출처표기를 해야 함. 특정 국가의 면적, 인구, 민족 구성, 종교, 주요 자원, 언어 등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알려진 사실적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기술할 경우에는 출처표기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님.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어느 누군가가 노력을 기울여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연구자의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표절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Q8 해외 사례(제도)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이 아닌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출처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표절 의심사례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해외 사례(제도)를 소개할 때 출처를 포괄적·개괄적으로 표기해도 되지 않는가?

▶ 해외 국가 및 기관의 제도, 법규, 정책 등은 특정한 연구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결과라고 하기 어렵고, 해당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누구나 찾아보면 쉽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모두가 일반 지식에 해당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음. 일반 지식은 특정 공동체의 범위 안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는 일반 지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함. 특히, 해외 국가 및 기관의 제도, 법규, 정책 등을 소개할 경우 객관적 사실에 불과한 정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소개한 사람의 의견이나 노력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는 일반 지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함. 즉,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일반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의하면,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인용(말바꿔쓰기나 요약 등)할 때, 일일이 출처를 표기한다면 가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표절 의심사례로 판단하지 않음.

Q9 언론, 정부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건, 정책의 변천사 등을 서술한 부분은 원저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정리한 것이므로 유사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심사례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가?

▶ 기상 상황, 사건 사고 등 사실에 대한 단순 정보인 경우처럼 누가 정리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다면 출처표기가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같은 사실 관계라도, 어떤 기자가 자신의 분석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가미하여 그것을 재구성한 경우에는 그 기자의 고유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처표기가 필요함. 또한 필자의 고유한 견해가 중심이 되는 논설, 칼럼 그리고 정부의 공식 견해가 제시된 보도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함.

Q10 원 내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자료들 즉, 공식적으로 발간하지 않은 보고서를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인용해도 표절 의심사례인가? 또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반으로 처벌을 받는가?

▶ 최종 연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출판되기 전에 연구의 성과를 높이고 정보를 교류·확산하기 위해 연구 과정 중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중요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발표되는 것은 기관 내부의 자료로서인지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아이디어나 핵심적인 연구 결과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표절의 대상은 공식적으로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출판되지 않았더라도 저작물로서의 요건(독창적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됨. 따라서 비록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하면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제재는 소속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받게 됨. 다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기표절, 즉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함.

Q11 타 저작물의 표와 그림을 사용하고 이를 설명하는 문장을 작성할 경우, 표와 그림에만 출처를 표기하고 이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와 그림을 활용할 경우, 제시된 표나 그림 위나 아래에 그 출처를 밝혀야 함. 또한 본문에서 출처표기를 한 해당 표와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도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연구보고서에 활용한 타인의 표와 그림에 대해 독자가 그 출처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나 그림을 그대로가 아닌 연구의 맥락에 맞게 변형하였다고 해도 어떤 목적으로 원본에서 어떻게 변형하였는지를 밝히면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임. 곧 원본 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고 수정 취지 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여야 함. 다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 그림, 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Q12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저작권이 법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법령에 대해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 법조항 등은 참고문헌에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가?

▶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한 법령과 판례 및 기타 법률 자료도 그 출처를 밝혀야 함. 즉, 해당 자료의 저작자를 먼저 명시하고 자료의 제목을 명시한 다음 해당 자료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발행 기관, 보관 장소 등을 명시하고 발행 연도(날짜) 등을 명시한 다음 인용되는 지점을 표기. 자료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 ] 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 설명을 간략히 쓰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 이는 다양한 자료들의 인용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타인의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표절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은 법률 문헌에 언급된 논거 및 해당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자료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법령과 판례를 인용할 때 출처표기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을 참고(법률 문헌의 인용 방법에 대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5-12)에 있는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참조).
다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및 판례·법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그러나 본문에서 판례번호·법조항으로 간략히 출처표기를 했더라도 참고문헌에서는 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담은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시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2-첨부자료]

Ⅰ. 판결 인용

1.1. 법원 판결

판결선고 법원명 | 선고 일자 연도. 월. 일. | 선고 | 사건번호 | 판결

❶ 법원과 선고 일자 사건번호와 판결이라는 단어 사이는 띄어쓰기한다.
❷ 선고 일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마침표를 붙인다. '년', '월', '일'은 따로 적지 않는다.
❸ 사건번호는 판결 법원에서 부여한 사건에 대한 번호를 쓴다. 병합, 반소, 참가 사건 구분은 하지 않고 '2011다32785, 32793'와 같이 나열한다.
❹ 인용하는 판례가 여러 개인 경우 선고 일자순으로 쓰며, 쉼표(,)로 연결하되 인용하는 판결마다 선고법원을 명시하여 준다.
❺ 원칙적으로 선고법원에 대하여는 약칭을 쓰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단, 하급심에 대하여는 한 문헌 안에서 통일성을 이룬다는 전제하에, '서울고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등과 같이 약칭을 쓸 수 있다.
❻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경우에는 사건번호 뒤에 한 칸 띄우고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단어를 써준다.

(예)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568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4637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1. 1. 18. 선고 2000가합10574 판결.

1.2.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 결정 일자 연도. 월. 일. | 선고 | 사건번호 | 결정

❶ 인용방법은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과 같다.

❷ 전원재판부 결정인 경우에는 '전원재판부 결정'임을 표시한다.

(예)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1.3. 법원 명령 및 결정

❶ 법원의 결정 및 명령은 '고지' 일자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결정서 작성 일자에 '자'를 쓴다. '자' 자는 일자 뒤에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쓴다.

(예) 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Ⅱ. 법령인용

2.0. 법령 표시의 일반적 원칙

법령은 일반적으로 조 항 호 목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령이 인용된 지점이 특정되어야 한다.

2.1. 법령

법령 이름(정식명칭 또는 약칭) | 제#조 | 제#항 | 제#호 | ( )목.

❶ 법령의 이름은 단어별로 띄어 쓴다. 법령의 이름은 판단에 따라 공식적 명칭을 쓰거나 약칭을 쓴다. 단,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복합명사의 경우에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며,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의 이름은 8 음절이 넘어도 붙여 쓴다.

❷ 법령, 법규의 형식을 나타내는 단어는 그 앞에 오는 법령, 법규의 이름과 띄어 쓴다.

❸ 법령의 가지번호는 붙여 쓴다(예: 민법 제289조의2)

❹ 법령의 조, 항, 호 등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법령의 목은 ( ) 안에 표시한다.

(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1조.
민법 제1008조의2.

Q13 동일한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본문과 표의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 본문과 표 각각에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 동일한 문헌을 참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문과 표에 모두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 그림, 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그렇더라도 표에는 반드시 출처표기를 하여야 하며, 본문의 내용이 표를 통하여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문과 표 각각에 출처표기를 해야 함.

Q14 타인의 개념정의를 원용하면서 출처표기에 해당 유형을 참조하였다 표기한 경우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하는가?

▶ 타인의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자신의 견해 등을 덧붙여 자신만의 개념정의를 기술하였다면 '참조'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당 개념정의를 원용하여 보고서에 그대로 활용하면서 '참조'로 표기하는 것은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이 아님. 타인의 개념정의를 그대로 옮겨왔다면 직접 인용부호를 활용하고, 말바꿔쓰기 등을 통하여 재구성하였다면 '인용'으로써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Q15 보고서의 '부록'에 해당하는 기술의 경우에도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는가?

▶ '부록'은 주로 보고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과 더불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서 작성 시 '부록'은 보고서와는 별개로 독자의 이해증진을 위한 참고자료 정도로 판단하여 보고서 본문에서와는 달리 출처표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부록'도 엄연한 보고서의 일부이며, 독자로 하여금 해당 출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출처표기 할 필요가 있음. 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에서도 보고서의 '부록' 또한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Q16 타인이 외국어로 쓴 문헌을 연구자가 번역하여 활용한 경우, 연구자의 학술적 해석을 거친 문장이어도 본문에 문장마다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그대로 번역한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거친 직접 인용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 타인이 외국어로 쓴 문헌을 연구자가 번역하여 활용할 때, 원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우리 말로 직접 번역하여 쓰는 경우와 원저자의 표현을 번역자의 글쓰기 스타일로 바꾸되, 그 핵심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 '연구자의 학술적 해석'을 거친 문장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원저자의 주장과 연구자의 주장을 비교해 가면서 문장을 구성할 때 원저자의 주장이나 표현에 해당되는 곳에는 출처를 밝혀야 독자의 입장에서 원저자의 것과 연구자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 외국어를 우리 말로 그대로 번역할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 인용부호를 넣고 출처표기를 해야 함.

Q17 해당 문헌의 포괄적 인용을 하였으나, 연구보고서 1, 2, 4문단에만 출처표기를 하였는데, 이 경우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에 의하여 표절 의심사례로 지적되는가?

▶ 일반적으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의 장, 절, 소제목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할 때 연구자가 설정한 장, 절, 소제목에 출처표기를 한다. 이를테면, 어떤 소제목에 출처표기를 하였다면, 이는 원출처의 내용을 요약 내지 말바꿔쓰기를 하여 이 소제목의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제목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처표기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요약 내지 말바꿔쓰기를 하였지만, 원문에서 사용한 어떤 표현이나 데이터를 직접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용부호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면 됨. 그러나 장, 절, 소제목에 포괄적 인용을 의미하는 출처표기가 없는 경우, 어느 한 페이지가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단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라면 해당되는 원문에 대한 출처를 빠짐없이 모두 밝혀야 함. 만약 4곳에 모두 출처표기가 필요한 데, 그 중 3개만 하고, 1군데를 빠뜨릴 경우, 이는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에 해당됨.

Q18 APA양식에서는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재인용된 원문을 제시하는 것이 참고문헌을 과도하게 부풀려 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1차 문헌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보고서가 있다. 1차 문헌을 보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도 본문 및 참고문헌 목록에 표기해야 하는가? 또한 표시해야 한다면 1차 문헌의 페이지도 찾아서 명시해야 하는가?

▶ 연구자가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2차 문헌을 통해 1차 문헌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1차 문헌을 찾아 자신의 인용 맥락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확인한 후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인용해야 함. 이때 1차 문헌과 2차 문헌을 모두 읽었다면 참고문헌에는 두 문헌을 모두 표기해야 함. 만일 2차 문헌을 통해 알게 된 1차 문헌을 구해 볼 수 없거나 (절판 포함) 외국어의 경우 해석을 할 수 없거나 또 1차 문헌의 내용에 2차 문헌 저자가 가미한 관점이나 해석을 그대로 가져다 쓸 때에는 반드시 2차 문헌을 인용해야 함. 만일 1차 문헌을 보지 않고 2차 문헌만을 보고 인용할 경우, 연구자가 직접 본 것에 대해서만 출처표기 및 참고문헌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2차 문헌만을 참고문헌에 제시하는 것은 맞음. 그렇지만, 자신의 보고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인용한 2차 문헌에 인용된 1차 문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관련 정보나 자료에 대한 접근은 신속하게 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참고문헌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위에서 인용한 APA 출판 메뉴얼에 의하면, 이차출처는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고 이차출처는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원문을 직접 보고 원문에 대하여 참고문헌에 제시하라는 의미임.

Q19 정부 정책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내용을 보고서 내 하나의 '절'에서 설명하는 경우, 일일이 문장/문단마다 출처표기를 할 경우 보고서 가독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에 각 절 제목에서 각주 등으로 해당 문헌에서 포괄적 인용을 하였다고만 밝히는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가?

▶ 연구보고서에는 선행 연구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 사례,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이나 관련 보도 자료 등에 대하여 요약이나 말바꿔쓰기를 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할 경우, 표절의 예외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음.

Q20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보고서 작성 시 직접 인용 방식에 있어 출처의 정확한 서지사항 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9조에서는 연구보고서 특성을 고려하여 인용표기 및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외적 보고서의 구체적 경우 및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바른 인용 및 출처표기의 원칙에 의하면, 3줄 또는 3문장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인용부호(" ")를 사용하고 해당 페이지 등 출처표기를 해야 함. 그러나 APA 방식에 의하여 출처를 표기하는 많은 연구자들 중에서는 간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내용주(홍길동, 2017)를 표기하는 것이 직접 인용(홍길동, 2017, p. 20)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고, 출연(연) 기관의 연구보고서에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음. 그렇지만 연구자가 인용한 부분을 자신의 것처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표절이라고 강하게 판정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크게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중복게재 관련 사항

Q1__중복게재, 이중게재, 자기표절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Q2__중복게재에서 중복성 여부 판단 기준은?

Q3__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학술지 및 정책 연구의 발전을 위해 이중언어로 발행된 연구물은 중복게재 위반인가?

Q4__이슈페이퍼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람.

1) 기본연구과제 작성 도중 이슈페이퍼를 출판하였을 경우 인용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연구보고서에 이슈페이퍼 내용을 포함할 때 출처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며,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연구보고서에 이슈페이퍼를 출처로 표기하여 활용할 경우, 어떻게 인용해야 중복게재 의심대상이 아닌가?

Q5__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포함된 표를 활용하여 새로운 표를 만들 경우 이전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Q6__자신의 이전 연구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정확히 밝혔으나, 직접 인용한 내용의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일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Q7__중복게재 예외 사항으로 제시된 연설문에는 외부 세미나 발표자료도 포함되는가? 예를 들어 기본연구과제 수행 중 외부에 기고하거나 세미나의 발표자료로 배포 시 별도의 출처표기가 필요 없는가?

Q8__중복게재 예외 조항으로 왜 용역보고서는 제외되고 용역보고서의 '요약'만 포함되는가?

Q9__출판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워킹페이퍼의 경우 중복게재 대상인가? 출처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Q10__연차보고서의 특성상 전년도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써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중복게재의 예외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Q11__연구윤리 평가규정 제11조(중복게재) 제1항 제3호와 같이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인용저작물이 종인 경우, '정당한 범위'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Q12__연구윤리 평가규정 제11조(중복게재) 제②항 제2호에 의하면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부처의 요청으로 인해 수행한 수시과제'는 위 규정에 적용되는 건가? 아울러 '특정 기관의 요청'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Q1 중복게재, 이중게재, 자기표절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가져다 후속 저작물에 활용하면서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보통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 또는 자기표절(self plagiarism)이라고 말함.
국내·외에서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합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물 출판 시 저작권이 해당 학술지에 이양된 점을 고려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표절의 개념이 성립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임. 자기표절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대학이나 학회 등에서는 사용 빈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기표절, 중복게재, 이중게재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복게재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임. 중복게재,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자기표절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혼용하거나 구분하여 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이미 한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출처표기 없이 다른 학술지에 두 번째로 게재하는 것이 이중게재라면, 이전 저작물의 일부분을 출처표기 없이 게재하는 것은 자기표절이라고 할 수 있음.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 중복게재는 자기표절과 이중게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Q2 중복게재에서 중복성 여부 판단 기준은?

▶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학술지에 이미 발표한 자신의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함.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교되는 두 연구 결과물이 말 그대로 (거의) 똑같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보고서나 논문의 제목이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이 같다거나, 서론이나 결론 부분의 일부가 조금 바뀌었을 뿐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한 경우가 "동일한(identical) 것"의 예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과 이후의 연구 결과물의 연구 방법론, 연구 구조, 내용, 논의(토론), 결론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으로, 핵심적 논지가 변화되지 않고 결론도 다르

지 않아 비교되는 두 저작물의 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를 가리킴.
연구기관의 경우, 동일 내지 거의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다년도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이전 보고서의 내용을 일정 부분 가져다 쓸 때 출처표기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다년도 과제임이 해당 출간물 내에 명시되어야 함.
비슷한 주제의 연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연구 결과의 발표 선후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상호 출처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이때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중복게재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연구자 1인이 본의 아니게 비슷한 주제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양쪽 연구의 서문이나 기타 적절한 지면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해야 하며, 이후 연구 결과가 공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쇄나 재판의 경우에 먼저 발행된 연구 결과에 대한 출처를 표기해야 함.

Q3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학술지 및 정책 연구의 발전을 위해 이중언어로 발행된 연구물은 중복게재 위반인가?

▶ 어떤 학술지 및 정책 연구의 발전을 위해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다른 독자층에게 널리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이미 출판된 내용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있음. 이것이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출판된 학술지나 저서의 출판사(편집인)와 번역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출판사(편집인) 모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함. 이때 두 번째 출판하는 곳에서 통상 "이 논문은 언제, 어디에 이미 발표(게재)된 내용을 '－－－을' 위해 다시 출판한다."와 같이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양 쪽 출판사(편집인)의 허락에 의해 언어를 달리하여 정당하게 출판하는 경우를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이라고 하며, 이는 부당한 중복게재와 구분되는 것으로 연구윤리 위반이 아님.
이미 자신의 어떤 연구 성과나 자료(data set)가 공개(출판)되었고, 이를 후속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야 함. 그래야 후속 논문이나 저서를 읽는 독자들이 해당 내용이 이곳을 통해 처음으로 발표된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 때문임.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의 출판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Q4 이슈페이퍼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람.

1) 기본연구과제 작성 도중 이슈페이퍼를 출판하였을 경우 인용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연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인쇄하기 전에 연구의 중요 내용이나 성과를 신속하게 알리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 이슈페이퍼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이슈페이퍼는 정식으로 출판된 보고서나 논문과는 달리 최근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주로 연구기관 내부용으로 발간하는 자료로서 통상 최대 10페이지 내외의 분량으로 인쇄되며 미간행물로 간주되고 있음. 이러한 이슈페이퍼에 기본연구과제의 진행 중인 내용을 출판(게재)할 때 "이 내용은 진행 중인 000의 과제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과 같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한 후 해당 내용을 기술하면 연구윤리상 문제가 없음.

2) 연구보고서에 이슈페이퍼 내용을 포함할 때 출처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며,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이슈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또는 요약하여 최종 보고서에서 활용할 때는 그 내용이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면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의해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중복게재 의심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그렇지만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슈페이퍼라고 지칭하지만, 그 출판 형태나 내용을 볼 때 정기간행물처럼 ISBN이 있고 정식 보고서나 논문의 형태를 갖춰 출판하고 있어 연구기관 내외에서 널리 인지되는 경우, 이러한 이슈페이퍼의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점임. 그 출처표기에는 이슈페이퍼의 저자명, 제목, 출판 권·호, 연도, 페이지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연구보고서에 이슈페이퍼를 출처로 표기하여 활용할 경우, 어떻게 인용해야 중복게재 의심 대상이 아닌가?

▶ 이슈페이퍼의 내용을 최종 연구보고서에 얼마나 활용해야 중복게재 의심사례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 명확한 양적 기준은 없음. 이슈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그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copy and paste)하는 것보다는 활용하고자 하는 최종보고서의 해당 부분이나 맥락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요약 또는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Q5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포함된 표를 활용하여 새로운 표를 만들 경우 이전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 자신의 이전 연구보고서에 있는 표를 이후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로는 이전의 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이전의 표를 활용하여 재구성하는 등 이전의 표와 똑같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모두 출처를 표기해야 함. 특히 둘째의 경우는 이전의 원본 표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반드시 원본 표에 대한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서 이미 공개된 표를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 출처를 밝혀주지 않는다면 이후 저작물에서 그 표가 처음 제시되는 것처럼 독자를 속이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임.

Q6 자신의 이전 연구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정확히 밝혔으나, 직접 인용한 내용의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일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출판할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속 저작물에서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내용(중요한 아이디어, 연구 방법론, 가설, 데이터, 해석 및 논의, 결론)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된다는 사실임.

물론 자신의 이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면서 활용했다고 해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연구보고서에 비해 독자성이 없을 때, 즉 가치 있는 새로움 또는 실질적인 차이를 있게 만드는 기여 부분이 없다면 이 역시 중복게재가 됨.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후속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후속 저작물이 이전 저작물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독자성을 지닐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소한도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Q7 중복게재 예외 사항으로 제시된 연설문에는 외부 세미나 발표자료도 포함되는가? 예를 들어 기본연구과제 수행 중 외부에 기고하거나 세미나의 발표자료로 배포 시 별도의 출처표기가 필요 없는가?

▶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의하면,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중복게재로 판단하지 않음. 그러나 수행 중이던 기본연구과제를 외부에 기고하거나 세미나의 발표자료로 배포하는 경우, "이 내용은 OOO연구 내용(진행 중)을 OOO를 위해 요약한 것임"과 같이 출처를 밝혀야 함.

Q8 중복게재 예외 조항으로 왜 용역보고서는 제외되고 용역보고서의 '요약'만 포함되는가?

▶ 여기서 용역보고서의 요약이란 관련 부처의 담당자 등이 신속하게 해당 연구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을 의미함.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요약을 할 때 일일이 해당 내용에 대해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번거롭고 이미 원 용역보고서에서 출처를 밝혔으므로 중복게재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한 것임. 그러나 용역보고서 요약이 아니라 완전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함.

Q9 출판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워킹페이퍼의 경우 중복게재 대상인가? 출처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워킹페이퍼를 작성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출처표기를 해야 함. 여기서 말하는 워킹페이퍼는 공식적인 간행물이 아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지되어 활용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이미 공개된 중요한 데이터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임. 출처표기 방법은 정식 간행된 것이므로 저자명, 보고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해당 페이지를 포함해야 함.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워킹페이퍼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중복게제에 해당하지 않음.

Q10 연차보고서의 특성상 전년도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중복게재의 예외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 연구윤리 평가규정의 제11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에 대해 중복게재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연차보고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도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는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전 연도 보고서의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함. 즉, 이전 연도 보고서 내용이 해당 연도 보고서에서 제외되었을 때 보고서 내용의 전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이는 중복게재 의심사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Q11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11조(중복게재) 제1항 제3호와 같이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인용저작물이 종인 경우, '정당한 범위'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출처표기는 각 문장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자신의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보고서의 일부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만으로도 연구윤리 의심사례에서 벗어날 수 있음. 그러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복게재 의심사례에 해당함. 이 경우 '정당한 범위'는 일반적으로 1개 장, chapter를 기준으로 내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1개 장, chapter의 양이 과다한 경우 1개 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음.

Q12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11조(중복게재) 제②항 제2호에 의하면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정부 부처의 요청으로 인해 수행한 수시과제'는 위 규정에 적용되는 것인가? 아울러 '특정 기관의 요청'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연구회의 평가규정 제11조(중복게재) 제②항의 제2호는 정부 부처 등의 기관에서 정책 수립이나 현안 브리핑 등을 위해 이미 발표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이를 위해 긴급하게 기 발표된 보고서를 활용하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출처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임. 그렇지만 '정부 부처의 요청으로 인해 수행한 수시과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만일 여기에 타인 및 자신의 중요한 연구 내용이 활용되었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함. 특정 기관의 요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움. 다만 공문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필요할 때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음.

3. 출처표기와 인용 관련 사항

Q1_인용의 의의와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은 무엇인가?

Q2_"이 장·절은 000의 00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성되었다"라는 출처표기는 잘못된 출처표기인가?

Q3_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단락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 출처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가?

Q4_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는 어떤 경우에 정당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가?

Q5_연구보고서 발간 전이나 후에 내·외부 연구자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출처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Q6_개조식 이슈페이퍼 내용을 최종보고서의 개조식 요약문에 포함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가?

Q7_본문에 출처표기한 문장, 표, 그림, 사진 등이 요약문에 들어갈 경우, 요약문에도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가?

Q8_비공개 자료에 대해 출처표기를 제외할 경우 출처 미표기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지, 만약 출처 미표기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면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Q9_평가규정에서 SNS를 출처표기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관례인가?

Q10_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URL과 날짜를 표기하지 않으면 연구부정행위인가?

Q11_본문 각주나 표, 그림의 인터넷 자료에 대해 URL을 표기하는 것은 문헌자료인지 인터넷 자료인지 구분하기 위함인가?

Q12_본문에는 홈페이지/웹사이트 등으로 간결하게 기입하고, 참고문헌란에 상세 URL을 기입하는 것은 괜찮은가?

Q13_하나의 표에 인터넷 자료가 2개 이상이고 검색날짜가 모두 같을 경우, "모든 자료의 검색날짜: 20XX. XX. XX"로 표기하는 것이 괜찮은가?

Q14_인터넷 사전에서 단어 검색 후 인용하였으나, URL만 기입하고 인출 날짜는 기입하지 않은 경우, 사전적 정의(변하지 않는 진리)가 매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출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것인데, 해당 내용이 지적된 정확한 지침이 있는가?

Q1 인용의 의의와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은 무엇인가?

▶ 인용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할 것.
둘째,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할 것.
타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 원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해석, 분석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가급적 나의 저작물에서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며,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물이 그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임.
연구자는 올바른 인용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용의 방법을 숙지해야 함.
첫째,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verbatim, copying), 일부 단어를 말바꿔쓰기(paraphrasing)를 하거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때(summarizing),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타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함.
둘째,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쓸 때는 해당 부분은 인용부호(" ")로 표시해야 함.
셋째,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말바꿔쓰기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논리 구조로 표현하며, 그 출처를 밝혀야 함.
넷째,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의견, 비판점이나 역사적 사실은 직접 인용하든 말바꿔쓰기를 하든 출처를 밝혀야 함.
다섯째, 기술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일반 지식인지 아닌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여섯째, 웹 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이나 단행본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처럼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일곱째, 통계 자료와 같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factual information)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든 아니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든 그 출처를 밝혀야 함.

Q2 "이 장·절은 000의 00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성되었다"라는 출처표기는 잘못된 출처표기인가?

▶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부적절한 출처표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함. 즉, 타인의 저작물의 어떤 장·절의 내용을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한 경우 "이는 OOO의 OO의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했다"라는 출처표기가 적절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직접 가져왔으면서도(copy and paste) 참조 혹은 재구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출처표기가 아님. 왜냐하면,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쓸 때 직접 인용하면서도 간접 인용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원저자가 이루어 놓은 것을 마치 자신의 성과물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임.

Q3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단락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출처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가?

▶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은 인용부호(" ") 또는 인용 단락(3문장 이상의 길게 인용되는 내용을 줄을 바꾼 후, 본문보다 좌우 여백을 더 주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달리하기 등)이 있으면 직접 인용이고, ---에 의하면 (따르면)으로 시작한 후 인용 내용 마지막에 출처표기를 하는 경우 간접 인용에 해당됨. 직접 인용은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원저자의 표현을 바꾸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라면, 간접 인용은 인용한 부분을 원저자의 핵심 논리나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인용하는 사람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함. 만일 한 단락에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을 동시에 해야 할 경우, 간접 인용을 하는 중에 직접 인용된 부분을 인용부호(" ")로 표시하면 됨.

Q4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는 어떤 경우에 정당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가?

▶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란 인용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보고서나 논문의 머리말이나 장, 절의 목차에 출처를 표기하는 것을 말함.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쓸 때, 인용한 부분에 출처표기를 정확히 함으로써 타인과 연구자 자신의 기여 부분

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이 올바른 글쓰기임을 고려할 때,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는 본문의 해당 부분마다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에 비해 충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유한 표현이나 글쓰기 방식을 연구자의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연구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방법보다는 구체적으로 해당 부분에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의하면,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절 의심사례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타인 저작물을 직접 인용할 경우 또는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 등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함.

연구보고서 작성 중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처음 기술하는 부분에서 출처표기를 하고, "이하의 내용은 OOO의 어떤 저작물, pp.OO-OO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또는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등과 같이 표기하면 됨.

Q5 연구보고서 발간 전이나 후에 내·외부 연구자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출처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연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출간되기 전,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알릴 목적 등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비록 연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출간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학술지 게재 논문에 "이 논문은 OOO 연구(미간행 또는 언제 발행 예정)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과 같이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연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출간된 이후에도 독자층을 달리하여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심화 및 확대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바, 이때에도 "이 논문은 OOO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또는 "OOO연구를 바탕으로 보완 또는 확대한 것임"과 같은 출처표기를 해야 함. 왜냐하면 대체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는 ISBN이 있거나 PDF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어 정식 출판물로 간주되므로 이미 인지된 타인 또는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의혹을 받지 않기 때문임.

Q6 개조식 이슈페이퍼 내용을 최종보고서의 개조식 요약문에 포함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가?

▶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의하면, 이슈페이퍼의 내용을 최종보고서에서 활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또한 최종보고서의 요약문에 본문에서 출처표기한 내용을 포함시킬 때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조식 이슈페이퍼의 내용을 최종보고서의 개조식 요약문에 포함할 경우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함.

Q7 본문에 출처표기한 문장, 표, 그림, 사진 등이 요약문에 들어갈 경우, 요약문에도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가?

▶ 최종 연구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그 핵심을 짧게 압축한 것이 요약문으로 학술 논문의 경우 초록에 해당됨. 보고서마다 요약문의 길이가 똑같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위주로 연구자의 고유한 글쓰기 방식으로 짧게 기술하는 것이 특징임. 따라서 본문에서 활용한 타인의 아이디어나 독특한 표현, 표, 사진 등이 불가피하게 요약문에 포함되어야 할 때에도 가급적 연구자의 표현 방식으로 바꾸어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가피하게 본문에 출처표기한 내용을 요약문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출처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그리고 연구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요약문에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봄.

Q8 비공개 자료에 대해 출처표기를 제외할 경우 출처 미표기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지, 만약 출처 미표기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면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의하면,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 부처 비공개 자료, 발주 기관 비공개 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따라서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비공개 자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 때 해당 내용을 기술한 다음에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 생략"과 같이 제시하면 됨.

Q9 평가규정에서 SNS를 출처표기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관례인가?

▶ 과거에는 SNS를 통하여 정보나 자료, 아이디어 등이 교류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이를 출처표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현대의 연구 환경에서는 SNS를 활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므로 SNS를 출처표기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블로그나 인터넷 자료에 대한 코멘트 또는 댓글 등을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 연구자는 출처표기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댓글 필자, 댓글 올린 날짜, 댓글의 대상이 되는 블로그 주인, 블로그 게시물 제목, 블로그 제목, 블로그 게시물 날짜, 인터넷 주소"의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Q10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URL과 날짜를 표기하지 않으면 연구부정행위인가?

▶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는 URL과 접속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그 이유는 인터넷 자료들은 수시로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접속해서 자료를 획득한 날짜와 해당 URL을 표기함으로써 연구윤리 위반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인터넷 자료 역시 타인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타인의 논문이나 단행본에 있는 아이디어나 표현 등을 가져다 쓰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할 수 있음.

Q11 본문 각주나 표, 그림의 인터넷 자료에 대해 URL을 표기하는 것은 문헌자료인지 인터넷 자료인지 구분하기 위함인가?

▶ 인터넷 자료에 대해 URL을 표기하는 것은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독자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Q12 본문에는 '홈페이지/웹사이트' 등으로 간결하게 기입하고, 참고문헌란에 상세 URL을 기입하는 것은 괜찮은가?

▶ APA 출판 매뉴얼에 의하면, 내용주를 통해 (저자명, 출판연도)와 같이 출처를 약식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란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볼 때, 연구보고서 본문에서 활용한 인터넷 자료(홈페이지/웹 사이트)를 간략하게 제시한 후, 참고문헌에 상세하게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하지만 다른 독자나 연구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문 인용 부분에 상세한 URL 및 검색일자를 표기하고, 참고문헌란에 '홈페이지/웹사이트' 등으로 간결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식을 권고함.

Q13 하나의 표에 인터넷 자료가 2개 이상이고 검색날짜가 모두 같을 경우, "모든 자료의 검색날짜: 20XX. XX. XX"로 표기하는 것이 괜찮은가?

▶ 인터넷 자료의 출처표기는 독자가 해당 보고서를 읽다가 연구자가 활용한 자료나 정보를 확인 하고자 할 때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RL을 표기하는 것이고, 인터넷 자료의 특성상 접속하는 시기에 따라 자료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으므로 검색날짜를 표기하는 것임. 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인터넷 자료의 검색날짜가 모두 동일한 복수의 인터넷 자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할 경우,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검색날짜: 20XX. XX. XX."로 표기하고, 해당 인터넷 자료의 URL을 표기하는 것은 인터넷 자료에 대한 출처표기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Q14 인터넷 사전에서 단어 검색 후 인용하였으나, URL만 기입하고 인출 날짜는 기입하지 않은 경우, 사전적 정의(변하지 않는 진리)가 매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출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것인데, 해당 내용이 지적된 정확한 지침이 있는가?

▶ 인터넷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먼저 해당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용되어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해당 정보나 자료가 언제든지 삭제, 추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URL을 언제 접속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줌으로써 독자들이 해당 정보나 자료를 찾아보았을 때 해당 자료나 정보가 없거나 다른 것이 있을 때 데이터의 조작 등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인출 날짜를 기입하지 않더라도 데이터의 조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접속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연구윤리 관련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때 URL과 접속 날짜를 기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4. 기타 사항

Q1__연구윤리 위반행위로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Q2__출처표기에 공동저자 중 일부 저자가 누락된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로 볼 수 있는가?

Q3__평가규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라는 표현은 연구기관의 상황에 맞게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Q4__표절 금지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효는?

Q5__연구윤리 평가규정의 표절 및 중복게재의 범위에서 "정당한 범위"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Q6__연구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표절한 당사자(피의자)인 경우,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한 연구윤리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 차원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Q7__기본·일반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기관과 연구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또한, 기관을 대표하여 보고서 작성에 기여가 없는 사람(A)이 사전에 양해나 동의없이 원저자(B)를 대신하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에 원저자(B)의 이름을 제외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는가?

Q8__연구윤리 평가규정 제2조(정의) 제2호 라목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 중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Q9__협동연구에서 과제참여기관이 작성한 세부보고서에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 되었고, 이 내용이 총괄보고서에 수록되었다면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어느 기관에게 있는가?

Q10__연구회 연구윤리 평가에서는 '참고문헌에는 활용한 해당 저작물을 제시했지만 본문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기타 사항'으로 분류하여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표절 의심사례 중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참고문헌에는 제시한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Q11__일용직 조사원이 퇴사 후 재직 중 본인이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조사 결과물은 연구책임자가 재정리하여 보고서에 이미 활용하였고, 규정상 보고서 저자명에 해당 일용직 조사원의 이름은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조사원은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저자명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면, 연구원의 예산으로 연구책임자에 기획에 의해 요청된 조사결과물의 이용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Q12_ 전문가에게 원고 의뢰를 통해 받은 원고를 활용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를 외부 연구진 목록에 포함한 경우, 추후 해당 전문가가 본인이 작성했던 원고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원고를 의뢰했던 연구책임자의 이름은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연구윤리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가?

Q13_ A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내에서 기존에 수행되었던 B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B 보고서의 내용 중 소 챕터를 통째로 인용하였다. A 보고서의 책임자는 연구윤리 위반을 걱정하여, B 보고서의 연구진을 A 보고서의 연구진 목록에 포함시켜 주었다. 그러나 B 보고서의 연구진은 A 보고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연구윤리에 저촉되는가?

Q14_ 보고서 작성 중 핵심 내용을 학회지에 투고하여 게재가 되었고, 학회지에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했다는 점은 분명히 명시하였지만, 게재 시점이 해당 보고서 발간 시점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경우에는 연구윤리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Q15_ A와 B가 공동으로 작업한 보고서 내용 중에서 A가 작성한 내용을 B가 다른 보고서나 논문에 활용하였다면, 그 적절성 여부는 표절 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중복게재 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A가 해당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긴 하였으나, B도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였음)

Q16_ 연구원 A는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 방법론은 다양한 연구에 활용가능성이 있다. 다만,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므로 모든 연구에서 이 방법론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가?

Q17_ A는 비전문가인 자신의 친구들을 동원해 설문 아르바이트를 시켰고, A의 친구들은 전화, 이메일, 대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설문을 완료했다. A는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기재할 경우, 연구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보고서에서는 교육 받은 전문 인력을 통해 1시간가량의 대면 설문을 진행했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것인가?

Q18_ A는 최근 동료 연구자로부터 진행 중인 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내용은 참고문헌 목록 정리가 미진하여, 본문과 목록의 내용이 일치하

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처럼 진행 중인 보고서(착수 및 중간 연구심의회 자료)에 대해서도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를 정확히 해야만 하는가?

Q19__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사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연구진 직접 촬영" 등의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외부에서 구득한 사진의 경우에도 합당한 출처를 표기하였다. 그런데 사진을 촬영했던 연구진이 퇴사한 이후에 이 사진을 다시 한 번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연구진 직접 촬영"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직접 촬영했던 퇴사자에게 사진 이용 권리를 이양 받아야 하는가?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진이 촬영한 것은 분명하나, 퇴사자 중 누가 촬영했는지는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OOO팀" 등으로 저작권을 표시할 수 있는가?

Q20__보고서 작성 시 거리의 풍경 사진을 활용하였으며, 그 풍경 사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촬영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 사진을 보고서에 활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가? TV 뉴스에서 명동의 거리를 촬영하여 내보낼 때도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TV로 방영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Q21__본문에 출처를 밝히는 경우 국문요약, 서론, 결론 등에서 다시 언급할 때도 출처표기가 필요한가? "내 것이 아님을 밝힌다."는 표절의 정의에 따라 인용페이지나 상세 URL까지 밝히는 대신,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임을 밝히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인터넷 자료의 검색일 표기는 콘텐츠가 검색일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만 표기해도 되지 않는가?

Q22__연구회에서는 보고서의 '부록'에 해당하는 기술의 경우에도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출처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록'을 기술하면서 내용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 참고한 자료의 정확한 서지사항을 별도로 기록해야 하는 의무도 있음을 말하는 것인가? 즉, 부록 자료에 대한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 제공의 의무까지 져야 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관행대로 내용주 출처표기로 끝내도 되는 것인가?

Q1 연구윤리 위반행위로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뜻함. 따라서 그 원칙이나 행동양식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이는 모두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되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만 표현하고 있을 뿐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한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음. 즉,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위반 유형을 나눔에 있어 남의 것을 바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을 '연구부정행위'로 범주화함으로써 더 위중한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자기 것을 바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부적절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일반적인 학계에서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떠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 스스로 조심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됨.

Q2 출처표기에 공동저자 중 일부 저자가 누락된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로 볼 수 있는가?

▶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됨. 따라서 공동저자 중 일부 저자가 누락된 경우는 명백하게 부당한 저자 표기로 볼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공동 연구의 경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연구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저자로서의 역할 및 순서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한 다음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자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함.

Q3 평가규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라는 표현은 연구기관의 상황에 맞게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 여기서 자율적이라는 것은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을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상황에 맞게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구기관이 스스로 연구윤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임. 곧 연구회 등 상급기관이나 외부에서의 판단 이전에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윤리 준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임.

Q4 표절 금지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효는?

▶ 2007년 2월에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시효를 제보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두고 있었으나, 2011년 6월 2일 개정되면서 시효를 두고 있지 않게 되었음. 연구회 역시 이를 준용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시효를 두고 있지 않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효 문제의 규정 여부라기보다는 얼마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연구수행의 기준에 맞춰 책임 있고 정직하게 연구를 수행하는가에 있음.
특히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관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실천해 가도록 해야 할 것임.

Q5 연구윤리 평가규정의 표절 및 중복게재의 범위에서 "정당한 범위"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되는 유형 중의 하나로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범위'를 명확하게 양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음. 다만 이 내용의 취지는 어떤 저작물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타인의 그것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자는 타인의 것을 인용할 때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최소화하도록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 내용이 주를 이루도록 글쓰기를 해야 함.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면

서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가져다 썼다고 해도(요약, 말바꿔쓰기 등),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거나 질적으로도 기여도가 크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정당한 범위를 판단할 때는 인용한 부분이 전체 연구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해당 장·절·소제목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두 고려해야 함.

Q6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표절한 당사자(피의자)인 경우,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한, 연구윤리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 차원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때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음. 이와 같이 연구부정행위를 합리적이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표절)의 의혹을 받고 있는 피조사자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대체로 연구윤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함.
그런데 질문에서와 같이 해당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표절 의심사례 당사자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등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 7. 17., 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2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에서 제1항 제2호(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전문기관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준하여 제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만일 동 규정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규정 개정의 요구와 함께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준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7 기본·일반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기관과 연구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또한, 기관을 대표하여 보고서 작성에 기여가 없는 사람(A)이 사전에 양해나 동의없이 원저자(B)를 대신하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에 원저자(B)의 이름을 제외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는가?

▶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출판되는 연구보고서의 저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지만 저작권은 연구기관의 속성상,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저작물'의 취지에 따라 기관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임. 물론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구의 협약 사항(특히 외부 연구자가 포함된 경우)이나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저자이면서 저작권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기관에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연구자 개인이 연구보고서의 저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함.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의 저자는 해당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의 기획, 연구 진행, 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의미함. 따라서 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등재하거나 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질 정도로 기여가 있은 사람을 저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게 됨. 일반적으로 특정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출처표기를 할 때 저자명을 기재하는 것은 그가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자이기 때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A 연구자가 기관의 대표로서 B 연구자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있겠지만, B 연구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임. 그리고 A 연구자는 B 연구자가 쓴 보고서의 저자가 아닌 이상, 아무리 기관의 대표로서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B 연구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발표할 수는 없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저자명 표기 등의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Q8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2조(정의) 제2호 라목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 중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는 해당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의 제공 및 개념 정립, 실험, 관찰, 조사 등을 통해 연구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해석), 연구보고서 작성과 검토 등 연구보고서의 실질적인 업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음. 그리고 실험실 제공, 단순 통계 처리, 문헌 수집 및 정리 등 연구 수행을 위해 도움을 준 경우는 연구보고서의 실질적인 업적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기"를 통해 그 업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Q9 협동연구에서 과제참여기관이 작성한 세부보고서에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었고, 이 내용이 총괄보고서에 수록되었다면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어느 기관에게 있는가?

▶ 협동연구의 경우, 과제참여기관이 작성한 세부보고서에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었고, 관련 내용이 총괄보고서에 수록되었다면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주관기관이 지게 됨. 협동연구의 경우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수 등 참여연구자가 다양함. 연구윤리 평가에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집필한 부분에서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 연구회에서 이들에 대해 연구윤리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관연구기관은 참여연구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의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주관연구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함.

협동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문제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사안임. 현대 사회의 복잡·다양성과 이로 인한 정책문제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협동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협동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는 기본과제 및 일반과제에 못지 않게 중요함. 기본과제와 일반과제에서도 특정 연구기관 연구자들로만 이루어지는 연구보다는 외부 연구기관이나 학자·전문가 등의 참여로 진행되는 과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부 참여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왜냐하면 국책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그 세부 참여 연구진의 유형에 관계 없이 최종적인 책임을 해당 연구기관에서 져야하기 때문임.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관 단독 연구결과물 뿐 아니라 협동연구를 비롯해 외부 연구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결과물에 대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 계약서 상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 보완, 연구윤리 책임 및 제재 강화, 외부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및 후속조치 강화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임.

Q10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에서는 '참고문헌에는 활용한 해당 저작물을 제시했지만 본문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기타 부주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표절 의심사례 중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참고문헌에는 제시한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 타인의 문헌을 활용하여 본문을 기술함에 있어서 그 출처표기는 당연한 일이며, 이를 반영하여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도 본문의 출처와 참고문헌이 일치하는 것을 이상적인 출처표기로 판단하고 있음. 연구회에서 '기타 부주의'으로 분류하는 위와 같은 경우는 본문의 출처표기와 참고문헌이 일치해야 함을 전제로 도출된 사항으로써 출처미표기와는 엄연히 다른 경우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즉, 질문에서 말하는 '참고문헌에는 활용한 해당 저작물을 제시했지만 본문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란 "참고문헌에는 밝혔지만 실제로 본문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로 기타부주의 의심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만일 본문에서 출처가 누락된 경우라면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함.

Q11 일용직 조사원이 퇴사 후 재직 중 본인이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조사 결과물은 연구책임자가 재정리하여 보고서에 이미 활용하였고, 규정상 보고서 저자명에 해당 일용직 조사원의 이름은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조사원은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저자명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면, 연구원의 예산으로 연구책임자에 기획에 의해 요청된 조사결과물의 이용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연구 자료)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연구윤리 및 저작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임.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연구자에게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구자가 소속한 연구기관이나 연구비 지원 기관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를 시작하

기 전에 연구기관이나 연구비 지원 기관과 협약을 맺게 될 때, 여기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데이터의 소유나 활용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통상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데이터의 소유는 연구기관이나 정부에 속하게 되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허락)이 필요함. 본 질문의 사안은 업무상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되는 바, 여기서 업무상 저작물이라 함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을 의미함. 따라서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연구책임자에 의해 기획된 연구과제에 일용직 조사원으로서 참여하여 자신이 직접 조사한 결과물이지만, 이에 관한 별도의 계약 또는 근무 규칙이 없이 그 기관의 연구책임자의 명의로 공표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해당 기관에 속하게 되므로 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음.

Q12 전문가에게 원고 의뢰를 통해 받은 원고를 활용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를 외부 연구진 목록에 포함한 경우, 추후 해당 전문가가 본인이 작성했던 원고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원고를 의뢰했던 연구책임자의 이름은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연구윤리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가?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중에는 전문가에게 관련 주제에 대하여 원고를 의뢰하여 최종 보고서에 담는 경우가 많음. 물론 이때 그 전문가는 공동 연구진에 포함하지 않고 외부 연구진 또는 자문가 목록으로 기재하곤 하는데, 연구의 시작 혹은 연구 도중에 전문가의 원고 활용에 대한 기준을 안내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식적으로 최종 보고서가 출판되기 전에 그 전문가가 학술지 등에 자신의 원고를 활용한 논문을 먼저 발표하게 될 경우, 의도하지 않게 최종 보고서가 그 전문가가 쓴 논문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표절 의혹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한 원고는 연구책임자 또는 의뢰 기관에게 귀속되며,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전문가가 자신이 작성한 원고를 불가피하게 활용하고자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커버에 "어떤 연구의 일환으로 아직 최종 발간되지 않은 보고서의 일부를 활용하였다"는 출처표기를 명확하기 하도록 합의를 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만일 이러한 협약이 있었음에도 (미간행) 최종 보고서에 대한 출처표기 없이 마치 그 전문가가 처음으로 발표한 것처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Q13 A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내에서 기존에 수행되었던 B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B 보고서의 내용 중 소챕터를 통째로 인용함. A 보고서의 책임자는 연구윤리 위반을 걱정하여, B 보고서의 연구진을 A 보고서의 연구진 목록에 포함시킴. 그러나 B 보고서의 연구진은 A 보고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연구윤리에 저촉되는가?

▶ A 보고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지만, A 보고서에 꼭 포함시켜야 하는 B 보고서의 내용이 있다고 해서 B 보고서의 연구진을 A 보고서의 연구진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A 보고서에 인용된 B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인용된 분량이 많아 그것이 혹 연구윤리 위반이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여 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음. 물론 이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인용한 B 보고서의 내용이 A 보고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얼마인지, 둘째, '연구진 목록'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저자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전자와 관련해서는 비록 인용한 B 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또 그 분량은 A 보고서의 전체 분량과 비교할 때 저자 자격을 줄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진으로 포함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후자의 경우에도 통상 연구진이 해당 보고서의 저자와 동일시되므로 보고서의 연구진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전체 보고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의미하는 바, 본 사례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구진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본 사례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될 수 있음.

Q14 보고서 작성 중 핵심 내용을 학회지에 투고하여 게재가 되었고, 학회지에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했다는 점은 분명히 명시하였지만, 게재 시점이 해당 보고서 발간 시점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경우에는 연구윤리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 최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최종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최종 발간되기 전에 먼저 학술지 논문으로 작성되어 발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구윤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 편집인에게 투고 논문의 내용이 미발간 최종 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점을 밝히고 또 해당 논문에도 미발간 최종 보고서를 활용하여 논문이 작성되었다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함.

Q15 A와 B가 공동으로 작업한 보고서 내용 중에서 A가 작성한 내용을 B가 다른 보고서나 논문에 활용하였다면, 그 적절성 여부는 표절 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중복게재 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가 해당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였지만, B도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였음)

▶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업적 배분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음. A와 B 두 사람이 공동 작업한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A가 주도적으로 작업한 내용(B도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였음)을 B가 다른 보고서나 논문에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였다면 그 적절성 여부는 중복게재 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왜냐하면, A가 작성한 내용은 공동 연구 결과물의 일부로 더구나 이 내용에 대해 B의 기여도가 분명히 있다면 A만의 단독 연구 내용이 아니라 A와 B의 공동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자신의 기여가 포함된 공동 저작물의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므로 본 사례는 중복게재 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Q16 연구원 A는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 방법론은 다양한 연구에 활용가능성이 있음. 다만,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므로 모든 연구에서 이 방법론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자신이 새롭게 개발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선행 논문을 발표한 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동일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표절이라기보다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 내용의 일부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면서도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때문임. 이러한 중복게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서 인용하는 핵심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데이터, 표, 그림, 단어, 문장 등)을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은 자신이 새로 개발한 연구 방법론을 처음 소개한 자신의 저작물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대로 가져다 활용하기 보다는 후속 연구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압축하여 소개하거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사항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 어디를 참조하라고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중요함.

Q17 A는 비전문가인 자신의 친구들을 동원해 설문 아르바이트를 시켰고, A의 친구들은 전화, 이메일, 대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설문을 완료했다. A는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기재할 경우, 연구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보고서에서는 교육 받은 전문 인력을 통해 1시간가량의 대면 설문을 진행했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것인가?

▶ 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의하면, 변조란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함. 만일 위의 질문처럼, 연구자가 자신이 획득한 설문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받은 전문 인력을 통해 1시간 가량 대면 설문을 진행했다'고 기술하여, 마치 대면 설문 조사의 전문가에 의해 데이터가 획득된 것처럼 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또한 만일 설문 조사 방법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곧바로 변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연구 데이터가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획득되어 분석, 해석 및 논의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때 그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올바른 연구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음.

Q18 A는 최근 동료 연구자로부터 진행 중인 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내용은 참고문헌 목록 정리가 미진하여, 본문과 목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임.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처럼 진행 중인 보고서(착수 및 중간 연구심의회 자료)에 대해서도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를 정확히 해야만 하는가?

▶ 자신의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표기와 참고문헌 표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연구회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기관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자료(이를테면, 착수 및 중간 연구심의회 자료, ISBN이 없는 이슈 페이퍼 등 기관 내부 자료 등)에 대해서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음.

Q19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사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연구진 직접 촬영" 등의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외부에서 구득한 사진의 경우에도 합당한 출처를 표기함. 그런데 사진을 촬영했던 연구진이 퇴사한 이후에 이 사진을 다시 한 번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연구진 직접 촬영"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직접 촬영했던 퇴사자에게 사진 이용 권리를 이양 받아야 하는가?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진이 촬영한 것은 분명하나, 퇴사자 중 누가 촬영했는지는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OOO팀" 등으로 저작권을 표시할 수 있는가?

▶ 일반적으로 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데이터는 그 저작권이 그 기관에게 귀속됨. 따라서 한 연구원이 기관의 소속원으로서 직접 사진 촬영을 하였고 그 후 그가 퇴사하였다면 그가 촬영한 사진은 그 소속기관의 지식 재산이 되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진 직접 촬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퇴사자에게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음. 만일 연구진이 촬영한 것은 분명하나 퇴사자 중 누가 촬영했는지가 불분명할 경우 '000팀 촬영'이라고 출처표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임.

Q20 보고서 작성 시 거리의 풍경 사진을 활용하였으며, 그 풍경 사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촬영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님. 이 사진을 보고서에 활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가? TV 뉴스에서 명동의 거리를 촬영하여 내보낼 때도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TV로 방영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 연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하여 이를 보고서에 활용하였다면, 타인이 찍은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음. 다만 사진 속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일이 촬영 허가를 받아 사진 촬영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사진의 얼굴도 개인 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혹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특정인을 알지 못하도록 익명화처리를 할 필요가 있음.

Q21 본문에 출처를 밝히는 경우 국문요약, 서론, 결론 등에서 다시 언급할 때도 출처표기가 필요한가? "내 것이 아님을 밝힌다."는 표절의 정의에 따라 인용페이지나 상세 URL까지 밝히는 대신,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임을 밝히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인터넷 자료의 검색일 표기는 콘텐츠가 검색일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만 표기해도 되지 않는가?

▶ 출처표기의 기본 원칙은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독자들에게 해당 자료나 정보의 원천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돕는데 있음. 그러므로 출처표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국문요약에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데 국문 요약은 연구자의 표현으로 연구의 성격을 잘 요약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만일 불가피하게 본문에 인용된 타인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표현을 국문요약에서 사용할 경우 본문을 통해 그 출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임. 그렇지만, 서론이나 결론에서 본문에서 인용한 내용을 다시 쓸 때에는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음. 한편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검색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Q22 연구회에서는 보고서의 '부록'에 해당하는 기술의 경우에도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출처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록'을 기술하면서 내용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 참고한 자료의 정확한 서지사항을 별도로 기록해야 하는 의무도 있음을 말하는 것인가? 즉, 부록 자료에 대한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 제공의 의무까지 져야 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관행대로 내용주 출처표기로 끝내도 되는 것인가?

▶ 부록자료도 연구 내용을 읽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관련 자료나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만일 이를 찾아 활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방식과 같이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임.

Ⅴ. 부록

1. 부실학회 참가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1. 부실학회 참가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27)]

27) 이하의 내용은 한국연구재단(2018. 10)「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한국연구재단(2019),「2019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1)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개요

(1) 정의

-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란 관련 학계가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 연구논문의 발표가 채택되는 학술지(또는 학술대회)

(2) 유형

구 분	특 징
위조 학술지 (Hijacked Journals)	유명학술지와 유사한 학술지 이름을 사용하여 저자에게 혼동을 주는 학술지 ex. OMICS 자회사가 개최한 학회
약탈적 학술지 (Predatory Journals)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게재해주는 학술지 ex. WASET, OMICS

2)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특징

(1)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 특징

- (출판) 동료심사, 수정 등 일반적인 학술지 출판과정 생략
  - 동일 논문이 반복해서 출판되거나 타 학술지 논문이 출판
  - 논문 제출과 출판 간의 간격(기간)이 통상의 기간보다 짧음(예, 1개월 이내)
- (양식) 논문 제출 양식(format) 조악
- (학문범위)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음
- (비용) 홈페이지에 논문 게재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개인 이메일로 청구
- (광고) 스팸 이메일 형식으로 논문 제출 독려
- (단체명) 학술지 명칭에 World, International, Global과 같은 형용사가 포함된 경우가 많음

※ World, International, Global로 시작하는 저널 중에도 우수 저널이 많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학회위치) 학회 사무국이 선진국에 있다고 주장
- (영향력지수) 홈페이지에 해당 학술지의 영향력지수(IF)가 높다고 언급
- (주소)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외에 일반 주소가 없는 경우가 빈번함

※ 참고 : Mohammad Hemmat Esfe et al. (2015), Fake Journals: Their Features and Some Viable Ways to Distinguishing Them, Sci Eng Ethics (2015) 21: 821-824

(2)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대회

- (이메일 계정) 기관이나 단체 계정이 아니라 gmail, hotmail 등과 같은 상업용 이메일 사용 경우가 많음
- (참석)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학회참여증서 수여 선전
- (학문범위)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 취급
- (운영위원) 학회 운영위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음

※ 무단으로 저명한 연구자를 운영위원으로 내세워 다른 연구자들을 현혹

- (학회날짜) 초록 마감일, 논문 제출일, 학회일 등이 자주 변경
- (현혹) 무료 숙박·숙식·항공권 등으로 선전하여 연구자를 현혹
- (학회장소) 관광하기 좋은 장소에서 개최
- (지불방식) 신용카드를 통해 학회비를 지불하는 경우보다 현금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명성이용) 해당 학회를 유명 출판사에서 주최한다고 광고
- (학회프로그램) 학회운영 프로그램이 애매하고 토론자나 강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음
- (초청방식) 일반학회는 연구논문을 공개 모집하지만(call for papers) 부실학회는 연구자에게 직접 초대 이메일 발송(You are invited).

※ 해당 학회에서 발표하면 SCI급 저널에 게재된다고 광고

- (참석증서) 참가비를 지급 후 학회날짜 전에 학회참석증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음
- (강연자 초청옵션) 일반학회는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지만 부실학회는 일정금액을 내면 원하는 강연자 초청 약속
- (부실테스트) 학술대회 논문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부실학회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참고 : Amin Asadi et al. (2018), Fake/Bogus Conferences: Their Features and Some Subtle Ways to Differentiate Them from Real Ones, Sci Eng Ethics (2018) 24: 779-784.

3) 일반학회와 부실학회의 비교

특징	일반학회	부실학회
동료 심사	–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거침	– 논문에 대한 심사가 없음
마케팅 및 비용	– 학회 참석 독려 위해 관광지에서 개최하기도 하지만 관광이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음	– 유명 관광지에서 개최 – 관광이나 유사한 명목으로 비용 청구 – 권위있는 학자들을 내세워 선전
신뢰성	– 특정 학문분야 취급 – 일정이 고정되어 있음 – 학술대회 논문을 무조건 학술지에 게재하지는 않음	– 다양한 학문 분야 취급 – 등록비 납부 학회참여증명서 발송 – 주요 일정 자주 변경 – 학술대회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운영진 정보	– 학회 이메일 계정 사용 사례가 많음 – 명확한 연락정보 및 운영자 정보	– gmail 등 무료 이메일 계정 사용 경우가 많음 – 학계와 연관성 없음 – 연락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이메일만 있는 경우가 많음

출처 : Jalallan M. and Mahboobi, H., (2014)., 한국연구재단(2019) p.16. 재인용, 일부 수정

4)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예시)

논문 투고 시 점검사항

①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②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③ 편집위원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④ 명확한 동료평가(peer review)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⑤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까?
⑥ 동료심사, 수정 등 일반적인 학술지 출판과정이 있습니까?
⑦ 논문 제출양식(format)이 조악하지 않습니까?
⑧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⑨ 홈페이지에 논문 게재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⑩ 스팸 이메일 형식으로 논문 제출을 독려하지 않습니까?

학회 참석 시 점검사항

① 학회 개최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②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③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④ 학회의 학문적 범위와 목적이 관심분야에 적합합니까?
⑤ 기조 연설자 및 편집위원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⑥ 무료 숙박·숙식·항공권 등으로 선전하지 않습니까?
⑦ 학회가 관광하기 좋은 장소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⑧ 학회비를 현금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⑨ 해당 학회를 유명 출판사에서 주최한다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⑩ 토론자, 강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 학회운영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5) 부실학술활동 예방 관련 대표 사이트

사이트 주소	주요 제공 내용
http://thinkchecksubmit.org	연구자가 저널이나 출판사의 지명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체크리스트(Think/Check/Submit 캠페인)
https://thinkcheckattend.org	연구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학회와 기피해야 할 학회를 구분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공(Think/Check/Attend 캠페인)
https://safe.koar.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술정보공유시스템 부실학회 및 부실학술지 관련 정보 제공

참고문헌

▶ 국내 및 해외문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2018.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2017.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2017.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 2016. 4. 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기준 및 사례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해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11.

김병철,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평가 실태 및 개선방향”,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제13권 제2호, 2013.

김완종·이은지, “학술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한국과학기술정보원, NRC-KISTI 업무협의 발표자료, 2019.10.21.

남형두, 표절론, 현암사 2015.

사법정책연구원,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시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2-첨부자료, 2015.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 2007. 4. 26.

이인재, “중복게재의 문제점과 연구윤리의 정립 방안,”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제26집, 2009.

이인재, “바람직한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연구윤리의 이해”, Endocrinol Metab, 26(1), 2011.

이인재, “연구활동의 스펙트럼과 연구진실성,”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0권, 3호, 2012.
이인재, “표절과 올바른 인용,”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0권 4호, 2012.
이인재, “중복게재,”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1권 1호, 2013.
이인재, “올바른 저자표시와 동료 심사,”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1권 2호, 2013.
한국연구재단,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18. 10.
한국연구재단,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 NRF ISSUE REPORT 1호, 201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
Steneck, Nicholas H.,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2007.

▶ 법령 및 관련 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2019. 4. 26., 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2017. 2. 28.,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625호, 2019. 3. 19., 일부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47호, 2019. 11. 26., 일부개정)

▶ 판례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 참고자료

Amin Asadi et al., Fake/Bogus Conferences: Their Features and Some Subtle Ways to Differentiate Them from Real Ones, Sci Eng Ethics 24: 779-784, 2018.

Mohammad Hemmat Esfe et al. Fake Journals: Their Features and Some Viable Ways to Distinguishing Them, Sci Eng Ethics 21, 821-824, 2015.

Jalallan M. and Mahboobi, H., Hijacked Journals and Predatory Publishers: Is There a Need to Re-Think How to Assess the Quality of Academic Research? Walailak Science & Technology Journal 11(5):389-394, 2014.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발 행 인 성경륭
발 행 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 쇄 2019년 12월
발 행 2019년 12월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401호
편 집 평가실장 김병철
평가운영부장 이지성
전문위원 이경진
문 의 평가운영부(044-211-1230)
홈페이지 www.nrc.re.kr